2026년도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성 평 등 가 족 부

2025. 11.

성 평 등 가 족 위 원 회

목 차

1. 소관부처 회부 기금운용계획안 ····· 1

2. 심사경과 ····· 1

3.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 2

4. 대체토론의 요지 ····· 3

5.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4

6. 심사결과 ····· 5

7. 소수의견의 요지 ····· 5

8. 부대의견 ····· 5

※ 첨부 ····· 9

1. 2026년도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조정내역

2. 2026년도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2025. 11. .
성평등가족위원회

1. 소관부처 회부 기금운용계획안

가. 성평등가족부 소관

양성평등기금 : 수입·지출계획안

청소년육성기금 : 수입·지출계획안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5년 9월 3일

나. 회부일자 : 2025년 9월 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 성평등가족위원회(2025. 11. 11.)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 회부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5. 11. 12.) 상정·심사·의결(수정가결)

제7차 성평등가족위원회(2025. 11. 13.) 소위원회 심사보고·의결(수정가결)

3.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 [붙임] 2026년도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참조

4. 대체토론의 요지

○ 온라인 기반 성범죄와 스토킹, 교제폭력 등 관계기반 폭력 등의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및 구조지원 등 무료법률 지원 확대 필요

○ 최근 가정폭력·스토킹 등이 증가하고 그 양상도 다양해지고 있는데, 가정폭력 등의 피해자는 장기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보호시설 확충, 입소기간 연장 등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 개정 및 예산 증액 필요

○ 청소년상담 1388 운영 사업은 중앙상담센터가 없으므로 전화연결 지연, 심층면담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있고, 온라인 상담 평균 대기시간이 18분, 응답률은 82%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므로 온라인 상담원 확충 및 중앙상담센터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 필요

○ 위기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통합지원서비스 제공 필요

5.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조은희 위원장)

성평등가족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논의 결과, 일반회계에서 143억 4,400만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에서 675억 8,500만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117억 9,200만원, 양성평등기금에서 46억 2,600만원, 청소년육성기금에서 156억 1,400만원 등 총 996억 1,700만원을 증액하여, 순증액은 852억 7,300만원이며, 부대의견 30건을 채택하기로 하였음.

주요 감액사업은,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의 최근 집행실적 부진, 인구감소지역 가구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에 제기된 지역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돌봄수당 25억 2,600만원을 감액함.

주요 증액사업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사업에서 증가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수요에 대응하여 중앙디성센터 정규직 16명을 증원하는 등 총 28억 2,700만원을 증액하였고,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 아이돌봄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아이돌보미 장기돌봄 활동수당, 저소득 맞벌이가구 대상 정부지원시간의 추가, 아이돌보미 4대보험 및 퇴직적립금 등 법정부담금의 현실화 등을 위하여 총 332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음.

6. 심사결과

가. 성평등가족부 소관

1) 양성평등기금: 수입계획안 원안의결, 지출계획안 수정의결

2) 청소년육성기금: 수입계획안 원안의결, 지출계획안 수정의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부대의견

가. 성평등가족부 소관

○ 성평등가족부는 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 사업에서 다른 기관의 사업비가 소진되면 사업비 여력이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지원 신청 건을 연계하고 있으나, 연계가 곧 지원실적으로 이어지지 않으므로 연계 건수와 실제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실적 건수를 모두 집계한다.

○ 성평등가족부는 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 사업을 2024년부터 민간경상보조(320-01)와 민간위탁사업(320-02)으로 구분하여 편성하고 있는데, 예산집행체계를 이원화할 필요성이 적고 동일한 기관에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서로 다른 비목이 집행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보다 많은 피해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비목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 성평등가족부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퇴소시 지급하는 자립지원금의 집행실적이 부진한 이유 및 지역별 예산수요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방안을 모색한다.

○ 성평등가족부는 법무부 소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편성된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이 성평등가족부 소관인 일반회계 또는 양성평등기금으로 이관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한다.

○ 성평등가족부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편성되어 있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의 경우 해바라기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및 인프라 확충,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료회복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강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생계비 단가 현실화 등을 위한 증액이 필요하므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법무부 및 재정당국과 협의한다.

○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사업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액, 영아 추가지원금의 적정 수준 인상을 검토하고, 청소년한부모 대상 복지급여 지원을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평가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2331-434) 사업으로 이관한다.

○ 성평등가족부는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중 가족센터 운영과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에 각각 편성된 유사 사업을 통합하여 편성·관리하고,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중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등 필수적인 사업은 다문화가족센터의 기본사업으로 전환하며, 특성화사업 전담인력에 대하여 고용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근무환경 실태조사·점검 등 고용환경을 개선한다.

○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 원스톱 지원사업은 고립·은둔 청년지원 사업(보건복지부)과는 별도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관내 유관 기관과의 연계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2026년 신규센터 설치시 부처별 역할분담 및 지원기준 등을 사전에 명확히하는 지침 등을 마련한다.

○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 상담 1388 종합전화상담센터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중복되지 않고 차별적으로 운영되도록 한다.

○ 성평등가족부는 경기도에 청소년 인구가 많으므로 청소년복지시설 추가 건립여부를 검토한다.

2026년도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조정내역

2025. 11.

Ⅰ.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조정 총괄표

1.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결과

(1) 수입 : 조정내역 없음

(2) 지출

(단위 : 백만원)

위원회명	소 관	기 금	수정의결		
			증 액	감 액	증 감
성평등가족위원회	성평등가족부	양성평등기금	4,626	-	4,626
		청소년육성기금	15,614	-	15,614
	합 계		20,240	-	20,240

Ⅱ.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조정내역

1.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 조정내역

(1) 수입 : 조정내역 없음

(2) 지출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당초	수정					
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2158-332)**	19,037	19,037	20,783	21,693	258	○ 내역사업인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156억 7,100만원, 전년 본예산 대비 9억 2,200만원 증액)사업은 성매매 피해자 및 종사자들의 성매매로의 재유입 방지 및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상담소, 지원시설, 공동생활시설, 자활지원센터 등을 운영하는 것임. ○ 서울 성북구 성매매집결지 폐쇄가 진행 중으로 집결지 여성의 자활지원 수요가 한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성북구 자활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2억 5,800만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당초	수정					
						652	○ 내역사업인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통합지원'**(12억 9,600만원, 전년 본예산 대비 3,100만원 증액)사업은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긴급구조, 상담, 치료회복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 성매매와 연계된 그루밍, 성폭력 등 피해아동·청소년 지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17개소 지역전담지원센터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6억 5,200만원 증액	
2	**가정폭력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2159-432)**	43,167	43,167	45,319	46,573	800	○ 내역사업인 **'폭력피해자 무료 법률지원'**(31억 9,500만원, 전년동)사업은 가정폭력·성폭력 등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민·가사소송 등 법률구조 지원을 하는 것임 ○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가 증가하여 법률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예산이 부족하여 일부 기관에서 사업이 조기 마감되고 있으므로, 법률지원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8억원 증액	
						195	○ 내역사업인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24억 4,900만원, 전년 본예산 대비 2억 1,800만원 증액)사업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치료, 치유프로그램 실시, 신변 안전을 위한 긴급 피난보호 등을 지원하는 것임 ○ 스토킹·교제폭력 맞춤형 심리치료 지원을 강화하고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과 동일한 수준으로 사업비를 현실화하기 위한 비용 1억 4,200만원과 종사자 처우개선비 5,300만원 등 총 1억 9,500만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당초	수정					
						259	○ 내역사업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142억 6,100만원, 전년 본예산 대비 11억 1,700만원 증액)사업은 가정폭력피해자 및 동반자녀에게 숙식제공, 퇴소 후 자립생활지원 등의 사업을 하는 것임.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인당 생계비 단가(286,700원)를 복지부의 보장시설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426,741원)에 맞게 현실화하기 위하여 2억 5,900만원 증액	
3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2356-432)**	145,197	145,197	151,379	153,841	30	○ 내역사업인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137억 1,600만원, 전년 본예산 대비 15억 8,400만원 증액)은 공동돌봄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 공동체를 통한 지역 돌봄 문화를 확산하려는 것임 ○ 정부 생활SOC 복합화 대상시설로 건립된 한밭 공동육아나눔터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국비 지원 대상 포함 3,000만원 증액	
						2,432	○ 내역사업인 **'가족센터 운영'**(961억 7,600만원, 전년 본예산 대비 32억 4,800만원 증액)은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안정성 강화와 가족생활을 지원하려는 것임 ○ 국비로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는 전국 45개소 건강가정지원센터 중 19개소 대상 운영비 지원을 위해 24억 3,200만원 증액 ※ 256백만원('26년 개소당 운영비) x 19개소 x 50%	

2. 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안 조정내역

(1) 수입 : 조정내역 없음

(2) 지출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당초	수정					
1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교육 (2138-432)	4,932	4,932	5,097	6,707	1,560	○ 내역사업인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50억 9,700만원, 전년 본예산 대비 1억 6,500만원 증액)사업은 청소년 대상 상설 성교육 전문기관을 구축·운영하는 것임. ○ 청소년성문화센터 개소당 운영비 증액 및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비용 4억 9,000만원, 기본차령(11년)이 경과한 4개소(부산, 강원, 경남, 충북)의 노후화된 이동형센터(버스) 교체 및 개조 비용 10억 7,000만원 등 총 15억 6,000만원 증액	
						50	○ 성교육용 보드게임을 제작하고 이를 초등학교·지역아동센터에 보급하기 위한 **'성인지력 향상게임 보급사업'**을 신규 내역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비용 5,000만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당초	수정					
2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2254-431)	71,820	71,820	73,859	84,304	2,019	○ 내역사업인 **'청소년상담 1388 운영'**(29억 2,800만원, 전년 본예산 대비 2억 5,800만원 증액)은 365일, 24시간 청소년 상담1388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한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 체계 강화를 위한 사업임 ○ 위기청소년 신속·발굴 대응을 위한 온라인상담원 증원, 종합전화상담센터 신규 구축을 위한 20억 1,900만원 증액 ※ 온라인상담사(6억2,600만원)+긴급전화(13억9,300만원, 순증) - 온라인상담사(16명 증원) ('26년 정부안) 24.727백만원×99명=2,448백만원 → ('26년 증액안) 26.73백만원×115명=3,074백만원 - 긴급전화(순증): (인건비-수퍼바이저) 150백만원=50백만원×6명×50%(6개월) (인건비-중앙상담사) 800백만원=40백만원×40명×50%(6개월) (임차료, 시설비 등) 443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당초	수정					
						1,608	○ 내내역사업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189억 5,300만원, 전년 본예산 대비 10억 9,700만원 증액)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위기청소년 대상 상담·보호·의료·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종사자 가이드라인 기준을 적용하여 16억 800만원 증액 ※ 산출내역: 5,911천원×544명×50%=1,608백만원	
						3,277	○ 내내역사업인 **‘찾아가는 청소년상담 강화’**(141억 4,800만원, 전년 본예산 대비 4억 6,700만원 증액)는 청소년동반자(전문상담사)가 위기청소년을 방문하여 상담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 청소년동반자(전일제 및 시간제)의 처우개선을 통한 장기 근속 유도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인건비 32억 7,700만원 증액 ※ 23억 5,100만원: 전일제 동반자 인건비의 사회복지종사자 가이드라인 기준 적용시 단가 10,245천원 인상 →10,245천원×459명×50%=2,351백만원 ※ 9억 2,600만원: 시간제 동반자 인건비 처우개선 ·시간제동반자(시간당 단가 인상 12천원→15천원) →1,972천원×939명×50%=926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당초	수정					
						391	○ 증가하는 정서·행동 고위기청소년 대상 치료 지원 강화를 위한 **'정서·행동 고위기청소년 대상 치료 지원 강화'** 내역사업의 신규 추진을 위해 3억 9,100만원 증액 ※ 산출내역: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문(225백만원) 치료·발달지원비(116백만원) 사업 운영 인력(42백만원) 전문가자문·우수사례발굴 등(8백만원)	
						2,633	○ 내역사업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295억 6,500만원, 전년 본예산 대비 5,700만원 증액)은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복귀 및 사회진출 지원을 강화하는 것임 ○ 내내역사업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279억 8,900만원, 전년 본예산 대비 5억 7,000만원 증액) 중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총 26억 3,300만원 증액 ※ 산출내역: 사회복지종사자 가이드라인 기준 적용 →5,417천원x706명x50.70%= 2,633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당초	수정					
						409	❍ 내내역사업인 **'자립취업지원서비스'** (19억 700백만원, 전년동) 사업은 자립과 취업을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15~24세) 진로를 위해 훈련과정과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임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자립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전담인력 신규 배치를 위한 4억 900만원 증액 ※ 산출내역: 시·도센터 17개소×1명×35백만원×50/70%	
						108	❍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능모의평가 응시료 지원을 위하여 내내역사업으로 **'학교 밖 청소년 수능모의평가 응시료 지원'** 신규 사업 반영을 위한 1억 800만원 증액 ※ 산출내역: 9천명×12,000원×2회×50% = 108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당초	수정					
3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지원 (2254-432)	33,079	33,079	36,355	38,925	2,000	○ 내역사업인 **'청소년쉼터'** (311억 9,500만원, 전년 본예산 대비 31억 6,500만원 증액)는 가정 밖 등 위기청소년의 생활·보호 지원을 위한 쉼터를 운영하는 것임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할 수 있도록 정착 지원하기 위한 **'시설퇴소청소년 자립정착금'** 사업의 신규 추진을 위하여 20억원 증액 ※ 산출내역: 400명×10백만원×50%	
						400	○ 내역사업인 **'청소년복지시설 기능보강'** (1억원, 전년동) 사업은 노후된 청소년복지시설 개보수 및 장비·기자재를 교체하는 사업임 ○ 2026년 신규 수요(65개소)를 반영하여 4억원 증액 ※ 산출내역: 65개소×12.3백만원×50%	
						170	○ 내역사업인 **'청소년자립지원관'** (22억 900만원, 전년 본예산 대비 1억 5,800만원 증액) 사업은 전국 9개 시·도 13개소에 불과하고, 수도권에 편중(서울2, 인천2, 경기3)되어 있음. ○ 충청북도 충주시에 청소년자립지원관 1개소를 확충하기 위해 1억 7,000만원 증액 ※ 산출내역: 1개소×338백만원×50%=1억 7,000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당초	수정					
4	**청소년 치료재활센터 운영 (2254-434)**	11,041	11,041	12,741	13,730	644	○ 내역사업인 **'중앙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86억 3,300만원, 전년 본예산 대비 15억 5,100만원 증액) 사업은 정서·행동 문제 청소년 대상 거주형 치료재활전문기관운영 지원 사업임. ○ 중앙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위험수당 1억 2,000만원 및 종사자들의 현장 중심 상시 전문교육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5억 2,400만원 등 총 6억 4,400만원 증액 ※ 산출내역: 종사자 처우개선 위험수당: 10만원×100명×12월=1억 2,000만원 종사자 전문교육: 7,600천원×69명x1식=5억 2,400만원	
						345	○ 내역사업인 **'지역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41억 800만원, 전년 본예산 대비 1억 4,900만원 증액)은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정서·행동 문제 청소년 대상 거주형 치료재활전문기관운영 지원 사업임. ○ 지역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위험수당 5,600만원 및 종사자들의 현장 중심 상시 전문교육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2억 8,900만원 등 총 3억 4,500만원 증액 ※ 산출내역: 종사자 처우개선 위험수당: 10만원×47명×12월=5,600만원 종사자 전문교육: 7,600천원×38명x1식=2억 8,900만원	

Ⅲ. 부대의견

가. 성평등가족부

○ 성평등가족부는 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 사업에서 다른 기관의 사업비가 소진되면 사업비 여력이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지원 신청 건을 연계하고 있으나, 연계가 곧 지원실적으로 이어지지 않으므로 연계 건수와 실제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실적 건수를 모두 집계한다.

○ 성평등가족부는 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 사업을 2024년부터 민간경상보조(320-01)와 민간위탁사업(320-02)으로 구분하여 편성하고 있는데, 예산집행체계를 이원화할 필요성이 적고 동일한 기관에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서로 다른 비목이 집행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보다 많은 피해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비목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 성평등가족부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퇴소시 지급하는 자립지원금의 집행실적이 부진한 이유 및 지역별 예산수요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방안을 모색한다.

○ 성평등가족부는 법무부 소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편성된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이 성평등가족부 소관인 일반회계 또는 양성평등기금으로 이관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한다.

○ 성평등가족부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편성되어 있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의 경우 해바라기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및 인프라 확충,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료회복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강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생계비 단가 현실화 등을 위한 증액이 필요하므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법무부 및 재정당국과 협의한다.

○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사업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액, 영아 추가지원금의 적정 수준 인상을 검토하고, 청소년한부모 대상 복지 급여 지원을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평가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2331-434) 사업으로 이관한다.

○ 성평등가족부는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중 가족센터 운영과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에 각각 편성된 유사 사업을 통합하여 편성·관리하고,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중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등 필수적인 사업은 다문화가족센터의 기본사업으로 전환하며, 특성화사업 전담인력에 대하여 고용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근무환경 실태조사·점검 등 고용환경을 개선한다.

○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 원스톱 지원사업은 고립·은둔 청년지원 사업(보건복지부)과는 별도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관내 유관 기관과의 연계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2026년 신규센터 설치시 부처별 역할분담

및 지원기준 등을 사전에 명확히하는 지침 등을 마련한다.

○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 상담 1388 종합전화상담센터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중복되지 않고 차별적으로 운영되도록 한다.

○ 성평등가족부는 경기도에 청소년 인구가 많으므로 청소년복지시설 추가 건립여부를 검토한다.

2026년도 성평등가족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2025. 11.

성 평 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목 차

Ⅰ. 예산안 개요 ····· 1

1. 재정규모 ····· 3

2. 예산안 현황 ····· 6

가. 세입예산안 ····· 6

나. 세출예산안 ····· 7

3. 기금운용계획안 현황 ····· 9

가. 양성평등기금 ····· 9

나. 청소년육성기금 ····· 13

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17

4. 분야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현황 ····· 19

가. 성평등정책관 ····· 19

나. 고용평등정책관 ····· 21

다. 안전인권정책관 ····· 23

라. 청소년정책관 ····· 26

마. 가족정책관 ····· 29

바. 기획조정실, 대변인실, 운영지원과 ····· 32

5. 2026년도 신규 사업 및 종료 사업 ····· 35

Ⅱ. 검토 의견 ····· 39

1. 총괄 ····· 39

가. 성평등가족부 조직개편 ····· 39

1) 개요 ····· 39

2) 성평등가족부 조직개편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 증액 필요 ····· 41

2. 성평등정책관 ····· 49

가. 총괄 ····· 49

1) 개요 ····· 49

2) 주요 증·감액사업 현황 ····· 50

나. 일반회계 ····· 53

1) 양성평등문화확산(1232-331) ····· 53

2) 여성사전시관(1232-332) ····· 59

3)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원(1233-341) ····· 73

다. 성평등가족부 성인지 예산안 등 ····· 77

1) 개요 ····· 77

2) 성과평가 결과 환류를 위한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 개선 필요 ·· 79

3. 고용평등정책관 ····· 82

가. 총괄 ····· 82

1) 개요 ····· 82

2) 주요 증·감액사업 현황 ····· 83

나. 일반회계 ····· 86

1)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1234-311) ····· 86

2)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지원(1235-330) ····· 94

4. 안전인권정책관 ····· 100

가. 총괄 ····· 100

1) 개요 ····· 100

2) 주요 증·감액사업 현황 ····· 103

나. 일반회계 ····· 106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2131-341) ····· 106

2)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2136-318) ····· 113

3)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지원(2136-319) ····· 124

4)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2136-438) ····· 131

다. 양성평등기금 ····· 141

1)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2159-432) ····· 141

라.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157

1) 성폭력 피해자 지원(1136-303) ····· 157

5. 청소년정책관 ····· 172

가. 총괄 ····· 172

1) 개요 ····· 172

2) 주요 증·감액사업 현황 ····· 175

나. 일반회계 ····· 178

1)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구축(2231-311) ····· 178

2)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피해예방(2233-332) ····· 185

3)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2233-335) ····· 193

4)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운영지원(2237-371) ····· 197

다. 청소년육성기금 ····· 206

1)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2254-431) ····· 206

6. 가족정책관 ····· 211

가. 총괄 ····· 211

1) 개요 ····· 211

2) 주요 증·감액사업 현황 ····· 214

나. 일반회계 ····· 218

1) 아이돌봄 지원(2334-341) ····· 218

2)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2335-352) ····· 241

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261

1) 가족센터 건립(2333-334) ····· 261

라. 양성평등기금 ····· 268

1)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2331-433) ····· 268

2)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2356-432) ····· 280

[참고자료] ····· 293

1. 박물관자료 관련 법령 발췌 ····· 293

2. 성평등가족부 2026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현황 ····· 295

3.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 규정 ····· 298

4. 성과평가 작성 관련 매뉴얼 발췌 ····· 299

문 의 처	
총괄	02)6788 - 5643
가족정책관	02)6788 - 5649
성평등정책관· 고용평등정책관	02)6788 - 5650
안전인권정책관	02)6788 - 5644
청소년정책관	02)6788 - 5645

Ⅰ 예산안 개요

Ⅰ. 예산안 개요

1. 재정규모

2026년도 성평등가족부 소관 재정규모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사업을 포함하여[1] 총 2조 893억 7,9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2,299억 9,400만원(12.4%)이 증가하였음.

법무부가 관리·운용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제외할 경우 2조 489억 8,5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2,290억 1,300만원(12.6%)이 증가하였음.

【 2026년도 성평등가족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표 】

(총계 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
총 계	**1,818,882**	**1,819,972**	**2,048,985**	**229,013**	**12.6**
(범피기금 포함)	**(1,858,295)**	**(1,859,385)**	**(2,089,379)**	**(229,994)**	**(12.4)**
일반회계	714,825	715,915	894,957	179,042	25.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91,663	91,663	129,825	38,162	41.6
양성평등기금	841,022	841,022	874,808	33,786	4.0
청소년육성기금	171,372	171,372	149,395	-21,977	△12.8
범죄피해자보호기금	39,413	39,413	40,394	981	2.5

주: 1. 고용노동부 이체예산(('25 본예산)+577백만원, ('26)+12,951백만원) 포함
2. 기금의 경우 계획은 예산, 당초계획은 본예산, 수정계획은 추경을 의미
자료: 성평등가족부

1)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법무부 소관이지만 그 중 성평등가족부가 수행하는 사업(성폭력 피해자지원사업)에 대한 국회의 심사에 있어서는 성평등가족부의 지출 규모에 포함시켜 살펴볼 필요가 있음.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및 내부거래를 제외하고,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사업비를 포함한 성평등가족부의 2026년도 실제적인 총지출 규모는 1조 9,995억 8,5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2,201억 7,600만원(12.4%)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국가 총지출 728조원에서 0.27%를 차지하는 규모임.

【 2026년도 성평등가족부 소관 총지출 규모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
예산 소계(a)	**806,488**	**807,578**	**1,024,782**	**217,204**	**26.9**
일반회계	714,825	715,915	894,957	179,042	25.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91,663	91,663	129,825	38,162	41.6
기금 소계(b)	**932,418**	**932,418**	**934,409**	**1,991**	**0.2**
양성평등기금	776,927	776,927	805,291	28,364	3.7
청소년육성기금	155,491	155,491	129,118	△26,373	△17.0
총지출 규모(a+b)	**1,738,906**	**1,739,996**	**1,959,191**	**219,195**	**12.6**
범죄피해자보호기금(c)	39,413	39,413	40,394	981	2.5
합계(a+b+c)	**1,778,319**	**1,779,409**	**1,999,585**	**220,176**	**12.4**

주: 기금의 경우 계획은 예산, 당초계획은 본예산, 수정계획은 추경을 의미
자료: 성평등가족부

정책분야별로 성평등가족부의 지출 규모를 보면,

성평등정책 분야는 2,878억 8,4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265억 5,200만원(10.2%)이 증가하였고,

청소년정책 분야는 2,679억 3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229억 6,100만

원(9.4%)이 증가하였음.

가족정책 분야는 1조 4,019억 5,3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1,700억원(13.8%)이 증가하였으며,

행정지원 분야는 418억 4,5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6억 6,300만원(1.6%) 증가하였음.

【 2026년도 정책 분야별 지출 규모 】

(총지출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
합계	**1,778,319**	**1,779,409**	**1,999,585**	**220,176**	**12.4**
성평등정책	**260,242**	**261,332**	**287,884**	**26,552**	**10.2**
성평등	32,017	32,017	39,635	7,618	23.8
고용평등	88,837	88,837	102,111	13,274	14.9
안전인권	139,388	140,478	146,138	5,660	4.0
청소년정책	**244,942**	**244,942**	**267,903**	**22,961**	**9.4**
가족정책	**1,231,953**	**1,231,953**	**1,401,953**	**170,000**	**13.8**
행정지원	**41,182**	**41,182**	**41,845**	**663**	**1.6**

주: 1.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중 성평등가족부 소관사업 포함, 여유자금 운용 제외
2. 행정지원: 인건비, 기본경비, 기금관리비, 행정능률향상 및 민원서비스개선, 정보화추진(정보화)
3. 기금의 경우 계획은 예산, 당초계획은 본예산, 수정계획은 추경을 의미
4. 성평등정책(고용평등) 이체예산(('25 본예산)+518백만원, ('26)+12,694백만원) 및 행정지원(인건비) 이체예산(('25 본예산)+59백만원, ('26)+257백만원)) 포함

자료: 성평등가족부

2. 예산안 현황

가. 세입예산안

성평등가족부의 2026년도 세입예산안은 355억 5,0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22억 2,800만원(6.7%)이 증가하였음.

【 2026년도 성평등가족부 세입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예산 (A)	2026년 예산안 (B)	증 감	
			B-A	%
합 계	**33,322**	**35,550**	**2,228**	**6.7**
일반회계 소계	**32,942**	**32,612**	**△330**	**△1.0**
◦ 건물대여료	20	20	-	-
◦ 기타재산·이자수입	2,922	2,927	5	0.2
◦ 기타경상이전수입	30,000	29,665	△335	△1.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소계	**380**	**2,938**	**2,558**	**673.2**
◦ 기타재산·이자수입	-	152	152	순증
◦ 기타경상이전수입	380	2,786	2,406	633.2

자료: 성평등가족부

이는 국고보조금 정산잔액 반환금 등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기타경상이전수입 및 기타재산·이자수입 증가에서 기인함.

나. 세출예산안

성평등가족부의 2026년도 세출예산안 총액은 1조 247억 8,2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2,172억 400만원(26.9%)이 증가하였음.

【 2026년도 성평등가족부 세출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
합 계	**806,488**	**807,578**	**1,024,782**	**217,204**	**26.9**
일반회계 소계	**714,825**	**715,915**	**894,957**	**179,042**	**25.0**
◦ 인건비	24,997	24,997	26,295	1,298	5.2
◦ 기본경비	4,332	4,332	3,434	-898	△20.7
◦ 주요사업비	685,496	686,586	865,228	178,642	26.0
- 성평등정책	57,857	58,947	79,285	20,338	34.5
- 청소년정책	94,426	94,426	107,612	13,186	14.0
- 가족정책	521,404	521,404	666,265	144,861	27.8
- 행정지원	11,809	11,809	12,066	257	2.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소계	**91,663**	**91,663**	**129,825**	**38,162**	**41.6**
◦ 주요사업비	**91,663**	**91,663**	**129,825**	**38,162**	**41.6**
- 고용평등정책	87,713	87,713	88,411	698	0.8
- 청소년정책	-	-	36,319	36,319	순증
- 가족정책	3,950	3,950	5,095	1,145	29.0

주: 인건비 이체예산(('25 본예산)+59백만원, ('26)+257백만원) 및 고용평등정책 이체예산(('25 본예산)+518백만원, ('26)+12,694백만원) 포함

자료: 성평등가족부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8,949억 5,7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1,790억 4,200만원(25.0%)이 증가하였음. 일반회계 예산안의 증가는 아이돌봄지원 사업 예산이 1,252억 7,700만원 증액된 것이 주된 요인임.

2026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은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사업 예산과 청소년방과후활동 지원 및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 가족센터건립 사업 예산으로 총 1,298억 2,500만원이며, 2025년 대비 381억 6,200만원(41.6%)이 증가하였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의 증가는 청소년방과후활동 지원 및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이 청소년육성기금에서 이관되어 온 것이 주요인임.

3. 기금운용계획안 현황

가. 양성평등기금

양성평등기금의 2026년 수입·지출계획안을 보면, 총 규모는 8,748억 800만원으로 2025년 수정계획(8,410억 2,200만원) 대비 337억 8,600만원(4.0%)이 증가하였음.

2026년도 양성평등기금의 수입계획안은 자체수입 314억 2,300만원, 정부내부수입 8,052억 9,000만원, 여유자금회수 380억 9,500만원 등으로 이루어짐.

지출계획안은 사업비 8,052억 9,000만원, 기금운영비 100만원, 정부내부지출 373억 2,200만원, 여유자금 운용 321억 9,5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음.

사업비는 2025년 수정계획에 비해 283억 6,400만원(3.7%)이 증가하였음.

【 2026년도 양성평등기금 수입·지출 총괄표 】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안(B)	증 감	
			당초	수정(A)		B-A	%
수입	◦자체수입	50,668	18,776	18,776	31,423	12,647	67.4
	- 기타재산수입	3,855	1,128	1,128	2,056	928	82.3
	- 기타경상이전수입	46,813	17,647	17,647	29,366	11,719	66.4
	- 민간융자원금회수	-	1	1	1	-	-
	◦정부내부수입	737,764	776,926	776,926	805,290	28,364	3.7
	- 일반회계전입금	-	-	-	-	-	-
	- 기금전입금	737,764	776,926	776,926	805,290	28,364	3.7
	◦여유자금회수	51,463	45,320	45,320	38,095	△7,225	△15.9
	- 한국은행예치금회수	2,954	-	-	-	-	-
	-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48,509	45,320	45,320	38,095	△7,225	△15.9
합계		**839,895**	**841,022**	**841,022**	**874,808**	**33,786**	**4.0**
지출	◦사 업 비	735,980	776,926	776,926	805,290	28,364	3.7
	- 경상지출	735,980	776,926	776,926	805,290	28,364	3.7
	- 융자지출	-	-	-	-	-	-
	◦기금운영비	1	1	1	1	-	-
	- 인건비	-	-	-	-	-	-
	- 기타운영비	1	1	1	1	-	-
	◦정부내부지출	17,305	26,000	26,000	37,322	11,322	43.6
	- 복권기금 전출금	17,305	26,000	26,000	37,322	11,322	43.6
	◦여유자금운용	86,609	38,095	38,095	32,195	△5,900	△15.5
	- 한국은행예치금	4,829	-	-		-	-
	-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81,780	38,095	38,095	32,195	△5,900	△15.5

주: 기금의 경우 계획은 예산, 당초계획은 본예산, 수정계획은 추경을 의미
자료: 성평등가족부

양성평등기금의 주요 지출계획을 단위사업 수준에서 살펴보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비는 207억 8,300만원으로, 2025년(190억 3,700만원) 대비 17억 4,600만원(9.2%)이 증가하였음.

가정폭력·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 사업비는 539억 1,400만원으로, 2025년(512억 9,000만원) 대비 26억 2,400만원(5.1%)이 증가하였음.

한부모가족지원 사업비는 5,792억 1,400만원으로, 2025년(5,614억 200만원) 대비 178억 1,200만원(3.2%)이 증가하였음.

가족서비스 지원 사업비는 1,513억 7,900만원으로, 2025년(1,451억 9,700만원) 대비 61억 8,200만원(4.3%)이 증가하였음.

【 2026년도 양성평등기금 사업계획안 】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안(B)	증 감	
	당초	수정(A)		B-A	%
총계	**841,022**	**841,022**	**874,808**	**33,786**	**4.0**
□ 주요사업비	**776,926**	**776,926**	**805,290**	**28,364**	**3.7**
〔215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19,037	19,037	20,783	1,746	9.2
〔33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19,037	19,037	20,783	1,746	9.2
〔2159〕 가정폭력·성폭력피해회복및재발방지사업	51,290	51,290	53,914	2,624	5.1
〔432〕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43,167	43,167	45,319	2,152	5.0
〔436〕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사업	8,123	8,123	8,595	472	5.8
〔2331〕 한부모가족지원(기금)	561,402	561,402	579,214	17,812	3.2
〔431〕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552,833	552,833	572,246	19,413	3.5
〔433〕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2,723	2,723	2,301	△422	△15.5
〔434〕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지원	5,846	5,846	4,667	△1,179	△20.2
〔2356〕 가족서비스 지원	145,197	145,197	151,379	6,182	4.3
〔432〕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	145,197	145,197	151,379	6,182	4.3
□ 기금운영비	**1**	**1**	**1**	**-**	**-**
〔7176〕 양성평등기금 기금운영비	1	1	1	-	-
〔601〕 기금관리비	1	1	1	-	-
□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	**64,095**	**64,095**	**69,517**	**5,422**	**8.5**
〔8999〕 복권기금전출(양성평등기금)	26,000	26,000	37,322	11,322	43.5
〔840〕 양성평등기금에서 복권기금으로의 전출	26,000	26,000	37,322	11,322	43.5
〔9701〕 여유자금운용(양성평등기금)	38,095	38,095	32,195	△5,900	△15.5
〔972〕 비통화금융기관예치	38,095	38,095	32,195	△5,900	△15.5

주: 기금의 경우 계획은 예산, 당초계획은 본예산, 수정계획은 추경을 의미

나. 청소년육성기금

청소년육성기금의 2026년도 수입·지출 계획안을 보면, 총 규모는 1,493억 9,500만원으로, 2025년 수정계획(1,713억 7,200만원) 대비 219억 7,700만원(12.8%)이 감소하였음.

2026년도 청소년육성기금의 수입은 기타 재산수입 7억 6,900만원, 기타경상이전수입 66억 100만원, 기타잡수익 60억 5,200만원, 기금전입금 1,280억 5,200만원, 여유자금 회수 79억 2,1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출계획안의 내역은 사업비 1,290억 6,900만원, 기금운영비 4,900만원, 복권기금 전출금 87억 5,400만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전출 6억 6,300만원, 여유자금 운용 108억 6,0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사업비는 2025년 계획 대비 263억 7,900만원(△17.0%)이 감소하였음.

【 2026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수입·지출 총괄표 】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안 (B)	증 감	
			당초	수정(A)		B-A	%
수입	◦ 자체수입	16,985	10,974	10,974	13,422	2,448	22.3
	- 기타재산수입	1,050	454	454	769	315	69.4
	- 민간출연금	-	-	-	-	-	-
	- 기타경상이전수입	8,786	6,397	6,397	6,601	204	3.2
	- 기타잡수입	7,149	4,123	4,123	6,052	1,929	46.8
	◦ 정부내부수입	151,383	151,259	151,259	128,052	△23,207	△15.3
	- 기금전입금	148,383	151,259	151,259	128,052	△23,207	△15.3
	- 기금예수금	3,000	-	-	-	-	-
	◦ 여유자금회수	9,320	9,139	9,139	7,921	△1,218	△13.3
	- 한국은행예치금회수	1,837	-	-	-	-	-
	-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7,483	9,139	9,139	7,921	△1,218	△13.3
합계		**177,687**	**171,372**	**171,372**	**149,395**	**△21,977**	**△12.8**
지출	◦ 사 업 비	154,837	155,448	155,448	129,069	△26,379	△17.0
	- 경상지출	154,837	155,448	155,448	129,069	△26,379	△17.0
	- 융자지출	-	-	-	-	-	-
	◦ 기금운영비	43	43	43	49	6	14.0
	- 인건비	38	39.5	39.5	46.3	6.8	17.2
	- 기타운영비	5	3.5	3.5	2.7	△0.8	△22.8
	◦ 정부내부지출	5,117	7,960	7,960	9,417	1,457	18.3
	- 복권기금 전출금	4,512	7,200	7,200	8,754	1,554	21.6
	- 공공자금관리기금 전출	605	760	760	663	△97	△12.8
	◦ 여유자금운용	17,690	7,921	7,921	10,860	2,939	37.1
	- 한국은행예치금	2,220	-	-	-	-	-
	-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15,470	7,921	7,921	10,860	2,939	37.1

주: 기금의 경우 계획은 예산, 당초계획은 본예산, 수정계획은 추경을 의미

자료: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육성기금의 주요 지출계획을 단위사업 수준에서 살펴보면,

아동·청소년 성보호 활동 사업비는 50억 9,700만원으로, 2025년(49억 3,200만원) 대비 1억 6,500만원(3.3%)이 증가하였으며, 청소년 참여 및 활동지원 사업비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이관으로 2025년(303억 8,700만원) 대비 순감하였음.

청소년시설 및 단체지원 사업비는 10억 1,700만원으로, 일부 내역사업(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의 이관으로 2025년(41억 8,900만원) 대비 31억 7,200만원(△75.7%)이 감소하였으며,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 사업비는 1,229억 5,500만원으로, 2025년(1,159억 4,000만원) 대비 70억 1,500만원(6.1%)이 증가하였음.

【 2026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사업계획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안 (B)	증 감	
	당초	수정(A)		B-A	%
총계	**171,372**	**171,372**	**149,395**	**△21,977**	**△12.8**
□ 주요사업비	**155,448**	**155,448**	**129,069**	**△26,379**	**△17.0**
〔2138〕 아동·청소년 성보호 활동	4,932	4,932	5,097	165	3.3
〔432〕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교육	4,932	4,932	5,097	165	3.3
〔2251〕 청소년 참여 및 활동지원	30,387	30,387	-	△30,387	순감
〔432〕 청소년방과후활동 지원	30,387	30,387	-	△30,387	순감
〔2252〕 청소년시설 및 단체지원	4,189	4,189	1,017	△3,172	△75.7
〔436〕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	4,189	4,189	1,017	△3,172	△75.7
〔2254〕 청소년 사회안전망구축	115,940	115,940	122,955	7,015	6.1
〔431〕 청소년 사회안전망구축	71,820	71,820	73,859	2,039	2.8
〔432〕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33,079	33,079	36,355	3,276	9.9
〔434〕 청소년 치료재활센터운영	11,041	11,041	12,741	1,700	15.4
□ 기금운영비	**43**	**43**	**49**	**6**	**14.0**
〔7076〕 기금운영비	43	43	49	6	14.0
〔201〕 기금관리비	43	43	49	6	14.0
□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	**15,881**	**15,881**	**20,277**	**4,396**	**27.7**
〔8910〕 복권기금 전출(청소년육성기금)	7,200	7,200	8,754	1,554	21.6
〔840〕 청소년육성기금에서 복권기금으로 전출	7,200	7,200	8,754	1,554	21.6
〔8920〕 공공자금관리기금 전출	760	760	663	△97	△12.8
〔840〕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760	760	663	△97	△12.8
〔9701〕 여유자금운용(청소년육성기금)	7,921	7,921	10,860	2,939	37.1
〔972〕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	7,921	7,921	10,860	2.939	37.1

주: 기금의 경우 예산은 계획, 본예산은 당초계획, 추경은 수정계획을 의미
자료: 성평등가족부

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2]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관리·운용주체인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2026년도 수입·지출 계획안 총 규모는 1,451억 4,200만원으로, 2025년(1,448억 7,700만원) 대비 2억 6,500만원(0.2%)이 증액되었음.

동 기금의 2026년도 지출 계획안을 살펴보면 사업비가 총 1,024억 7,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이 중 성평등가족부가 수행하는 세부사업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1136-303) 사업의 2026년도 계획안은 403억 9,4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9억 8,100만원(2.5%)이 증액되었음.

---

2)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법무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제5조(기금의 용도) ① 법 제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에 따른 상담, 의료 제공,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및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설치·운영
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4. 「아동복지법」 제45조 및 제50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운영
5. 「법률구조법」 제21조의2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6.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9조 및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신변 보호에 관련된 조치
7.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
8.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2조에 따른 형사조정위원의 수당 등의 지급

【 2026년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수입·지출 계획안 】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계획(A)	2026년 계획안(B)	증 감	
				B-A	%
수입	◦ 재산수입	730	1,023	293	40.1
	- 기타재산이자수입	730	1,023	293	40.1
	◦ 경상이전수입	4,883	4,927	44	0.9
	- 변상금	1,719	1,818	99	5.8
	- 기타경상이전수입	3,164	3,109	△55	△1.7
	◦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50,502	48,046	△2,456	△4.9
	-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50,502	48,046	△2,456	△4.9
	◦ 정부내부수입및기타	88,762	91,146	2,384	2.7
	- 일반회계전입금	88,762	91,146	2,384	2.7
합계		**144,877**	**145,142**	**265**	**0.2**
지출	◦ 사업비	94,545	102,473	7,928	8.4
	- [1135]강력범죄등피해자보호및지원	40,005	48,281	8,276	20.7
	- [1136]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	54,540	54,192	△348	△0.6
	▪ [303]성폭력 피해자 지원	**39,413**	**40,394**	**981**	**2.5**
	◦ 기금운영비	48	60	12	25.0
	- 기금관리비	48	60	12	25.0
	◦ 기금간거래(예수금상환)	2,230	-	△2,230	순감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	2,230	-	△2,230	순감
	◦ 기금간거래	15	-	△15	순감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	15	-	△15	순감
	◦ 여유자금운용	48,039	42,609	△5,430	△11.3
	- 통화금융기관예치	48,039	42,609	△5,430	△11.3

자료: 2026년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수입각목명세서, 지출총괄표(법무부)

4. 분야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현황

가. 성평등정책관

성평등정책관 소관의 2026년 예산안은 일반회계에 총 279억 1,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025년(193억 4,200만원) 대비 85억 6,900만원(44.3%)이 증가하였음.

【 2026년도 성평등정책관 소관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
합 계	**19,342**	**19,342**	**27,911**	**8,569**	**44.3**
일반회계	19,342	19,342	27,911	8,569	44.3

자료: 성평등가족부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여성사전시관은 2025년(24억 1,100만원) 대비 69억 600만원(286.4%) 증액된 93억 1,700만원, 양성평등문화확산은 2025년(6억 7,100만원) 대비 5억 6,800만원(84.6%) 증액된 12억 3,9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6년도 성평등정책관 예산안 사업별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
계	**19,342**	**19,342**	**27,911**	**8,569**	**44.3**
일반회계	**19,342**	**19,342**	**27,911**	**8,569**	**44.3**
여성정책전략기반구축	318	318	732	414	130.2
성인지정책 분석 평가 운영	3,940	3,940	3,821	△119	△3.0
양성평등문화확산	671	671	1,239	568	84.6
여성사전시관	2,411	2,411	9,317	6,906	286.4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원	11,796	11,796	12,642	846	7.2
여성정책기본경비(총액)	83	83	37	△46	△55.4
여성정책기본경비(비총액)	123	123	123	-	-

자료: 성평등가족부

나. 고용평등정책관

고용평등정책관 소관의 2026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총액은 1,021억 1,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025년(1,008억 200만원) 대비 13억 900만원(1.3%)이 증가하였음.

【 2026년도 고용평등정책관 소관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
합 계	**88,837 (100,802)**	**88,837 (100,802)**	**102,111**	**13,274 (1,309)**	**14.9 (1.3)**
일반회계	1,124 (13,809)	1,124 (13,809)	13,700	12,576 (611)	1,118.9 (4.7)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87,713	87,713	88,411	698	0.8

주 : 괄호안은 이체된 예산을 포함한 해당 사업들의 본예산 금액의 합임
자료: 성평등가족부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여성인재양성 및 사회참여 확대는 2025년(6억 600만원) 대비 4억원(66.0%) 증액된 10억 600만원이 편성되었고,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은 고용노동부 소관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사업' 등[3]이 정부조직 개편으로 이관된 것으로, 2025년(114억 8,100만원) 대비 3억 1,100만원(2.7%)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여성경제활동 촉

3) 이관된 사업에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사업(2025년도 예산 114억 8100만원)과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운영지원 사업 내 집단상담 종사자 교육비(2025년도 예산 6,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음.

진지원 사업으로 117억 9,200만원이 편성되었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지원사업도 이관되어 2025년(10억 200만원) 대비 1억(9.98%) 감액된 9억 200만원이 편성되었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은 2025년(877억 1,300만원) 대비 6억 9,800만원(0.8%)이 증액된 884억 1,1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6년도 고용평등정책관 예산안 사업별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
합계	**88,837 (100,802)**	**88,837 (100,802)**	**102,111**	**13,274 (1,309)**	**14.9 (1.3)**
일반회계	**1,124 (13,809)**	**1,124 (13,809)**	**13,700**	**12,576 (611)**	**1,118.9 (4.7)**
여성인재양성 및 사회참여 확대	606	606	1,006	400	66.0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256 (11,481)	256 (11,481)	11,792	11,536 (311)	4,506.3 (2.7)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지원	262 (1,002)	262 (1,002)	902	640 (△100)	244.3 (△1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87,713**	**87,713**	**88,411**	**698**	**0.8**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87,713	87,713	88,411	698	0.8

주: 괄호안은 이체된 예산을 포함한 해당 사업의 본예산 금액임
자료: 성평등가족부

다. 안전인권정책관

안전인권정책관 소관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범죄피해자보호기금 포함)은 총 1,463억 4,700만원으로, 2025년(1,408억 5,200만원, 추경 10억 9,000만원 포함) 대비 54억 9,500만원(3.9%)이 증가하였음.

일반회계 예산안은 2025년(261억 8,000만원) 대비 2,100만원(△0.1%)이 감소한 261억 5,900만원이고, 양성평등기금 계획안은 2025년(703억 2,700만원) 대비 43억 7,000만원(6.2%)이 증가한 746억 9,700만원이며, 청소년육성기금 계획안은 2025년(49억 3,200만원) 대비 1억 6,500만원(3.3%)이 증가한 50억 9,700만원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2025년(394억 1,300만원) 대비 9억 8,100만원(2.5%)이 증가한 403억 9,400만원임.

【 2026년도 안전인권정책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
합 계	**139,762**	**140,852**	**146,347**	**5,495**	**3.9**
일반회계	25,090	26,180	26,159	△21	△0.1
양성평등기금	70,327	70,327	74,697	4,370	6.2
청소년육성기금	4,932	4,932	5,097	165	3.3
범죄피해자보호기금	39,413	39,413	40,394	981	2.5

주: 기금의 경우 계획은 예산, 당초계획은 본예산, 수정계획은 추경을 의미
자료: 성평등가족부

주요 사업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은 2025년(147억 8,800만원) 대비 4억 6,000만원(3.1%)이 증가한 152억 4,800만원,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는 16억 9천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양성평등기금에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은 2025년(190억 3,700만원) 대비 17억 4,600만원(9.2%)이 증가한 207억 8,300만원,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은 2025년(431억 6,700만원) 대비 21억 5,200만원(5.0%)이 증가한 453억 1,900만원이 편성되었음.

청소년육성기금에서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교육은 2025년(49억 3,200만원) 대비 1억 6,500만원(3.3%)이 증가한 50억 9,700만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은 2025년(394억 1,300만원) 대비 9억 8,100만원(2.5%)이 증가한 403억 9,4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6년 안전인권정책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예산안 (B)	증감	
	본예산	추경 (A)		(B-A)	%
안전인권정책관 예산(범피포함)	**139,762**	**140,852**	**146,347**	**5,495**	**3.9**
일반회계	**25,090**	**26,180**	**26,159**	**△21**	**△0.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1,045	1,045	980	△65	△6.2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	4,054	4,054	2,701	△1,353	△33.4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13,698	14,788	15,248	460	3.1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401	401	533	132	32.9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성보호활동지원	5,518	5,518	4,798	△720	△13.0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	-	-	1,690	1,690	순증
권익증진기본경비(총액)	141	141	14	△127	△90.1
권익증진기본경비(비총액)	233	233	195	△38	△16.3
양성평등기금	**70,327**	**70,327**	**74,697**	**4,370**	**6.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지원	19,037	19,037	20,783	1,746	9.2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43,167	43,167	45,319	2,152	5.0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사업	8,123	8,123	8,595	472	5.8
청소년육성기금	**4,932**	**4,932**	**5,097**	**165**	**3.3**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교육	4,932	4,932	5,097	165	3.3
범죄피해자보호기금	39,413	39,413	40,394	981	2.5
성폭력 피해자 지원	39,413	39,413	40,394	981	2.5

주: 기금의 경우 계획은 예산, 당초계획은 본예산, 수정계획은 추경을 의미
자료: 성평등가족부

라. 청소년정책관

청소년정책관 소관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2,682억 7,800만원으로, 2025년(2,455억 2,800만원) 대비 227억 5,000만원(9.3%)이 증가하였음.

일반회계 예산안은 2025년(950억 1,200만원) 대비 129억 7,500만원(13.7%)이 증가한 1,079억 8,700만원이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대비 순증하여 363억 1,900만원이며, 청소년육성기금 지출계획안은 2025년(1,505억 1,600만원) 대비 265억 4,400만원(△17.6%)이 감소한 1,239억 7,200만원임.

【 2026년도 청소년정책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
합 계	**245,528**	**245,528**	**268,278**	**22,750**	**9.3**
일반회계	95,012	95,012	107,987	12,975	13.7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	36,319	36,319	순증
청소년육성기금	150,516	150,516	123,972	△26,544	△17.6

주: 기금의 경우 계획은 예산, 당초계획은 본예산, 수정계획은 추경을 의미
자료: 성평등가족부

주요사업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구축은 2025년(24억 2,700만원) 대비 17억 4,400만원(71.9%)이 증액된 41억 7,100만원,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은 2025년(57억 600만원) 대비 31억 6,700원(55.5%)이 증액된 88억 7,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운영은 2025년(93억 5,400만원) 대비 35억 6,400만원(38.1%)이 증액된 129억 1,800만원이 편성되었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청소년방과후활동 지원은 2025년 청소년육성기금에서 세부사업이 이관되어 324억 7,400만원,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은 2025년 청소년육성기금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 사업이 일부 이관되어 38억 4,500만원이 신규 편성됨.

청소년육성기금에서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은 2025년(110억 4,100만원) 대비 17억(15.4%)이 증액된 127억 4,100만원,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2025년(330억 7,900만원) 대비 32억 7,600만원(9.9%)이 증액된 363억 5,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청소년 사회안전망구축은 2025년(718억 2,000만원) 대비 20억 3,900만원(△2.8%)이 증액된 738억 5,9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5년도 청소년정책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별 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
청소년정책관	**245,528**	**245,528**	**268,278**	**22,750**	**9.3**
일반회계	**95,012**	**95,012**	**107,987**	**12,975**	**13.7**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구축	2,427	2,427	4,171	1,744	71.9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16,425	16,425	16,575	150	0.9
청소년 유해환경개선 및 피해예방	8,328	8,328	8,988	660	7.9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	5,706	5,706	8,873	3,167	55.5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	12,727	12,727	11,667	△1,060	△8.3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운영지원	39,459	39,459	44,420	4,961	12.6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운영지원	9,354	9,354	12,918	3,564	38.1
청소년정책관 기본경비(총액대상)	275	275	87	△188	△68.4
청소년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311	311	288	△23	△7.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	**36,319**	**36,319**	**순증**
청소년방과후활동 지원	-	-	32,474	32,474	순증
청소년 지도사 배치지원	-	-	3,845	3,845	순증
청소년육성기금	**150,516**	**150,516**	**123,972**	**△26,544**	**△17.6**
청소년방과후활동 지원	30,387	30,387	-	△30,387	순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	4,189	4,189	1,017	△3,172	△75.7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	71,820	71,820	73,859	2,039	2.8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33,079	33,079	36,355	3,276	9.9
청소년 치료재활센터 운영	11,041	11,041	12,741	1,700	15.4

주: 기금의 경우 계획은 예산, 당초계획은 본예산, 수정계획은 추경을 의미
자료: 성평등가족부

마. 가족정책관

가족정책관 소관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1조 4,020억 9,700만원으로 2025년(1조 2,321억 1,400만원) 대비 1,699억 8,300만원(13.8%)이 증가하였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5년(5,215억 6,500만원) 대비 1,448억 4,400만원(27.8%)이 증가한 6,664억 900만원이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은 2025년(39억 5,000만원) 대비 11억 4,500만원(29.0%)이 증가한 50억 9,500만원이며, 양성평등기금 계획안은 2025년(7,065억 9,900만원) 대비 239억 9,400만원(3.4%)이 증가한 7,305억 9,300만원임.

【 2026년도 가족정책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
합 계	1,232,114	1,232,114	1,402,097	169,983	13.8
일반회계	521,565	521,565	666,409	144,844	27.8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950	3,950	5,095	1,145	29.0
양성평등기금	706,599	706,599	730,593	23,994	3.4

주: 기금의 경우 계획은 예산, 당초계획은 본예산, 수정계획은 추경을 의미
자료: 성평등가족부

주요 사업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2025년(4,750억 2,800만원) 대비 1,252억 7,700만원(26.4%)이 증액된 6,003억 500만원, 양육비 이행관리원 지원은 2025년(28억 7,300만원) 대비 173억 9,800만원(60.6%)이 증액된 461억 2,800만원, 가족정책 추진기반 구축은 2025년(25억 1,800만원) 대비 10억 9,900만원(43.6%)이 증액된 36억 1,700만원이 편성되었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가족센터건립(지역자율계정)은 2025년(39억 5,000만원) 대비 11억 4,500만원(29.0%)이 증가한 50억 9,500만원이 편성되었음.

양성평등기금에서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은 2025년(5,528억 3,300만원) 대비 194억 1,300만원(3.5%)이 증액된 5,722억 4,600만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은 2025년(1,451억 9,700만원) 대비 61억 8,200만원(4.3%)이 증가한 1,513억 7,900만원이 편성되었음.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사업은 2025년(27억 2,300만원) 대비 4억 2,200만원(△15.5%)이 감소한 23억 100만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지원은 2025년(58억 4,600만원) 대비 11억 7,900만원(△20.2%)이 감액된 46억 6,7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6년도 가족정책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별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
계	**1,232,114**	**1,232,114**	**1,402,097**	**169,983**	**13.8**
일반회계	**521,565**	**521,565**	**666,409**	**144,844**	**27.8**
가족역량강화지원	2,102	2,102	2,102	-	-
가족정책 추진기반 구축	2,518	2,518	3,617	1,099	43.6
아이돌봄지원	475,028	475,028	600,305	125,277	26.4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	13,026	13,026	14,113	1,087	8.3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28,730	28,730	46,128	17,398	60.6
가족정책관기본경비(총액대상)	19	19	14	△5	△26.3
가족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142	142	130	△12	△8.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950**	**3,950**	**5,095**	**1,145**	**29.0**
가족센터건립(지역자율계정)	3,950	3,950	5,095	1,145	29.0
양성평등기금	**706,599**	**706,599**	**730,593**	**23,994**	**3.4**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552,833	552,833	572,246	19,413	3.5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2,723	2,723	2,301	△422	△15.5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지원	5,846	5,846	4,667	△1,179	△20.2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145,197	145,197	151,379	6,182	4.3

주: 기금의 경우 계획은 예산, 당초계획은 본예산, 수정계획은 추경을 의미
자료: 성평등가족부

바. 기획조정실, 대변인실, 운영지원과

성평등가족부의 행정지원 부서는 기획조정실, 대변인실, 운영지원과 등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525억 8,300만원이며, 2025년 대비 9,400만원(△0.2%)이 감소하였음.

기획조정실의 예산안은 2025년(239억 3,100만원) 대비 11억 1,200만원(△4.6%)이 감소한 228억 1,900만원이며, 대변인실의 예산안은 2025년(21억 5,600만원) 대비 1억 2,200만원(5.7%)이 증가한 22억 7,800만원임. 운영지원과 예산안은 2025년(265억 9,000만원) 대비 8억 9,600만원(3.4%)이 증가한 274억 8,600만원임.

【 2026년도 행정지원분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
합 계	52,677	52,677	52,583	△94	△0.2
기획조정실	23,931	23,931	22,819	△1,112	△4.6
대변인실	2,156	2,156	2,278	122	5.7
운영지원과	26,590	26,590	27,486	896	3.4

주: 기금의 경우 계획은 예산, 당초계획은 본예산, 수정계획은 추경을 의미
자료: 성평등가족부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글로벌 여성리더 포럼 3억 2,500만원, 유엔여성기구(UN Women) 기여금 79억 4,500만원, 국제개발협력(ODA) 예산 6억원임.

【 2026년도 기획조정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별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
계	**23,931**	**23,931**	**22,819**	**△1,112**	**△4.6**
일반회계	**23,887**	**23,887**	**22,769**	**△1,118**	**△4.7**
정책연구개발사업	125	125	954	829	663.2
글로벌 여성리더 포럼	900	900	325	△575	△63.9
유엔여성기구 기여금(ODA)	9,345	9,345	7,945	△1,400	△15.0
국제개발협력(ODA)	678	678	600	△78	△11.5
여성가족부 정보화추진(정보화)	11,334	11,334	10,961	△373	△3.3
행정능률향상 및 민원서비스개선사업	475	475	1,105	630	132.6
기획조정기본경비(총액대상)	146	146	43	△103	△70.5
기획조정기본경비(비총액)	441	441	406	△35	△7.9
전산경비	443	443	430	△13	△2.9
양성평등기금	**1**	**1**	**1**	**-**	**-**
기금관리비	1	1	1	-	-
청소년육성기금	**43**	**43**	**49**	**6**	**14.0**
기금관리비	43	43	49	6	14.0

주: 기금의 경우 계획은 예산, 당초계획은 본예산, 수정계획은 추경을 의미
자료: 성평등가족부

대변인실 예산은 여성·권익 및 청소년·가족정책 전반에 대한 대국민 의식 확산 및 인지도 제고에 소요되는 홍보비용이고, 운영지원과 예산은 직원 및 보조인력의 봉급, 수당, 임금을 지원하고,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와 각종 행정물품·장비 운용, 청사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임.

【 2026년도 대변인실 예산안 사업별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
계	2,156	2,156	2,278	122	5.7
일반회계	2,156	2,156	2,278	122	5.7
여성·가족정책의식확산	1,833	1,833	2,060	227	12.4
대변인실기본경비(총액대상)	87	87	3	△84	△96.6
대변인실기본경비	236	236	215	△21	△8.9

자료: 성평등가족부

【 2026년도 운영지원과 예산안 사업별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
계	26,590	26,590	27,486	896	3.4
일반회계	26,590	26,590	27,486	896	3.4
인건비	24,938	24,938	26,038	1,100	4.4
기관운영기본경비(총액대상)	860	860	693	△167	△19.4
기관운영기본경비	792	792	755	△37	△4.7

자료: 성평등가족부

5. 2026년도 신규 사업 및 종료 사업

2026년도 성평등가족부 예산안 및 기금지출계획안의 신규사업은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4] 16억 9,000만원과 청소년방과후활동 지원[5] 324억 7,400만 원,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6] 38억 4,500만원으로, 해당 세부사업은 기존 일반회계 및 기금 각 세부사업에서 이관되었으며, 종료사업은 없음.

4)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 성보호활동 지원(일반회계)',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양성평등기금)' 사업에서 일반회계로 이관
5) '청소년방과후활동 지원(청소년육성기금)'사업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원)로 이관
6)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청소년육성기금)' 사업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자율·제주·세종 계정)로 이관

Ⅱ 검 토 의 견

Ⅱ. 검토의견

1. 총괄

가. 성평등가족부 조직개편

○ 2025.10. 1. 정부조직 개편으로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되었는데, 2026년 예산안에는 조직개편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인건비, 신설된 고용평등정책관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사무공간 추가 확보에 따른 사무실 전산경비 등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 정상적인 기관운영 및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바, 정부조직 개편 내용을 반영한 추가 소요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음.

1) 개요

2026년도 성평등가족부 소관 총지출 기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1조 9,995억 8,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212억 6,600만원(12.4%)이 증가한 규모임.[7)]

회계·기금별로 보면, 일반회계 8,949억 5,700만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298억 2,500만원, 양성평등기금 8,052억 9,100만원, 청소년육성기금 1,291억 1,800만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 403억 9,400만원임.

7) 정부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사업 이관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나, 이관된 사업의 예산안 등도 포함한 규모임.

【 2026년도 성평등가족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총지출 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본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계	**1,778,319**	**1,999,585**	**221,266**	**12.4**
일반회계	714,825	894,957	180,132	25.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91,663	129,825	38,162	41.6
양성평등기금	776,927	805,291	28,364	3.7
청소년육성기금	155,491	129,118	△26,373	△17.0
범죄피해자보호기금	39,413	40,394	981	2.5

주 1) 기금의 경우 계획은 예산, 당초계획은 본예산, 수정계획은 추경을 의미
주 2) 고용노동부로부터 이관된 일반회계 예산 2025년 5억 7,700만원, 2026년 129억 5,100만원 포함
자료: 성평등가족부

2025. 10. 1.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고용노동부 소관의 여성고용정책 부문[8]을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시행되었음.

【 고용노동부 이관 대상 사업 】

구 분	적극적고용개선 조치 ('06년~)	성별근로공시제 ('23년~)	새일센터 집단상담 ('09년~)
관련법률	「남녀고용평등법」	-	-
예산(2025년)	1,002백만원	-	11,481백만원
주요업무	공공, 민간기업 대상 남녀 근로·관리자 현황 취합, 여성고용기준 미달 시 개선방안 수립 및 이행	공공, 지방공기업 대상 고용상 항목별 현황 외부 공시	경력단절여성, 결혼이민여성 대상 근로의욕 고취 및 구직능력 향상

자료 : 성평등가족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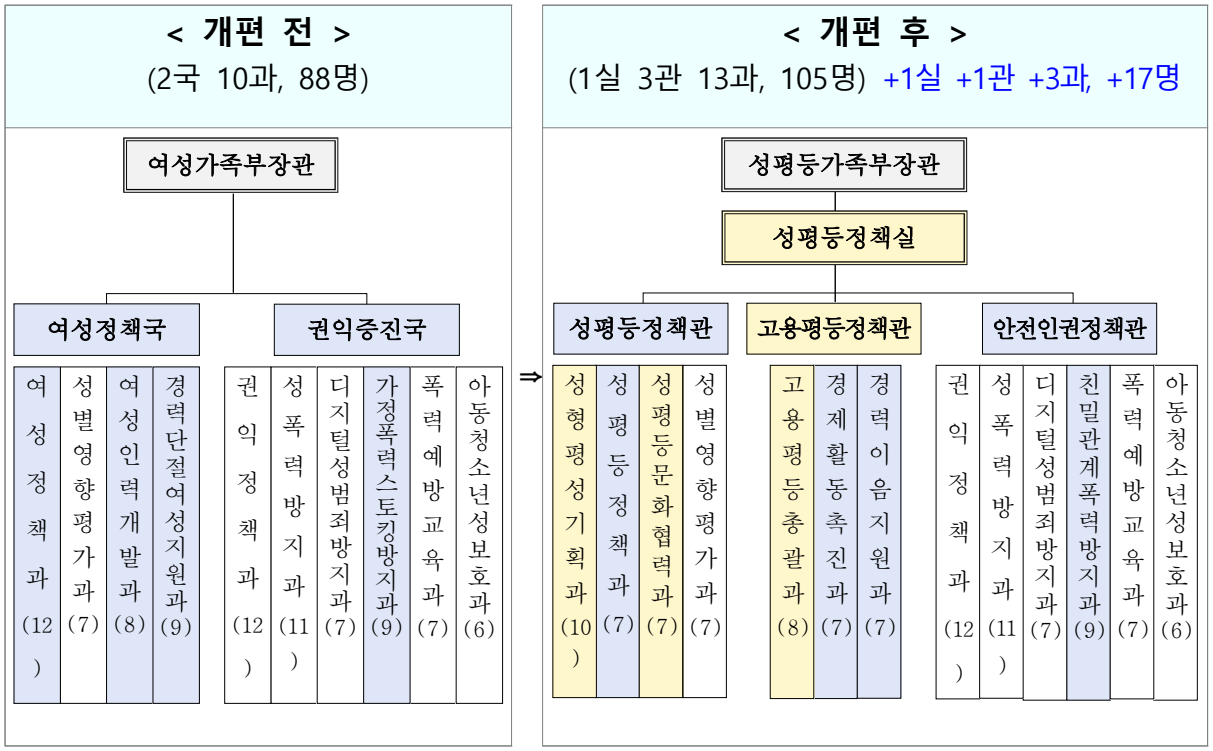
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을 통해 일부만 소관을 변경함

정부조직 개편으로 고용노동부 사업이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됨에 따른 2026년도 예산안은 129억 5,100만원 규모로서, 적극적고용개선조치지원 9억 200만원,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 117억 9,200만원(새일센터 집단상담프로그램 종사자 교육비 6,100만원 포함), 인건비(3인) 2억 5,700만원임.

2) 성평등가족부 조직개편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 증액 필요

성평등가족부 조직개편의 주요 내용을 보면, 성평등 정책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고용평등과 폭력대응 기능을 연계하기 위해 성평등정책실을 신설하였음. 성평등정책실에는 기존 여성정책국, 권익증진국을 각각 개편한 성평등정책관, 안전인권정책관과 신설된 고용평등정책관을 소속으로 두었음.

【 성평등정책실 개편 전후 조직도 】



(신설 : , 개편 :)

자료: 성평등가족부

성평등정책실의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성평등정책관은 성평등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성별 불균형 및 차별적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고용평등정책관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성별 임금 격차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고, 안전인권정책관은 여성·청소년 등 폭력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기획·조정하는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 성평등정책실 주요 기능 】

조 직	주요 기능
성평등정책관	▸성별 불균형·차별적 제도의 정비 및 조사·연구 ▸성평등정책 기획·총괄·조정·평가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성인지·성평등 교육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결산 제도
고용평등정책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성별 임금 격차 개선에 관한 사항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 및 기본계획 수립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취·창업 지원, 경력단절 예방 지원
안전인권정책관	▸여성·청소년 등 폭력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 기획·조정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성희롱·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예방·피해자 보호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성희롱 등 폭력예방 교육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제도, 취업제한제도 운영

자료: 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의 기능 확대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조직은 기존 2실 2국 3관 1대변인 27과, 기준정원 277명에서, 3실 6관 1대변인 30과, 기준정원 294명으로 변경되어 정원이 17명 증가하였음.

【 성평등가족부 개편 전·후 정원표 】

개편 전

2실 2국 3관 1대변인 27과 <277명>

- 장 관(7)
  - 대 변 인 • 홍보담당관(9명)
  - 차 관(4)
    - • 감사인사담당관(11명) • 운영지원과(11명)
    - **기획조정실** **(1관 4과, 42명)**
      - 정책기획관
        - • 기획재정(14명) • 혁신행정법무(9명)
        - • 국제협력(7명) • 정보통계(12명)
    - **여성정책국** **(4과, 36명)**
      - • 여성정책(12명) • 성별영향평가(7명)
      - • 여성인력개발(8명) • 경력단절여성지원(9명)
    - **청소년가족정책실** **(2관 10과, 105명)**
      - 청소년정책관
        - • 청소년정책(12명) • 활동진흥(8명)
        - • 활동안전(8명) • 자립지원(12명)
        - • 학교밖청소년지원(9명) • 보호환경(11명)
      - 가족정책관
        - • 가족정책(12명) • 가족지원(11명)
        - • 가족문화(13명) • 다문화가족(9명)
    - **권익증진국** **(6과, 52명)**
      - • 권익정책(12명) • 성폭력방지(11명)
      - • 디지털성범죄방지(7명) • 가정폭력스토킹방지(9명)
      - • 폭력예방교육(7명) • 아동청소년성보호(6명)

【계 : 277명】

장관(급)	1명
차관(급)	1명
고공단	8명
4급(3·4급)	28명
4·5급 이하 *별정직 2명 포함	239명

개편 후

3실 6관 1대변인 30과 <294명>

- 장 관(7)
  - 대 변 인 • 홍보담당관(9명)
  - 차 관(4)
    - • 감사인사담당관(11명) • 운영지원과(11명)
    - **기획조정실** **(1관 4과, 42명)**
      - 정책기획관
        - • 기획재정(14명) • 혁신행정법무(9명)
        - • 국제협력(7명) • 정보통계(12명)
    - **성평등정책실** **(3관 13과, 105명)**
      - 성평등정책관
        - • 성형평성기획(10명) • 성평등정책(7명)
        - • 성평등문화협력(7명) • 성별영향평가(7명)
      - 고용평등정책관
        - • 고용평등총괄(8명) • 경제활동촉진(7명)
        - • 경력이음지원(7명)
      - 안전인권정책관
        - • 권익정책(12명) • 성폭력방지(11명)
        - • 디지털성범죄방지(7명) • 친밀관계폭력방지(9명)
        - • 폭력예방교육(7명) • 아동청소년성보호(6명)
    - **청소년가족정책실** **(2관 10과, 105명)**
      - 청소년정책관
        - • 청소년정책(12명) • 활동진흥(8명)
        - • 활동안전(8명) • 자립지원(12명)
        - • 학교밖청소년지원(9명) • 보호환경(11명)
      - 가족정책관
        - • 가족정책(12명) • 가족지원(11명)
        - • 가족문화(13명) • 다문화가족(9명)

【계 : 294명】

장관(급)	1명	
차관(급)	1명	
고공단	10명	+2
4급(3·4급)	31명	+3(4급)
4·5급 이하 *별정직 2명 포함	251명	+12(5급7, 6급2, 7급3)

이와 같이 회계연도(2025.10. 1.) 중에 「정부조직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확대 개편된 성평등가족부의 예산 부족분은 예산 이·전용을 통해 충당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성평등가족부는 신설된 고용평등정책관의 컴퓨터 및 관련 부품 등 구입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두 차례의 예산 전용(1억 600만원) 및 세목 조정(2,000만원)을 추진하였고[9],

공무원 정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3억 3,570만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예산의 이용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인 상태임.

9) 정보화 추진 낙찰차액 및 기본경비 등을 활용하여 정보화추진, 전산경비로 전용함.

【 성평등가족부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전용 현황 】

(단위: 천원)

구분	일자	사유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예산현액	변경액	변경 후 금액
승인 전용	9.26	성평등가족부 조직개편(2025.10.1)에 따라 고용평등정책관 컴퓨터 및 관련 부품 등 구입에 따른 예산 필요	정보화추진 관리용역비 (1138-511-210-15)	6,788,000	△40,000	6,748,000
			정보화추진 자산취득비 (1138-511-430-01)	585,000	40,000	625,000
세목 조정	9.26	성평등가족부 조직개편(2025.10.1)에 따라 고용평등정책관 컴퓨터 및 관련 부품 등 구입에 따른 예산 필요	정보화추진 관리용역비 (1138-511-210-15)	6,748,000	△20,000	6,728,000
			정보화추진 일반수용비 (1138-511-210-01)	71,000	20,000	91,000
승인 전용	9.30	성평등가족부 조직개편(2025.10.1)에 따라 고용평등정책관 컴퓨터 및 관련 부품 등 구입에 따른 예산 필요	기관운영기본경비 일반수용비 (7111-251-210-01)	268,000	△15,000	253,000
			기획조정기본경비 국외업무여비 (7111-252-220-02)	85,992	△36,000	49,992
			권익증진기본경비 일반용역비 (7111-256-210-14)	15,000	△15,000	0
			전산경비 자산취득비 (7111-261-430-01)	77,000	66,000	143,000
승인 이용 예정	기재부 협의중	성평등가족부 조직개편('25.10.1)에 따라 공무원 정원 증원에 따른 예산 필요	인건비 (7100-7101-100)	24,179,041	335,700	24,514,741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 (2200-2236-361)	3,397,000	△335,700	3,061,300

자료: 성평등가족부

그런데 성평등가족부의 2026년도 예산안에는 조직개편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인건비, 신설된 고용평등정책관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사무공간 추가 확보에 따른 사무실 전산경비 등이 반영되지 않아 정상

적인 기관운영 및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

먼저, 인건비를 살펴보면, 직제개편에 따라 증가된 17명의 인건비 중 고용노동부에서 이관된 3명의 인건비 2억 5,700만원을 제외한 14명의 인건비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음.

성평등가족부는 증가된 14명의 인원에 대하여 고공단 2명, 4급 2명, 5급 6명, 6급 이하 4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바, 이에 필요한 적정 인건비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다음, 기본경비를 살펴보면, 2026년도 예산안에는 신설부서인 고용평등정책관의 기본경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음.

기본경비는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구성됨. 운영비에는 특근매식비(210-05), 일반수용비(210-01), 공공요금 및 제세(210-02)가 포함되고, 여비에는 국내여비(220-01), 국외여비(220-02)가 포함되며, 업무추진비에는 관서업무추진비(240-02) 등이 포함되므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성평등가족부는 신설된 고용평등정책관의 사무공간을 기존 성평등가족부의 사무실이 아닌 별도의 공간(창성동 정부청사 별관)을 확보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바, 국가정보통신서비스 회선 사용료도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보임.

종합하면, 정부 조직개편(2025.10. 1.)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인건비, 신설된 고용평등정책관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사무공간 추가 확보에 따른 사무실 전산경비 등 추가 소요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예산의 증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이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및 기관명 변경에 따라 일부 예산과목 및 예산사업 등의 명칭을 변경된 조직체계에 부합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음.[10)]

10) < 수정 예시 >
(프로그램) [7100]여성가족부 행정지원 → [7100]성평등가족부 행정지원
(세부사업) [511]여성가족부정보화추진(정보화) → [511]성평등가족부정보화추진(정보화)
[256]권익증진기본경비 → [256]안전인권정책관기본경비

2. 성평등정책관

가. 총괄

1) 개요

성평등정책관 소관의 2026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에 총 279억 1,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025년(193억 4,200만원) 대비 85억 6,900만원(44.3%)이 증액되었음.

【 2026년도 성평등정책관 예산안 총괄표 】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
일반회계	19,342	19,342	27,911	8,569	44.3

자료: 성평등가족부

2026년도 성평등정책관 소관 사업은 여성정책전략기반구축, 성인지정책 분석 평가 운영, 양성평등문화확산, 여성사전시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원, 여성정책기본경비 등 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6년도 성평등정책관 예산안 명세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
계	19,342	19,342	27,911	8,569	44.3
여성정책전략기반구축	318	318	732	414	130.2
성인지정책 분석 평가 운영	3,940	3,940	3,821	△119	△3.0
양성평등문화확산	671	671	1,239	568	84.6
여성사전시관	2,411	2,411	9,317	6,906	286.4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원	11,796	11,796	12,642	846	7.2
여성정책기본경비(총액대상)	83	83	37	△46	△55.4
여성정책기본경비(비총액)	123	123	123	-	-

자료: 성평등가족부

2) 주요 증·감액사업 현황

2026년도 성평등정책관 소관 사업 중 예산이 전년 대비 감액된 사업은 2개 사업임.

성인지정책 분석평가 운영은 2025년(39억 4,000만원) 대비 1억 1,900만원(△3.0%)이 감액되었고, 여성정책 기본경비는 2025년(8,300만원) 대비 4,600만원(△55.4%)이 감액됨.

【 2026년도 성평등정책관 주요 감액사업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B)	증감		감액사유
	본예산	추경(A)		B-A	%	
계	4,023	19,219	19,219	△2,635	△12.1	
성인지정책 분석 평가 운영	3,940	3,940	3,821	△119	△3.0	지출효율화를 위해 정책연구비 통합관리에 따라 내역 이관
여성정책기본경비(총액대상)	83	83	37	△46	△55.4	공무직 임금 등 예산 삭감

자료: 성평등가족부

2026년도 성평등정책관 소관 사업 중 예산이 전년 대비 증액된 사업은 여성정책전략기반구축, 양성평등문화확산과 여성사전시관이 있음.

여성정책전략기반구축은 내역사업 중 양성평등 실태조사가 5억 1,000만원 신규 편성되었고, 양성평등문화확산은 내역사업 중 청년세대 성별균형 문화확산이 6억 6,300만원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여성사전시관은 내역사업 중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이 공사비 64억 2,800만원(356.1%)이 증액됨에 따라 2025년(24억 1,100만원) 대비 67억 600만원(286.4%)이 증액됨.

【 2026년도 성평등정책국 주요 증액사업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B)	증감		증액사유
	본예산	추경(A)		B-A	%	
계	386	386	606	220	57.0	
여성정책전략기반구축	318	318	732	414	130.2	· 내역사업 중 '양성평등 실태조사'가 신규로 편성 필요 * 「양성평등기본법」 제10조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5년마다 양성평등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함
양성평등문화확산	671	671	1,239	568	84.6	· 내역사업 중 신규사업인 '청년세대 성별균형 문화확산'에 6억 6,300만원 편성 필요
여성사전시관	2,411	2,411	9,317	6,906	286.4	· 여성사전시관 운영사업에 박물관 개관 대비 유물 구입비(3억 7,200만원) 등 4억 8,300만원 증액 필요 ·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사업에 64억 28백만원 증액 편성 필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원	11,796	11,796	12,642	846	7.2	· 중앙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운영사업의 경우 비목 변경 필요 · AI 폭력예방교육 혁신사업ISP 신규 편성 필요 ·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사업이관 필요 * 사업비 14억 2,600만원 증액

자료: 성평등가족부

나. 일반회계

1) 양성평등문화확산(1232-331)

○ 청년세대 성별균형 문화확산사업 중 (가칭)2030청년위원회 운영사업과 성불평등 사항 제안 제도 운영사업은 모두 성평등 정책의제의 발굴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므로 사업내용이 중복·중첩되지 않도록 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업내용을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등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수립·추진하여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양성평등문화확산은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문화확산의 계기를 마련하려는 사업으로, ①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② 청년세대 성별균형 문화확산 등 2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11)]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6억 7,100만원) 대비 5억 6,800만원(84.6%)이 증액된 12억 3,900만원이 편성됨.

11) 2025년도까지 편성되었던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원(1233-341) 사업으로 이관되었음.

【 2026년도 양성평등문화확산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본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예산액	집행액 [실집행액]			B-A	%
◦ 양성평등문화확산	803	735 [735]	671	1,239	568	84.6
·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93	90 [90]	93	-	△93	△100.0
· 양성평등 조직문화조성	710	645 [645]	578	576	△2	△0.3
· 청년세대 성별균형 문화확산	-	-	-	663	663	100.0

자료: 성평등가족부

나) 청년세대 성별균형 문화확산 사업의 내실화 필요

동 사업의 내역사업 중 청년세대 성별균형 문화확산 사업은 2030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성별인식격차를 해소하고, 현행 제도 중 성불평등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정책을 기획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청년이 성별 불균형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소통플랫폼을 마련하고, 성불평등사항에 관한 제안제도를 운영하며, 성평등 인식개선 등의 사업을 지원하려는 사업임.

동 사업은 ① (가칭)2030청년위원회 운영, ② 성불평등 제안제도 운영, ③ 성평등 인식개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6년도 예산안은 6억 6,300만원임.

【 2026년도 청년세대 성별균형 문화확산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본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예산액	집행액 [실집행액]			B-A	%
◦ 청년세대 성별균형 문화확산	-	-	-	663	663	순증
· (가칭)2030청년위원회 구성 운영	-	-	-	321	321	순증
· 성불평등 사항 제안 제도운영	-	-	-	252	252	순증
· 성평등 인식개선	-	-	-	74	74	순증
· 국내여비	-	-	-	10	10	순증
· 사업추진비	-	-	-	6	6	순증

자료: 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가 2021년 실시한 양성평등 실태조사[12] 결과에 따르면, 사회 전반의 성평등 수준에 대하여 성별뿐 아니라 세대별로도 인식차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음. 구체적으로, '여성에게 불평등하다'고 답변한 20대 여성은 73.4%, 30대 여성은 76.8%인 반면, 20대 남성은 29.2%, 30대 남성은 40.7%인 것으로 집계됨.

12) 「양성평등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2016년도부터 5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2026년도 예산안에도 5억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양성평등기본법」 제10조(양성평등 실태조사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국민이 양성평등 관련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여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연령대별 성평등 수준 체감도 】

(단위: %, %p)

구 분		남녀평등하다			여성에게 불평등하다			남성에게 불평등하다		
		2016	2021	증감 (%p)	2016	2021	증감 (%p)	2016	2021	증감 (%p)
전체[1]	전체	21	34.7	13.7	62.6	53.4	△9.2	16.4	11.8	△4.6
	여성	14.6	27.8	13.2	74.2	65.4	△8.8	11.2	6.7	△4.5
	남성	27.5	41.7	14.2	50.8	41.4	△9.4	21.6	17	△4.6
15 – 18세	여성	–	36.5	–	–	60.3	–	–	3.2	–
	남성	–	54.2	–	–	31.5	–	–	14.2	–
20대	여성	9.4	22.4	13.0	**81.9**	**73.4**	△8.5	8.7	4.3	△4.4
	남성	28.7	46.8	18.1	**35.9**	**29.2**	△6.7	35.4	24	△11.4
30대	여성	7.2	19.6	12.4	**84.5**	**76.8**	△7.7	8.4	3.6	△4.8
	남성	23.7	40.0	16.3	**54.1**	**40.7**	△13.4	22.2	19.3	△2.9
40대	여성	11.6	22.8	11.2	79.3	68.6	△10.7	9.1	8.5	△0.6
	남성	22.6	39.1	16.5	61	47	△14	16.4	13.9	△2.5
50대	여성	15.9	27.8	11.9	71.4	65.5	△5.9	12.7	6.8	△5.9
	남성	31.3	38	6.7	50.7	46.4	△4.3	18	15.6	△2.4
60대 이상	여성	24.2	37.5	13.3	60.5	54.1	△6.4	15.2	8.4	△6.8
	남성	31.2	43.8	12.6	51.4	42.1	△9.3	17.3	14.0	△3.3

주 1) 전체 통계수치에서 15~18세(청소년)은 제외.
주 2) 표본규모·조사대상: 전국 4,490 가구의 15세 이상 모든 가구원(총 8,358명)
자료: 여성가족부(2022.04.), 「2021년 양성평등 실태조사 주요 결과 요약」, 4쪽의 표 재작성.

「2016년도 양성평등 실태조사」 결과와 「2021년도 양성평등 실태조사」 결과에서 공통적으로 세대 내 성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 차이가 20대·30대에서 다른 연령대 내 인식 차이보다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년세대의 성불평등 인식개선과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은 필요한 것으로 보임.

그런데, (가칭)2030청년위원회 운영사업은 20대·3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공존·공감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청년층의 성별 인식격차와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의제의 발굴 및 기획 활동, 청년이 체감하는 성평등 정책과제 발굴 등을 지원하려는 사업이며,

성별불균형 제안제도 운영사업은 직장 내 성별 불균형 또는 지역별 성불균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성불평등 제도를 조사하고 정책개발을 추진하려는 사업으로, 모두 성평등 정책의제의 발굴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사업결과에 차별성이 나타나지 않을 우려가 있음.

【 청년세대 성별균형 문화확산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내역 】

(단위: 백만원)

내내역사업	사업내용	2026년도 예산안	수행 방식
(가칭)2030청년 위원회 구성운영	청년공존·공감네트워크 운영 (성불평등 의제 발굴·기획 및 조사·토론)	321	민간 경상 보조
성불평등 사항 제안 제도운영	성별 불균형 정책과제 국민제안 (온라인 및 현장 제안)	252	
성평등 인식개선	인식개선 관련 공모전 및 홍보콘텐츠 제작	74	
상용비	국내여비(위원회 및 간담회 개최) 사업추진비(각종 회의 추진 등)	16	직접 수행
계		**663**	-

자료: 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는 (가칭)2030청년위원회 운영사업은 청년공존·공감네트워크를 통하여 성불평등 의제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만들고, 숙의를

통해 청년의 시각을 반영한 정책 대안을 성평등가족부와 관계부처에 제안하도록 하고, 성별불균형 제안제도 운영사업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정책과제를 제안받을 계획이라고 하는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대 내 성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 차이가 20대·30대에서 다른 연령대 내 인식 차이보다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과 청년세대 성별균형 문화확산이라는 동 사업의 목적을 고려할 때 성별불균형 제안제도 운영사업은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정책과제를 제안받을 필요가 있으며, 사업의 내용이 중복·중첩되지 않도록 사업의 차별성을 제고하거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업내용을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등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수립·추진하여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성평등 인식 개선사업은 인식개선 관련 공모전에 4,000만원을, 홍보콘텐츠 제작에 3,400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홍보콘텐츠를 적정한 수준으로 제작하는 데에 충분한 예산인지 의문시되는바, 홍보콘텐츠 제작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등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여성사전시관(1232-332)

○ 현재 여성사전시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은 특정시대 또는 특정주제에 편향되어 있는바, 2028년도에 개관하는 국립여성사박물관을 제1종 종합박물관으로 등록하고, 개관과 동시에 양질(良質)의 전시를 하기 위해서는 추가구입이 필요한 유물을 개관전에 차질없이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2026년도 추가구입 유물 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공사비 76억 600만원은 2025년도 말까지 조달청의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절차와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조정 협의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2026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총 공사비의 28%를 편성한 것이므로 계획대로 절차를 진행하여 집행부진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여성사전시관은 「양성평등기본법」 제50조[13]에 따라 한국의 역사 발전에 기여한 여성 인물 및 성평등 문화의 전형을 발굴하고 재조명함으로써 양성평등의식을 고양하고 한국 여성사(女性史)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는 사업임.

동 사업은 ① 여성사전시관 운영, ② 간담회 등 사업추진, ③ 국립

13) **「양성평등기본법」 제50조(여성사박물관의 설립·운영)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역사 속 여성의 역할과 역사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조명하고, 여성을 위한 교육과 국민의 양성평등의식 고양을 위한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여성사박물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여성사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여성 관련 문화유산의 수집·보존·연구·전시·교육
2. 여성사의 발굴 및 역사 속 여성의 역할과 경험·가치에 대한 연구
3. 역사발전·사회변화를 일구어 낸 여성인물과 업적 발굴
4. 여성문화·지역여성·여성운동·여성단체·여성정책의 역사에 대한 자료 발굴·보존·연구·교육
5. 미술·음악·문학 등 여성문화 활동
6. 그 밖에 여성사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여성사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여성사박물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중 국립중앙박물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여성사박물관 건립 등 3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24억 1,100만원) 대비 67억 600만원(286.4%)이 증액된 93억 1,700만원이 편성됨.

【 2026년도 여성사전시관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본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예산액	집행액 [실집행액]			B-A	%
◦ 여성사전시관	4,352	574 [570]	2,411	9,317	6,706	286.4
· 여성사전시관 운영	569	569 [565]	578	1,061	483	83.6
· 간담회 등 사업추진	5	5 [5]	5	-	△5	△100.0
·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3,778	-	1,828	8,256	6,428	351.6

자료: 성평등가족부

나) 국립여성사박물관 개관 대비 유물구입 예산 증액 필요

여성사전시관 운영 사업은 역사 속 여성들의 역사와 양성평등문화의 전형을 발굴하고 재조명하기 위하여 국립여성사전시관 내 상설전시관의 운영, 특별 기획전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이루어진 사업임.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5억 7,800만원) 대비 4억 8,300만원(83.6%)이 증액된 10억 6,100만원이 편성됨.

【 2026년도 여성사전시관 운영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본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예산액	집행액 [실집행액]			B-A	%
· 여성사전시관 운영	569	569 [565]	578	1,061	483	83.6

자료: 성평등가족부

여성사전시관 운영 사업의 주요 증액 사유는 유물 구입비 3억 7,2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기 때문임.

【 2026년도 여성사전시관 운영 사업 산출 근거】

<산출내역>

○ 전시관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25) 578백만원 → ('26) 589백만원
- 인건비 ('25) 312백만원 → ('26) 323백만원
- 운영비 266백만원(전년과 동일)

○ (신규) 박물관 개관 대비 유물 구입비: 372백만원

○ (신규) 전시계획 연구비: 100백만원

자료: 성평등가족부

현재 여성사전시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은 총 13,251점에 이르고 있으나, 특정 시대 또는 특정 주제에 편향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소장 유물 중 시대 기준으로 근현대사 관련 유물이 12,071점(91.1%), 주제 기준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유물이 12,058점(91.0%)으로 편중되어 있고, 국가등록문화유산은 1점[14]에 그치고 있음.

14) 현재 여성사전시관이 소장하고 있는 국가등록문화유산 1점은 '색복 장려 깃발'임.
- 색복 장려 깃발: 일제강점기에 색복 장려 정책을 알리기 위해 사용한 깃발 형태의 선전물.
- 색복 장려 정책: 일제강점기에 시행된 조선 문화말살정책 중 하나로, 백의(白衣) 폐지를 위해 조선 사람들에게 흰속 대신 짙게 염색한 옷을 입도록 강제하는 정책.
- 참고 : 국가유산포털(https://www.heritage.g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s://encykorea.aks.ac.kr/)

성평등가족부는 외부 연구·자문 결과, 국립여성사박물관에 필수적으로 전시되어야 할 유물로 2,519점을 선정하였음. 그런데, 필수 전시 유물 중 현재 여성사전시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은 456점에 불과한바, 나머지 2,063점은 추가적으로 수집될 필요가 있음.

【 추가 수집필요 유물 산출 근거[1)] 】

(단위: 점)

구분	대주제	대주제 설명	필수유물 (A)	現 소장품 (B)	수집필요 (C=A-B)
1	몸	여성을 바라보는 양면적시선과 사회적 제약을 깬 여성	321	59	262
2	가족·일	가족, 생업, 돌봄에서 주체자였던 여성	800	193	607
3	문화	여성이 만들어낸 문화를 중심으로 소프트파워 조명	614	72	542
4	힘	여권통문 이후 산업화, 민주화 등 여성 활약상	784	132	652
합계			2,519	456	2,063

주 1) 계획안에 해당하여 향후 변동가능성이 있음.
자료: 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는 추가 수집필요 유물(2,063점) 중 1,663점(80.6%)은 구입하고, 나머지 400점(19.4%)은 구입이 아닌 복제 과정을 거쳐 전시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음. 국립여성사박물관의 전시계획 유물 중 다수가 국보급 유일본(唯一本)인 경우가 많아 복제의 비중을 높여 계획하고 있으며, 유물 2,063점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하여는 약 5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설명함.

국립여성사박물관은 2028년 12월에 개관할 예정이므로, 개관 전까지 추가 유물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2026년도 유물 구입비 예산안은 유물 224점에 대한 구입비로 3억 7,200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바, 2026년도에 구입할 유물 224점은 전체 추가 수집필요 유물(2,063점)의 10.9%에 불과함.

2026년도는 유물구입의 1차년도이기는 하나 국립여성사박물관의 차질없는 개관 준비를 위하여 유물 구입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추가 수집필요 유물 계획 대비 2026년도 예산안 편성내역 】

구 분	계획	2026년 예산안	비고
추가수집 필요유물 수	2,063점 (100%)	224점 (10.9%)	
예산소요액(추정)	약 57억원 (100%)	3억 7,200만원 (6.5%)	

-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에 걸쳐 유물을 추가수집할 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도에는 228점[15]을 우선 수집하기 위하여 5억원을 요구하였으나, 기획재정부 예산 편성과정에서 3억 7,200만원으로 조정 반영되었다고 함.

15) **< 2026년 수집대상 유물 선정기준>**

(단위: 점)

구분	선정기준	유물 수
1	전시 공간 연출을 위해 중·대형 유물 先 확보 및 배치	최소 4점
2	여성사 및 역사적 가치가 높은 국가유산급 등 유물 선점	최소 14점
3	확보가 용이하고 시기적으로 다량으로 선점이 필요한 유물	최소 210점
계	-	**최소 228점**

자료: 성평등가족부

【 2026년~2028년간 유물 수집 계획 】

시기	수집 기준
2026	① 전시 공간 사전 확보가 필요한 중대형 유물
	② 문화유산급 유물
	③ 다량 확보 필요 유물
2027 ~ 2028	① 전시연출로 공간 협의 가능 중소형 유물
	② 문화유산급 유물
	③ 복제 시간 소요 순으로 유물 수집

자료: 성평등가족부

【 2026년도 유물 구입비 산출 근거】

(단위: 점, 백만원)

구분	유물 선정기준	수량	추정가	비고
1	전시공간 연출과 연계한 문화유산급(중대형) 유물	4	127	개인소장 4점
2	여성사적 가치 고려, 선점 필요 국가유산급 유물	14	238	개인 2점, 기관 1점, 박물관 7점, 대학 4점
3	확보가 용이하고 시기적으로 다량 선점이 필요한 유물	210	134	개인 120점, 기관 10점, 박물관 20점, 대학 60점
계		228	499	

자료: 성평등가족부

더욱이 국립여성사박물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9조[16] 및 [별표 2] 등[17]에 따라 박물관자료를

1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등록 등)** ①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개관 전까지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40일 이내에 등록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 심의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8조(등록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국립박물관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자료, 학예사, 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제1종 박물관(종합박물관, 전문박물관), 제2종 박물관으로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함.

현재 여성사전시관은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성평등가족부는 여성사(女性史) 전시를 확대·발전시키려는 국립여성사박물관의 건립 취지를 고려하여 국립여성사박물관을 제1종 종합박물관으로 등록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국립여성사박물관을 제1종 종합박물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 전문박물관의 해당 전시실과 각 분야별 박물관 자료를 100점 이상씩 갖추어야 하고, 정성 평가기준 총 130점 중 박물관의 소장품이 가장 높은 배점(50점)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따라서 2028년도에 개관하는 국립여성사박물관을 제1종 종합박물관으로 등록하고, 개관과 동시에 양질(良質)의 전시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적정 수준의 유물 수량을 차질없이 확보할 필요가 있음.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시설명세서
2.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3. 학예사 명단
4.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자료의 규모와 가치, 학예사의 보유, 시설의 규모와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의한 후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9조(등록요건) ① 법 제16조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자료, 학예사, 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제1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제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구분하여 등록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17) [참고자료 1] 박물관자료 관련 법령 발췌

- 국립항공박물관, 국립농업박물관 등의 개관 전후 유물 수집예산 편성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 유사 국립박물관의 개관 전후 유물 수집예산 편성 사례 】

(단위: 억원)

박물관명	개관 시기	유물수집 예산편성기간	예산액
국립항공박물관	2020	2018년부터 2개년	46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2022	2019년부터 5개년	49
국립농업박물관	2022	2021년 1개년	51
새만금간척박물관	2023	2021년부터 2개년	18
국립인천해양박물관	2024	2020년부터 4개년	110
국립디자인박물관	2028(예정)	2024년부터 2개년	17

자료: 성평등가족부

다)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사업의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사업은 여성사전시관의 확대·이전을 목표로 여성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발굴·재조명하고 다양한 역사 인식의 확산을 위한 복합 교육·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2021년부터 수행되었음.

- 성평등가족부는 2014년부터 정부고양지방합동청사 공간의 일부를 임차하여 여성사전시관[18]을 설립·운영하였으나, 전시관의 한계(협소한 면적, 낮은 접근성)로 인해 추진된 것임[19].

- 동 사업은 「국가재정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사업규모·

18) 여성사전시관은 2002년 서울시 여성플라자건물을 임차하여 설립되었고, 2014년 9월 경기도 고양시의 지방합동청사로 이전하여 개관하였음.

19) 우리나라 여성사는 비교적 저평가되고 있고, 여성(학)계 및 여성단체에서 여성사에 대한 재조명을 위하여 여성사 전문전시관이 필요하다는 지속적인 요구에 대응하여 설립·운영된 것임.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20]에 해당함.

동 사업은 당초 2021년도 기본계획수립 및 고시, 기본설계를 거쳐 2022년 공사 추진, 2023년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하였으나, 공사비 증가 및 기재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5년 지연되는 것으로 건립 계획이 변경되었음.

변경된 계획에 따르면, 사업규모는 608㎡ 감소하였고, 총 사업비는 43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2028년에 준공 및 개관할 예정임.

---

20) **「총사업비관리지침」(기획재정부 훈령) 제3조(관리대상 사업)** ①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하 **'관리대상 사업'**이라 한다)은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국가가 위탁하는 사업, 국가의 예산이나 기금의 보조·지원을 받아 지자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 중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토목사업 및 정보화사업
2. 총사업비가 200억 원 이상인 건축사업(전기·기계·설비 등 부대공사비 포함)
3. 총사업비가 200억 원 이상인 연구시설 및 연구단지 조성, 선박·항공기 건조사업 등 연구기반구축 R&D사업(기술개발비, 시설 건설 이후 운영비 등 제외)

제4조(사업추진 단계별 관리) ① 「국가재정법」 제6조에 의한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장(이하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관리대상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다음의 각호의 단계에 따라야 하며, 각 사업추진 단계별 총사업비의 관리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건설사업 및 연구기반구축 R&D사업 :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건축사업은 계획설계 및 중간설계에 해당한다), 실시설계, 발주 및 계약, 시공
2. 정보화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정보 시스템 마스터 플랜(Information System Master Plan, 이하 'ISMP'라고 한다), 분석, 설계, 발주 및 계약, 개발, 운영 및 유지관리

제6조(사업기간의 관리) ① **사업기간은** 당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예산(제107조제2항제1호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국가 외의 자의 예산을 포함한다)**이 최초로 반영되어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기본·실시설계 등 사업이 착수되는 연도부터 총사업비 협의 시 또는 예산 반영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완공 예정연도로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3조제2항, 제14조제4항, 제18조제1항, 제23조, 제27조제1항과 관련하여 사업규모 또는 총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 그에 따른 사업기간의 변경 여부에 대하여도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결과 사업기간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그 내용을 당해 사업규모 또는 총사업비의 변경 협의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규모 또는 총사업비가 변경되어 사업기간을 조정하고자 하거나 사업규모 또는 총사업비의 변경 없이 제1항에 의한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계획 변경 내역 】

구 분	당초	변경
건설 공사명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공사	-
공사 위치	서울 은평구 불광동 1-363 일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내)	-
공사 규모	연면적 7,000㎡, 지하 2층~지상 5층	연면적 6,392㎡, 지하 2층~지상 5층
공사 형태	기존 노후 건물 철거 후 증축	-
공사 기간	2021년 ~ 2023년(3년)	2021년 ~ 2028년(8년)
총 사업비	267억 7,700만원 (설계, 감리비 등 포함)	311억 300만원 (설계, 감리비 등 포함)
공사 내용	전시실, 수장고, 강의실, 사무실, 카페테리아 등	-
연차별 시행계획	2021년 설계공모, 기본설계 2022년 기본·실시설계, 건설공사 2023년 건설공사, 개관	2021년 설계공모, 설계용역 체결 2022년 계획설계, 중간설계 2023년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총 사업비 조정 협의 2024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총 사업비 조정 완료 2025년 실시설계, 관계기관 협의, 공사계약 2026~2028년 시설공사, 준공 및 개관

자료: 성평등가족부

【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총사업비 변경 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당초 (A)	중간설계 내역	중간설계 적정성검토 (조달청)	'23년도 조정요구 (여성가족부)	'24 총사업비 조정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		
					최종(B)	당초 대비 증감 (B-A)	
총사업비	**26,777**	**42,028**	**40,327**	**36,269**	**31,103**	**4,326**	**16.2%**
공사비	23,446	35,773	34,012	31,442	27,346	3,900	16.6%
설계비	1,575	2,193	2,249	1,775	1,421	△154	△9.8%
감리비	1,703	3,987	3,988	2,979	2,274	571	33.5%
시설부대비	53	75	78	73	62	9	17.0%
사업규모(㎡)	7,000	7,948	7,545	7,245	6,392	△608	8.7%
사업기간	'21~'23	-	-	'21~'26	'21~'28	-	-

자료: 성평등가족부

동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대비 64억 2,800만원(351.6%)이 증액된 82억 5,600만원이 편성됨.

【 2026년도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비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본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예산액	집행액 [실집행액]			B-A	%
◦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3,778	-	1,828	8,256	6,428	351.6
· 기본조사 설계비(420-01)	-	-	-	-	-	83.6
· 실시설계비(420-02)	-	-	-	-	-	△100.0
· 공사비(420-03)	3,517	-	1,701	7,606	5,905	347.1
· 감리비(420-04)	255	-	123	633	510	414.6
· 시설부대비(420-05)	6	-	4	17	13	325

자료: 성평등가족부

예산안 82억 5,600만원 중 공사비는 76억 600만원으로, 총 공사비 273억 4,600만원('24년 총사업비 조정)의 27.8%에 해당함.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4월 중순에 착공할 예정이므로, 전체 공사기간 30개월 대비 8.5개월에 해당하는 28%의 공사비를 편성한 것이라는 입장임.

【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총사업비 대비 예산안 편성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4년 총사업비 조정) (A)	2026년 예산안 (B)	B/A
계	31,103	8,256	26.5%
공사비	27,346	7,606	27.8%
설계비	1,421	-	-
감리비	2,274	633	27.8%
시설부대비	62	17	27.4%

【 2026년도 국립여성사박물관 공사비 예산안 산출근거】

<산출근거>

○ '26년도 공사비 = 박물관 총공사비(a) × 배분비율(b)

- (a) 27,346,000,000원(중간설계에 대한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결과)
- (b) 약 28%

*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 상 배분비율)** 사업 잔여기간 3년 기준 적용

☞ 1년차 : 2년차 : 3년차 = 30 : 40 : 30

* **(공사기간 비율)** 4월 중순 착공시, 전체 공사기간 30개월 대비 약 28% (8.5/30개월) 적용

자료: 성평등가족부

이처럼 공사비 76억 600만원은 2025년도 말까지 조달청의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절차와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조정 협의절차가 모두 완료된다는 전제로 편성된 예산액에 해당함.

그런데, 동 사업은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검토 및 기재부와의 총사업비 조정 재협의 등으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2022회계연도부터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하였음. 건축설계 단계마다 수행되는 조달청의 적정성 검토와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조정 협의에 당초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임.

【 2022~2025회계연도별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사업의 예산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회계연도별 결산					구체적인 예산의 이월·불용 사유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집행률)	이월액	불용액	
2022	1,333	1,333	459 (34.4%)	866	8	조달청·기재부의 심의·협의기간 소요에 따른 설계기간 순연
2023	4,644	4,644	2 (0.04%)	-	4,642	중간설계 이후 조달청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로 사업이 일시 정지됨
2024	3,778	3,778	0 (0%)	-	3,778	2024.10.까지 기재부(KDI)가 주관하는 '사업계획 정적성 재검토' 진행됨
2025[1)]	1,828	1,828	0 (0%)	-	1,828	공사비를 실시설계비 등으로 전용하여 총사업비 조정 완료 시점에 집행할 예정 ※ 2025년도 예산은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편성되어 있으나, 공사착공은 2026년 4월에 실시할 예정이므로 공사비로 집행은 불가함.

주 1) 2025회계연도의 경우 2025.10월을 기준으로 집행액과 불용액을 작성한 것임.

자료: 성평등가족부

따라서 계획대로 2025년말까지 조달청의 실시계획 적정성 검토 및 기재부와의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완료한 후 2026년 4월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여 집행부진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추진 현황 및 계획 】

(2025. 10. 30. 기준)

기 간		추진 현황 및 계획
추진 경과	2020. 6.	문체부의 국립여성사박물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통과
	2020. 12.	2021년도 예산안(설계비) 반영
	2021. 1.	기획재정부와 협의, 총사업비 확정, 사업내역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등록
	2021. 4.	국립여성사박물관 기본계획 수립·고시
	2021. 4. ~ 9.	설계공모지침 마련, 공공건축심의
	2021. 9. ~ 12.	설계(계획설계 → 중간설계 → 실시설계) 공모
	2021. 12.	설계 계약 체결
	2022. 2. ~ 4.	경계복원측량, 부지 현안 검토 및 변경안 검토
	2022. 3. ~ 5.	건립부지 관련 관계기관(은평구청, 국무조정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협의
	2022. 6. ~ 9.	서울시 경관심의(7월), 조달청 계획설계 적정성 검토
	2022. 9. ~ 11.	중간설계 추진
	2023. 1. ~ 5.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조달청)
	2023. 6. ~ 11.	총사업비 조정(기재부) 협의
	2023.12. ~ 2024.10.	기재부(KDI) 주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진행
	2024.11.	총사업비 조정(기재부) 재협의 완료
	2024.12.~ 2025. 5.	건축계획 조정, 건축심의(5.22)
	2025. 6.	각종 건축물 성능 예비인증 신청 (제로에너지, 녹색건축, 무장애환경)
	2025. 7. ~ 9.	조달청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향후 일정	2025. 11.	건축허가 신청 및 조달청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완료
	2025.11. ~ 12.	기재부 총사업비 조정 협의
	2026. 1. ~ 2028. 11.	공사계약 의뢰, 발주공고 등 시공사 선정 절차 진행 착공신고(2026. 4. 예정) 및 시설공사
	2028.12.	국립여성사박물관 개관 예정

자료: 성평등가족부

3)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원(1233-341)

○ 중앙 폭력예방교육지원기관 운영 사업은 민간위탁사업(320-02)에서 사업출연금(350-02)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는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을뿐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운영 경비에 관한 출연 근거는 규정하지 않고 있는바, 출연의 법적 근거가 없어 「국가재정법」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출연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21]에 따라 설립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양평원”이라 함)에 출연금을 지원하고, 양성평등 및 성인지적 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 지원하여 우리 사회의 남녀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개선하며, 개개인의 능력과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기반을 조성하려는 사업임.

동 사업은 ① 사업비(양성평등교육사업, 양성평등진흥사업), ② 인건비, ③ 경상운영비 등 3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

21)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설립 등)** ① 국가는 양성평등교육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진흥시키기 위하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양성평등을 위한 교육 및 진흥 사업
2.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 교육
3. 여성과 남성의 지도력 함양 교육
4.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등 전문인력 양성 사업
5.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양성평등 교육과정을 강화하기 위한 교류 협력 지원 사업
6.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연구 사업
7. 양성평등 교육 관련 자료 출간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117억 9,600만원) 대비 8억 4,600만원(7.2%)이 증액된 126억 4,200만원이 편성됨.

【 2026년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원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본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예산현액	집행액			B-A	%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원	12,191	12,100	11,796	12,642	846	7.2
· 사업비(350-02)	5,289	5,289	4,581	6,007	1,426	31.1
- 양성평등교육사업	4,170	4,170	3,462	4,472	1,010	29.2
- 양성평등진흥사업	1,119	1,119	1,119	1,535	416	37.2
· 인건비(350-01)	5,384	5,384	5,718	6,045	327	5.7
· 경상운영비(350-01)	613	613	592	590	△2	△0.3
· 중앙 폭력예방교육지원기관 운영(320-02)	905	814	905	-	△905	△100.0

자료: 성평등가족부

나) 중앙폭력예방교육지원기관 운영 출연의 법적근거 마련 필요

2026년도 예산안 내역을 보면, 중앙 폭력예방교육지원기관 운영 사업이 민간위탁사업비(320-02)에서 사업출연금(350-02)으로 변경 편성되었음. 중앙 폭력예방교육지원기관 운영 사업은 2025년에는 민간위탁사업비(320-02)로 9억 5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026년도 예산안에는 사업비(양성평등교육사업)에 중앙 폭력예방교육지원기관 운영 예산으로 4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음.

【 2026년도 양성평등 교육사업 예산안 편성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본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
◦ 양성평등 교육사업	4,463	5,060	597	13.4
· 집합교육	2,275	2,275	-	-
· 이러닝사업	741	741	-	-
· 모바일 교육콘텐츠 개발	393	393	-	-
· 교육프로그램 연구·개발	100	100	-	-
· 양성평등교육 맥락적 구조화 및 다변화	400	400	-	-
· 성인지교육사업	554	554	-	-
· 중앙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운영사업	-	**455**	**455**	**순증**
· AI폭력예방교육 혁신사업 ISP[22]	-	142	142	순증

자료: 성평등가족부

중앙 폭력예방교육지원기관 운영 사업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23]에 따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위탁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2025년도까지 민간위탁사업으로 편성된 9억 500만원 중 사업비는 4억 5,500만원이고, 4억 5,000만원은 인건비에 해당함.

- 동 사업은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에서 실시하다가 2013년도부터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음. 2016년부터 한국양성평등교육진

22) 'AI폭력예방교육 혁신사업 ISP'는 폭력예방교육을 AI 기반으로 맞춤형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AI 폭력예방교육 혁신 플랫폼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강사의 강의활동 DB를 분석하여 전문강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 구축 전략을 수립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규 편성된 사업임.

2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설치·운영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전문강사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원기관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지원기관의 업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위탁**한다.

흥원 지원의 내역사업으로 편성되었고, 2021년에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동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 규정이 도입되었음.

「국가재정법」 제12조[24]는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에 출연[25]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반드시 개별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함. 출연금은 구체적으로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교부할 수 있다는 점과 연구개발사업을 위한 출연금 이외의 출연금은 일반적으로 사후정산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조금에 비해 집행상의 재량이 넓게 인정되기[26] 때문에 법적 근거를 요하고 있는 것임.

그런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운영 경비에 관한 출연 근거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운영 예산을 출연금으로 편성한 것은 「국가재정법」에 부합하지 않은 예산 편성이므로 출연의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4) **「국가재정법」 제12조(출연금)**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25) 「국가재정법」 제12조와 관련하여 출연금이 집행의 탄력성과 자율성이 다른 비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특성과 그로 인한 국회가 출연금을 원활하게 관리·감독하기 어렵다는 측면이 지적되어 왔음(국회예산정책처, 「제22대 국회 재정법령 개선과제」, 2024, 204면).

26)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2024. 5., 475면.

다. 성평등가족부 성인지 예산안 등

○ 현행 「성인지 예산서 작성 매뉴얼」은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의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한 경우 반영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성과평가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도 정하지 않고 있어 각 부처가 협의회의 성과평가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에만 성인지 예산서에 기재하는 결과를 초래함. 각 부처가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 성과평가 결과가 왜 반영되지 않았는지 파악하기 어렵고, ‘성과평가 반영 사항’ 항목을 신설한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음. 성인지 예산서에 성과평가 미반영 사유 등도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각 부처가 성과평가 결과를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므로 성평등가족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매뉴얼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1) 개요

성평등가족부의 2026년도 성인지 예산서(안)(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포함, 이하 같음)의 대상사업 수는 2025년(31개) 대비 4개[27] 증가한 35개로, 그 중 일반회계 사업은 26개, 기금 사업은 9개(양성평등기금 7개, 청소년육성기금 2개)임.

규모는 아이돌봄 지원,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사업의 증액 편성 등에 따라 2025년(1조 5,355억 300만원) 대비 1,654억 3,500만원(10.8%)이 증가한 1조 7,009억 3,800만원임.[28]

27) 일반회계 사업 3개(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피해예방 사업,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사업,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지원사업)와 양성평등기금 사업 1개(한부모가족 복지시설지원)는 신규 편성되었음.
28) [참고자료 2] 성평등가족부 2026년 성인지 예산안 대상사업 현황

【 2024년 ~ 2026년(안) 성평등가족부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현황 】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A)	2026년안(B)	증감(B-A)
계	사업수	30	31	35	4
	금 액	1,444,349	1,535,503	1,700,938	165,435
회계	사업수	19	22	26	4
	금 액	610,105	696,025	857,492	161,467
기금	사업수	11	9	9	-
	금 액	834,244	839,478	843,446	3,968

자료: 성평등가족부

2) 성과평가 결과 환류를 위한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 개선 필요

정부는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의 사전 심의·평가 등을 위해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29]에 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위원회를 두고, 부처별·사업별 성과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2021년부터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음.

「2026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함)에 따르면 2024년도 성인지 예·결산 사업 성과평가를 참고하여 계획영역, 성과영역, 환류영역의 반영 내용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음.[30]

성평등가족부도 동 매뉴얼에 따라서 2026년도 성인지 대상사업 총 35개(내역사업 기준 총 39개)[31]에 관한 2026년도 성인지 예산서(안)을 작성하였으나, 성인지 대상사업 중 7개 사업이 성인지 대상사업에 대하여 성과평가 반영사항을 전부 생략하였고, 10개 사업은 일부 영역란을 생략하여 제출하였음.

---

29)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규정(기재부 훈령)」** 제정(2020.10.)을 통해 ‘성인지 예·결산 관계부처 상설협의체’를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로 강화하였고, 성인지 대상사업의 사전 심의·평가 등을 위해‘전문평가위원회(이하 ‘전문평가위’)를 두고 있음. [참고자료 3]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규정」 참조

-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2021년부터 운영)
· 구성 : 기재부, 여가부, 행안부, 복지부, 국토부, 민간위원 등
· 기능 : 지침 개정 협의, 대상사업 선정 및 적절성 검토, 성과평가, 전문평가위원회 운영 등

- 전문평가위원회(2021년부터 운영)
· 구성 : 경제활동, 교육·직업훈련, 복지·문화 등 3개 분과로 구분하여 각 분과별로 평가위원 2인 및 실무위원 6인으로 구성
· 기능 : 성인지 대상사업의 적절성 검토 및 성과평가 사전 심의

30) [참고자료 4] 성과평가 작성 관련 매뉴얼 발췌

31) 성인지 대상사업의 수는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하지만, 성과평가 대상사업은 내역사업을 기준으로 산정함.

- 예컨대 유엔여성기구 기여금(ODA) 사업의 경우, 2024년도 성과평가에 성과지표 개선에 관한 제안이 있었으나, 2026년도 예산안의 ‘성과평가 반영 사항’에는 이 내용이 반영되지 않고, 생략된 채 제출되었음.

【 유엔여성기구 기여금(ODA)의 2024년도 성과평가 내용과 2026년도 예산안 반영 사항 비교 】

구분(영역)	2024년도 성과평가 내용	2026년도 예산안 성과평가 반영 사항
계획	◦ 성과지표로 기여금 집행율을 설정하고 있는데, 해당 기여금이 어떤 사업에 어떻게 쓰였는지 보여주질 못하므로 성과지표로 부적절함. ◦ 집행하기로 된 기여금 집행율에 대한 목표치를 도전적으로 설정하고 관리할 방법이 없음.	-
성과	◦ 성과 목표치를 달성하였음.	-
환류	◦ 성과지표 개선에 대한 2023년도 평가결과가 반영되지 않았음.	-

자료: 성평등가족부

성인지 예산서에 ‘성과평가 반영 사항’ 항목을 신설한 취지는 성과평가의 실효성 즉, 환류를 강화하려는 데에 있음.

그런데, 각 부처가 협의회의 성과평가 내용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에도 매뉴얼에서는 성과평가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도 정하지 않고 있어 각 부처가 협의회의 성과평가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에만 성인지 예산서에 기재하는 결과를 초래함.

즉, 매뉴얼에 따르면 각 부처가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지 않을 경

우 성과평가를 반영하지 않은 사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성과평가 결과가 왜 반영되지 않았는지 파악하기 어렵고, ‘성과평가 반영 사항’ 항목을 신설한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음.

또한 매뉴얼은 ‘2024 성과평가 반영 사항’ 표는 협의회의 성과평가 대상인 경우에만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32] 이에 따라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지원(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주거지원) 등 11개 내역사업의 경우 2026년도 성인지 예산서(안)에서 ‘2024 성과평가 반영 사항’ 표 자체를 기재하지 않고 제출하였음.

- 2024년도 성과평가 대상은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 「2024년도 성인지 예산서」, 「2025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2023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모두 작성한 사업으로 한정됨.

그런데, 성인지 예산서(안)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각 대상사업이 협의회의 성과평가 대상인지 여부를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성인지 예산서에 성과평가 대상 여부 및 성과평가 미반영 사유를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각 부처가 성과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사업에 반영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므로 성평등가족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매뉴얼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32) [참고자료 4] 성과평가 작성 관련 매뉴얼 발췌

3. 고용평등정책관

가. 총괄

1) 개요

고용평등정책관 소관의 2026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총액은 1,021억 1,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025년(1,008억 200만원) 대비 13억 900만원(1.3%)이 증액되었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37억원으로, 2025년(130억 8,900만원) 대비 6억 1,100만원(4.7%)이 증액되었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884억 1,100만원으로, 2025년(877억 1,300만원) 대비 6억 9,800만원(0.8%)이 증액되었음.

【 2026년도 고용평등정책관 예산안 총괄표 】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
계	100,802	100,802	102,111	1,309	1.3
일반회계	13,089	13,089	13,700	611	4.7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87,713	87,713	88,411	698	0.8

자료: 성평등가족부

2026년도 고용평등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사업은 여성인재양성 및

사회참여 확대,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은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6년도 고용평등정책관 예산안 명세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
계	100,802	100,802	102,111	1,309	1.3
【일반회계】	13,089	13,089	13,700	611	4.7
여성인재양성 및 사회참여 확대	606	606	1,006	400	66.0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11,481	11,481	11,792	311	2.7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지원	1,002	1,002	902	△100	△1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87,713	87,713	88,411	698	0.8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87,713	87,713	88,411	698	0.8

자료: 성평등가족부

2) 주요 증·감액사업 현황

2026년도 고용평등정책관 소관 사업 중 예산이 전년 대비 감액된 사업으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지원은 2025.10. 1. 정부조직 개편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지원사업이 이관된 사업으로, 2025년(10억 200만원) 대비 1억원(△10.0%)이 감액됨.

【 2026년도 성평등정책관 주요 감액사업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B)	증감		감액사유
	본예산	추경(A)		B-A	%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지원	1,002	1,002	902	△100	△10.0	2025.10. 1. 정부조직 개편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이관됨

자료: 성평등가족부

2026년도 고용평등정책관 소관 사업 중 예산이 전년 대비 증액된 사업으로,

일반회계 중 여성인재양성 및 사회참여 확대는 시스템 운영 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2025년(6억 600만원) 대비 4억원(66.0%)이 증액된 10억 600만원이 편성되었고,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은 117억 9,2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동 사업의 내역사업 중 새일센터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117억 400만원) 등은 2025.10. 1. 정부조직 개편으로 고용노동부의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사업 등[33]이 이관된 것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은 2025년(877억 1,300만원) 대비 6억 9,800만원(0.8%)이 증액됨.

33) 이관된 사업에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사업(2025년도 예산 114억 8,100만원)과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운영지원 사업 내 집단상담 종사자 교육비(2025년도 예산 6,100만원)가 포함되어 있음.

【 2026년도 고용평등정책관 주요 증액사업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B)	증감		증액사유
	본예산	추경(A)		B-A	%	
【일반회계】	**12,087**	**12,087**	**12,798**	**711**	**5.9**	
여성인재양성 및 사회참여 확대	606	606	1,006	400	66.0	정부위원회 성별참여 현황관리 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 시스템 운영 효율 개선을 위한 노후서버 교체 및 시스템 전면 개편 필요 * 정책결정과정의 양성참여 확대(156백만원→556백만원)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11,481	11,481	11,792	311	2.7	2025.10. 1. 정부조직 개편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이관됨 *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사업('25년도 114억 8100만원)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운영지원 사업 내 집단상담 종사자 교육비('25년도 6,100만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87,713**	**87,713**	**88,411**	**698**	**0.8**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87,713	87,713	88,411	698	0.8	저출생 대응을 위한 여성경제활동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 강화 필요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 센터운영지원비(센터당 361.4백만원→408백만원)

자료: 성평등가족부

나. 일반회계

1)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1234-311)

○ 고용노동부에서 이관된 새일센터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은 사업비 일부를 민간경상보조사업(320-01)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성평등가족부는 고용노동부와 달리 지방청이 없어 예산집행을 직접 관리·감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회계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일원화하고, 비목도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330-01)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 중앙여성경제활동 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사업출연금(350-02) 6,100만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이관·편성되었는데, 출연의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민간위탁사업비(320-02)로 비목을 변경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은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라 함) 등을 통한 집단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의 사업으로, ① 새일센터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② 기타 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음.

동 사업은 2025.10. 1. 정부조직 개편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경력단절 여성취업지원 사업 등이 이관된 것으로, 2025년(114억 8,100만원) 대비 3억 1,100만원(2.7%)이 증액된 117억 9,2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6년도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본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예산액	집행액			B-A	%
◦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	-	11,481	11,792	311	2.7
· 새일센터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지원	-	-	11,454	11,704	250	2.2
· 중앙여성경제활동 지원센터 운영	-	-	-	61	61	100.0
· 기타운영비	-	-	27	27	-	-

자료: 성평등가족부

나) 새일센터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 등의 비목변경 필요

동 사업의 내역사업 중 새일센터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구직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타 취업지원 프로그램(직업교육훈련·새일여성인턴 등)과 연계하는 등 종합적인 취업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임.

집단상담프로그램은 구직자의 취업의욕 및 자신감 고취, 구직기술 향상, 직업진로지도 등을 위하여 ① 기초 과정(20시간), ② 심화과정

(12시간), ③ 결혼이민자과정(12시간)으로 세분화되어 있음.

동 사업은 고용노동부 소관 사업이었으나, 2025. 10. 1.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고용노동부 소관의 여성고용정책 부문을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되었음.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7조[34]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35]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공동으로 전국 총 159개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라 함)을 지정·운영해왔음.

동 사업의 2025년 예산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총 사업비 114억 5,400만원 중 85억 1,200만원은 민간이 운영하는 새일센터(103개) 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사업(320-01)으로 편성하고, 29억 4,2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새일센터(37개소) 지원을

34)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7조(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①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단위의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1. 혼인·임신·출산과 휴직 후 복귀 등에 관한 상담, 정보제공 및 경력관리
2. 생애주기별 경력개발교육, 멘토링 및 네트워크 형성 등 경력단절 예방 프로그램 지원
3. 취업·창업 정보 제공 및 상담
4. 직업교육훈련,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5. 보육 지원 등 복지서비스 제공 및 연계
6.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관련 기관, 기업과의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운영
7.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성평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신청 등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여성 고용 촉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고용 촉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 또는 여성휴게실과 수유시설을 설치하는 등 사업장 내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위하여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330-01)으로 편성·집행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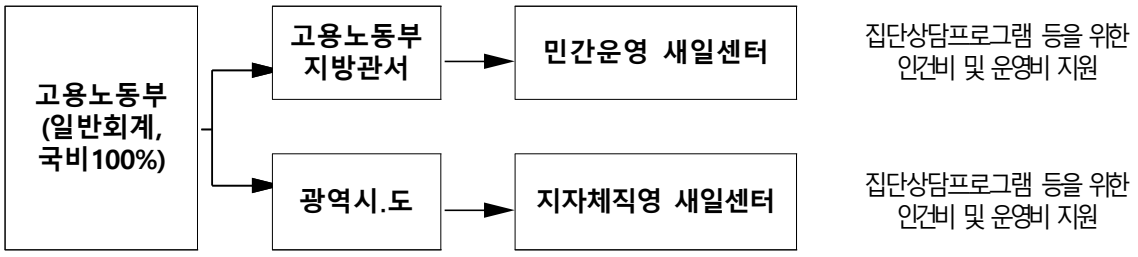
고용노동부가 민간이 운영하는 새일센터에 대한 지원 예산을 민간경상보조사업(320-01)으로 편성한 것은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 예산집행의 관리·감독이 가능하기 때문임.

2026년도 예산안도 동일한 구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 2025년 및 2026년 새일센터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지원 예산(안) 내역 】

구 분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지원대상
계(일반회계)	**11,454**	**11,704**	
민간경상보조 (320-010)	8,512	8,702	103개소(민간 운영 새일센터)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2,942	3,002	37개소(자치단체 직접 운영 새일센터)

【 2025년 새일센터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지원 집행구조 】



자료 : 성평등가족부

그런데, 성평등가족부는 새일센터 지정·운영사업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편성하고, 지원 예산을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330-01)으로

편성·집행하고 있음.

【 2026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A)	2026년 예산안 (B)	증감	
	예산액	집행액 (실집행액)			B-A	%
◦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75,177	74,756 (71,455)	87,713	88,411	698	0.8
・새일센터 지정·운영	73,468	73,255 (69,954)	85,292	86,641	1,349	1.6
- 센터운영지원	28,095	28,017	28,730	32,436	3,706	12.9
- 직업교육훈련	21,731	21,596	27,943	25,586	△2,357	△8.4
- 새일여성인턴	23,642	23,642	28,619	28,619	-	-
・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운영	1,385	1,197	1,556	1,631	75	4.8
・ 연구 용역	150	136	700	-	△700	△100
・ 기타 관서경비	174	168	165	139	△26	△15.8

자료: 성평등가족부

새일센터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을 민간경상보조사업(320-01)으로 편성할 경우 성평등가족부가 예산집행을 직접 관리·감독하여야 하는데, 성평등가족부는 고용노동부와 달리 지방청이 없어 예산집행을 직접 관리·감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회계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일원화하고, 비목도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330-01)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다음, 중앙여성경제활동 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운영지원 사업에서 이관된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은 사업출연금(350-02)으로 6,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국가재정법」 제12조[36]는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에 출연[37]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반드시 개별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함. 출연금은 구체적으로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교부할 수 있다는 점과 연구개발사업을 위한 출연금 이외의 출연금은 일반적으로 사후정산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조금에 비해 집행상의 재량이 넓게 인정되기[38] 때문에 법적 근거를 요하고 있는 것임.

그런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6조제3항[39]은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 센터에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임.

---

36) **「국가재정법」 제12조(출연금)**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37) 「국가재정법」 제12조와 관련하여 출연금이 집행의 탄력성과 자율성이 다른 비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특성과 그로 인한 국회가 출연금을 원활하게 관리·감독하기 어렵다는 측면이 지적되어 왔음(국회예산정책처, 「제22대 국회 재정법령 개선과제」, 2024, 204쪽).

38)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2024. 5., 475면

39)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6조(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①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중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8. (생 략)
③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따라서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운영 예산을 출연금으로 편성하는 것은 「국가재정법」에 부합하지 않은 예산 편성이므로 민간위탁사업(320-02)으로 비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사업에도 중앙경제활동지원센터 운영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2026년도 예산안에는 민간위탁사업(320-02)으로 16억 3,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집단상담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고용 24”에 등록할 것을 권유하는 등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고용관련 서비스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사업 이관으로 새일센터 이용자가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고용 관련 서비스와 단절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겠음.

【 2022년~2025년 집단상담프로그램 수료자 관련 통계】

(단위: 수, %)

구 분	수료자 수	취업자 수	취업률
2022년	26,807	8,233	30.7
2023년	26,823	8,147	30.4
2024년	26,583	8,276	31.1
2025년	19,166[1)]	-	-

주 1) 2025. 7월 기준 통계수치임.
자료: 고용노동부

【 2022년~2025년 집단상담프로그램 수료자의 타 취업지원서비스 연계】

(단위: 건)

성과지표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새일센터 집단상담 프로그램 수료자 타 취업지원서비스 연계 건수	목표	8,010	8,010	8,010	10,843	11,432
	실적	10,879	13,049	12,136	-	-
	달성도	135.8	162.9	151.5	-	-

주 1) 측정방법: 집단상담 수료자의 타 취업지원 서비스(새일, 고용, 지자체 등) 연계 건수의 합
주 2) 자료수집방법: 새일센터 실적보고 시스템
자료: 고용노동부

2)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지원(1235-330)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지원 사무가 고용노동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되었는데, 현행법은 적극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중요사항은 고용노동부에 설치된 심의기구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성평등가족부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사항의 주무부처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중요사항은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고용노동부에서 이관된 성별근로공시제는 202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현재 법적 근거 없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도 편성되어 있지 않은바, 성별근로공시제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시 대상 기관의 범위를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지원 사업은 기업의 여성 고용 수준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을 지도하며, 고용평등에 대한 연구·조사·교육·홍보 등을 통해 여성고용의 양적·질적 확대에 기여하려는 사업임.

동 사업은 고용노동부 소관 사업이었으나, 2025. 10. 1.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고용노동부 소관의 여성고용정책 부문을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되었음.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10억 200만원) 대비 1억원(10%)이 감액된 9억 2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6년도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지원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본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예산액	집행액			B-A	%
·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지원	-	-	1,002	902	△100	△10.0

자료: 성평등가족부

【 2026년도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지원 예산안 세부내역 】

(단위 : 백만원)

세부내역	2025년 예산 (고용노동부 편성)	2026년 예산안	비고
계	1,002	902	
- 일반용역비 · AA 지원사업 위탁사업비	947	867	
- 기타운영비 · 회의 운영 및 전문가 자문 등	55	35	

자료: 성평등가족부

나)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지원 관련 법률 정비 필요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지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에 따라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여성고용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고, 남녀임금격차의 개선을 유도하여 고용상 성차별을 해소하고, 직장 내 고용평등을 촉진하려는 목적의 사업임.

- 동 사업대상 기업은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공시대상 기업집단,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인 민간기업임.

동 사업은 ① 대상 사업장이 매년 4월 30일까지 남녀 근로자 및 임금현황을 제출하도록 하는 단계, ② 여성고용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연도 4월 30일까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서(이하 “시행계획서”라 함)를 제출하도록 하고[40], 제출된 시행계획서를 평가하여 서류의 내용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하는 단계[41], ③ 시행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이 다음연도 4월 30일까지 이행실적을 제출하면, 이를 평가하고,[42] 3년 연속 여성고용기준에 미달되면서 이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장의 사업주 명단을 공표하는 단계[43]의 절차로 이루어져 있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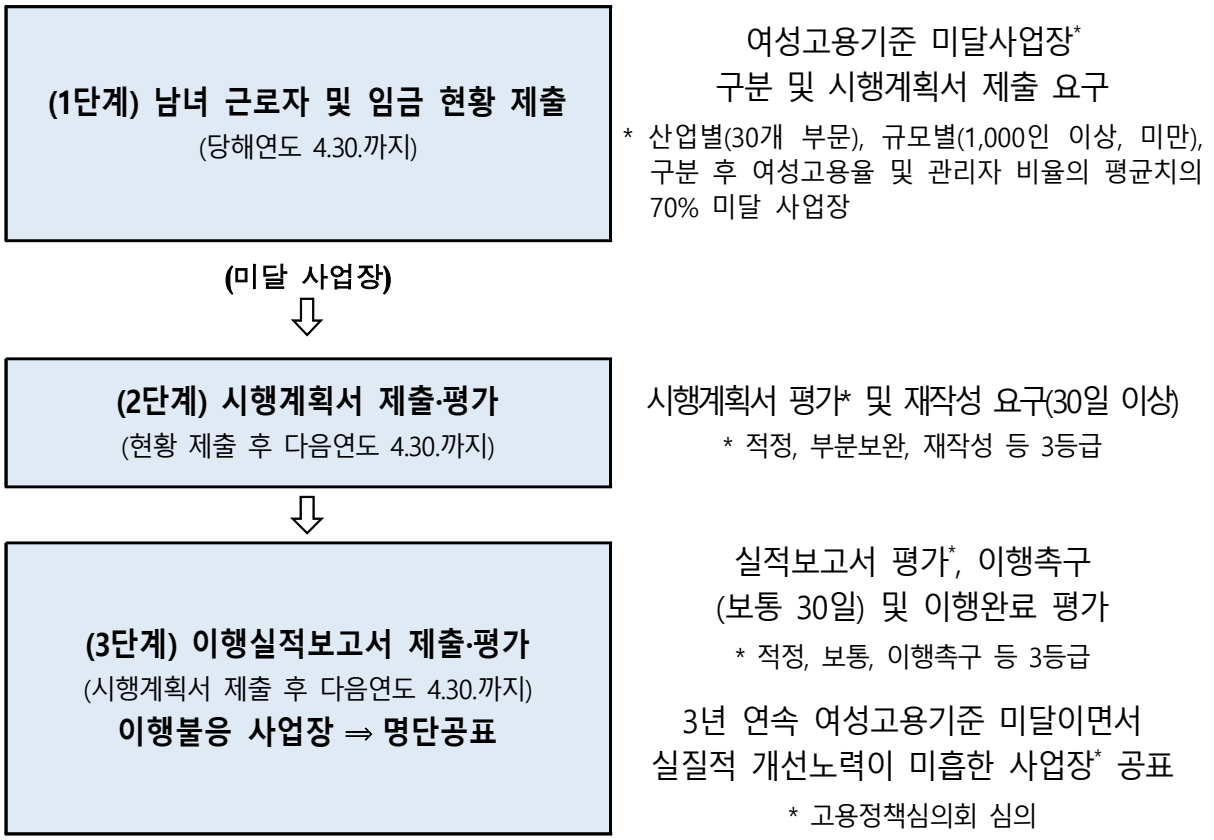
4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제출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로서 고용하고 있는 직종별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산업별·규모별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고용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차별적 고용관행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주는 시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단체의 장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주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과 남녀 근로자 임금현황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주로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려는 사업주는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과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4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제출 등)**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심사하여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차별적 고용관행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여 시행계획으로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업주에게 시행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4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이행실적의 평가 및 지원 등)** ① 제17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제출한 자는 그 이행실적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이행실적이 우수한 기업(이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이라 한다)에 표창을 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이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주에게 시행계획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⑥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이행실적의 기재 사항, 제출 시기 및 제출 절차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의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4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에 3회 연속하여 제17조의3제1항의 기준에 미달한 사업주로서 제17조의4제5항의 이행촉구를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그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의 사망·기업의 소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구체적인 기준·내용 및 방법 등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의 사업 절차 】



자료: 성평등가족부

그런데, 「남녀고용평등법」 제17조의8[44]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중요사항 즉, 여성 근로자 고용기준에 관한 사항,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심사에 관한 사항,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의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여부에

4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8(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여성 근로자 고용기준에 관한 사항
2.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심사에 관한 사항
3.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제17조의4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의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공표 여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관한 사항 등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45]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고용정책심의회는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설치된 심의기구인바, 성평등가족부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사항의 주무부처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중요사항은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46]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다음, 고용노동부에서 이관된 사무로 성별근로공시제가 있음. 성별근로공시제는 기관이 스스로 채용 → 근로 → 퇴직단계 등 고용상 항목별 성비 현황을 외부에 공시하는 제도임. 성별근로공시제의 대상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으로, 2024년 기준 499개 기관이 해당됨.

---

45)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 ①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역고용심의회를 둔다. 이 경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고용심의회로 볼 수 있다.
② 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8 각 호의 사항**
③ 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
1.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
2. 고용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전국 시·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6)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양성평등위원회)** ①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 8. (생 략)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
2. 양성평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 성별근로공시제 공시대상, 공시내용 및 공시방법】

공시대상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공시 내용	**필수 사항**	채용단계부터 퇴직단계까지 성별 현황 확인 지표 ① 채용단계(채용 비율), ② 근로단계(근로자 수, 근속연수, 임금 비율, 임원 비율), ③ 퇴직단계(이직자 비율)
	선택 사항	① 일·가정 양립제도, 모성보호제도 운영 현황, ② 성별격차 완화를 위한 조치계획 및 그에 따른 성과, ③ 직장 어린이집 설치여부 등
공시방법		연 1회 필수·선택사항을 온라인(aa-net)상 공시

자료: 성평등가족부 자료 재구성

그런데, 성별근로공시제는 202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현재 법적 근거 없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도 편성되어 있지 않은바, 성별근로공시제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시 대상 기관의 범위를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음.

4. 안전인권정책관

가. 총괄

1) 개요

2026년도 안전인권정책관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 청소년육성기금, 양성평등기금 및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무부 소관)으로 구성되어 총액은 1,463억 4,700만원으로 전년(추가경정예산 1,408억 5,200만원) 대비 54억 9,500만원(3.9%) 증가하였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61억 5,900만원으로, 전년(261억 8,000만원) 대비 2,100만원(△0.1%) 감소하였고,

청소년육성기금 지출계획안은 50억 9,700만원으로 전년(49억 3,200만원) 대비 1억 6,500만원(3.3%) 증가하였으며,

양성평등기금 지출계획안은 746억 9,700만원으로 전년(703억 2,700만원) 대비 43억 7,000만원(6.2%) 증가하였고,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무부 소관) 지출계획안은 403억 9,400만원으로 전년(394억 1,300만원) 대비 9억 8,100만원(2.5%) 증가하였음.

【 2026년도 안전인권정책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표 】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
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포함)	**139,762**	**140,852**	**146,347**	**5,495**	**3.9**
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제외)	**100,349**	**101,439**	**105,953**	**4,514**	**4.4**
일반회계	25,090	26,180	26,159	△21	△0.1
청소년육성기금	4,932	4,932	5,097	165	3.3
양성평등기금	70,327	70,327	74,697	4,370	6.2
범죄피해자보호기금	39,413	39,413	40,394	981	2.5

주: 기금의 경우 계획은 예산, 당초계획은 본예산, 수정계획은 추경을 의미함.
자료: 성평등가족부

2026년도 안전인권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사업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성보호활동지원,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 등 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청소년육성기금 사업에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교육 사업이 있으며, 양성평등기금 사업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 등 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고,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사업에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이 있음.

【 2026년도 안전인권정책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명세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
안전인권정책관 예산(범피 포함)	**139,762**	**140,852**	**146,347**	**5,495**	**3.9**
합 계(범피제외)	**100,349**	**101,439**	**105,953**	**4,514**	**4.4**
【일반회계】	25,090	26,180	26,159	△21	△0.1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1,045	1,045	980	△65	△6.2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	4,054	4,054	2,701	△1,353	△33.4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13,698	14,788	15,248	460	3.1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401	401	533	132	32.9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성보호활동지원	5,518	5,518	4,798	△720	△13.0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	-	-	1,690	1,690	순증
권익증진기본경비(총액)	141	141	14	△127	△90.1
권익증진기본경비(비총액)	233	233	195	△38	△16.3
【청소년육성기금】	4,932	4,932	5,097	165	3.3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교육	4,932	4,932	5,097	165	3.3
【양성평등기금】	70,327	70,327	74,697	4,370	6.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19,037	19,037	20,783	1,746	9.2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43,167	43,167	45,319	2,152	5.0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	8,123	8,123	8,595	472	5.8
(참고)【범죄피해자보호기금】	39,413	39,413	40,394	981	2.5
성폭력 피해자 지원	39,413	39,413	40,394	981	2.5

주: 기금의 경우 계획은 예산, 당초 계획은 본예산, 수정계획은 추경을 의미함.

자료: 성평등가족부

2) 주요 증·감액사업 현황

2026년도 안전인권정책관 소관 사업 중 예산이 전년 대비 감액된 사업은 일반회계 5개 사업임.

이 중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 사업은 3년 주기 실태조사(가정폭력, 성매매) 및 시설 평가(여성폭력 피해자, 성매매 피해자) 종료 등의 사유로 2025년 예산 대비 13억 5,300만원이 감액되었고,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성보호활동지원' 사업은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등이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 사업으로 이관되는 등의 사유로 2025년 예산 대비 7억 2,000만원이 감액되었음.

【 2026년도 안전인권정책관 주요 감액사업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B)	증감		감액사유
	본예산	추경(A)		B-A	%	
【일반회계】	25,090	26,180	26,159	△21	△0.1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1,045	1,045	980	△65	△6.2	위안부피해자 지원대상 감소 (8→6명)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	4,054	4,054	2,701	△1,353	△33.4	실태조사·시설평가 등 완료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성보호활동지원	5,518	5,518	4,798	△720	△13.0	내역사업 이관 및 신상정보 고지비용 절감
권익증진기본경비(총액)	141	141	14	△127	△90.1	상용임금 이관
권익증진기본경비(비총액)	233	233	195	△38	△16.3	기본경비 절감

자료: 성평등가족부

【 이관사업 】

회계 변동 내역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이관 세부사업명 (이관 내역사업명)	사유
일반회계 → 일반회계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성보호 활동지원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	디지털성범죄 관련 내역사업 이관 통합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사이버 상담)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사이버 상담)	
양성평등기금 → 일반회계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	
	(디지털성범죄 특화형 상담소 운영)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지원)	
일반회계 → 일반회계	권익증진 기본경비(총액)	행정능률향상 및 민원서비스개선사업	공무직 상용임금 예산 통합
	(상용임금) (고용부담금)	(상용임금) (고용부담금)	

자료: 성평등가족부

한편, 2026년도 안전인권정책관 소관 사업 중 예산이 전년 대비 증액된 주요 사업으로, 양성평등기금의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은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사유로 21억 5,200만원,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은 지원시설 기능보강 및 성착취 피해 청소년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등을 사유로 17억 4,600만원 증액되었음.

【 2026년도 안전인권정책관 주요 증액사업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B)	증감		증액사유
	본예산	추경(A)		B-A	%	
【일반회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13,698	14,788	15,248	460	3.1	성착취 선제적 대응 시스템 운영, 삭제지원시스템 고도화에 따른 시스템 운영비 등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지원	401	401	533	132	32.9	인신매매등 실태조사 실시 등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	-	-	1,690	1,690	순증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
【청소년육성기금】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교육	4,932	4,932	5,097	165	3.3	처우개선
【양성평등기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지원	19,037	19,037	20,783	1,746	9.2	지원시설 기능보강 및 성착취 피해 청소년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등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43,167	43,167	45,319	2,152	5.0	처우개선 및 스토킹 피해자 신변보호 강화(안전장치) 등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사업	8,123	8,123	8,595	472	5.8	보호시설 안전보강 및 처우개선 등
(참고)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성폭력 피해자 지원	39,413	39,413	40,394	981	2.5	처우개선 등

주: 기금의 경우 계획은 예산, 당초 계획은 본예산, 수정계획은 추경을 의미함.

자료: 성평등가족부

나. 일반회계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2131-341)

○ 여성인권평화재단설립 사업은 관련 법률의 개정을 전제로 편성된 것으로, 관련 법률안의 처리가 불확실하고 향후 심의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준비를 위하여 시행일을 조정하는 등 법안 의결 후에도 준비 기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2026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시급히 편성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임. ○ 피해자 지원사업은 2014년 최초로 편성된 이후 매년 불용처리되고 있으므로 집행실적이 전무한 사유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제에 의하여 강제 동원되어 일본군위안부로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지원하고 피해자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임.

2026년에는 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월 지원금과 간병비 등을 지원하는 생활안정지원, ②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비용을 지원하는 피해자 지원사업, ③ 추모사업, 청소년작품 공모전 등을 수행하는 피해자 기념사업, ④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직 3명에 대한 비용인 기

타 경상경비, ⑤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운영하는 여성인권평화재단설립 등 총 5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10억 4,500만원) 대비 6,500만원(△6.2%)이 감액된 9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6년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 (B)	증감	
	예산액	집행액			B-A	%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1,077	1,042	1,045	980	△65	△6.2
· 생활안정지원	590	595	555	454	△101	△18.2
· 피해자 지원사업	10	-	10	10	-	-
· 피해자 기념사업	320	313	320	320	-	-
· 기타 경상경비	157	134	160	160	-	-
· 여성인권평화재단설립	-	-	-	26	26	순증

자료: 성평등가족부

나) 여성인권평화재단설립 예산 관련법률 개정 전제 편성

동 사업의 내역사업 중 여성인권평화재단설립 사업은 2026년 신규사업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보편적 여성인권과 평화 담론으로 확장하여 체계적·지속적으로 연구·교육·기념할 수 있는 여성인권평화재단을 설립하려는 사업임.

2026년 예산안은 여성인권평화재단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 2,6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2026년도 여성인권평화재단설립 예산안 편성내역 】

○ **여성인권평화재단설립('27~)을 위한 준비위원회 운영: 26백만원** - 자문회의 등 회의 사례비 : 12백만원 - 법률 등 자문 수당 : 1.2백만원 - 연구용역 : 10백만원 - 자료집 제작 등 : 2.8백만원

자료: 성평등가족부

한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전시 등을 수행하고, 세계 여성인권과 평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여성인권평화재단을 설립하는 내용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9025호)」[47]이 2025년 10월

47)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9025호)」 관련 조항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조의5(여성인권평화재단의 설립 등) 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전시 등을 수행하고, 세계 여성인권과 평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여성인권평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재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일본군위안부 관련 조사·연구 2. 일본군위안부 관련 자료의 발굴·수집·정리·보존·관리 3. 일본군위안부 관련 교육·홍보·전시·기념사업 4.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국내외 교육·교류·협력사업 5. 세계 분쟁·갈등 지역의 여성인권 침해와 평화 저해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내외 교육·교류·협력사업 6. 한국과 일본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교류사업 7. 그 밖에 여성인권과 평화에 관한 사업 또는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

현재 성평등가족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현재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48]에 따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부 조직인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국내외 교류 등을 수행하고 있는데,

동 개정안은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가 수행하는 업무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을 예방·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현 행	개 정 안
	하여 필요한 사업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⑥ 국가는 재단의 사업 수행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⑦ 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받을 수 있다. ⑧ 재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연구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복사·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⑨ 재단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8)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설립 등)** ① 국가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을 예방·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설립한다.
②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종사자의 양성 및 보수교육
2.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간 연계망 구축 및 운영
3.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사업 개발 및 지원
4.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피해자 보호·지원시설에 대한 평가지원 및 컨설팅
5.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6.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 연구사업
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 지원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그 밖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8조(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사업) 법 제46조의2제5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이하 이 조에서 "일본군위안부피해자"라 한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2.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관련 국내외 교류
3. 그 밖에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물품지원 등 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사업

위하여 설립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설립목적[49]과 연관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50]로 여성인권평화재단을 독립적 기관으로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참고로, 현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사업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2131-341)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출연(2136-318)의 내역사업인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 등 사업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2026년 사업내용 및 예산안 규모는 아래와 같음.

【 2026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지원 관련 사업 예산안 및 사업내용 】

(단위: 백만원)

사업명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 등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출연)
2026년 예산안	980	1,809
구체적인 산출내역	○ 생활안정지원 : 454 ○ 피해자 지원사업: 10 ○ 피해자 기념사업: 320 ○ 기타 경상경비: 170 ○ 여성인권평화재단설립: 26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조사연구, 기록, 홍보: 946 ○ 국내외 교류 및 유네스코 지원: 639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224

성평등가족부는 해당 법률안 심사를 통해 2026년에 설립근거를 마련하여 2027년까지 여성인권재단을 설립할 계획으로, 2026년 예산안을 편성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즉, 동 예산은 관련 법률의 개정을 전제로 편성된 것이나, 해당 법

49)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설립 등)** ① 국가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을 예방·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설립한다.

50) 동 개정안의 제안이유 참조

률안의 처리가 불확실하고 향후 법률안의 심의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준비를 위하여 시행일을 조정[51]하는 등 법안 의결 후에도 준비 기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26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시급히 편성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임.

다) 피해자 지원사업 집행률 제고방안 마련 필요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피해자 지원사업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52]에 따라 피해자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에도 2025년과 동일한 수준인 1,000만원이 편성됨.

그런데 해당 예산은 2014년 최초로 편성된 이후 2025년 현재까지 한 번도 집행된 사례가 없으며, 매년 불용처리되고 있음[53].

성평등가족부는 매년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 안내 자료”를 배포하여 사업을 홍보하고 있으나 대상자들의 신청이 저조한 상황으로,

---

51) 현재 계류중인 관련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평등가족부는 여성인권평화재단의 설립준비를 위하여 충분한 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52)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법률상담 등)** ① 국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訴訟代理) 등의 지원(이하 “법률상담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률상담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④ 법률상담등의 요건과 내용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3) 2014년에는 3,000만원이 편성되었고 2015년부터는 매년 1,000만원이 편성됨.

필요최소한의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함.

2020년 이후에도 일본군‘위안부’피해자가 제기한 소송이 없지 않고, 최근 평화의 소녀상 훼손 등을 포함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수요는 있을 것으로 예상됨.

성평등가족부는 해당 사업의 집행실적이 전무한 사유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홍보 강화, 지원대상이나 지원범위 확대 등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최근 5년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제기한 소송 현황】

소송 개요	당사자 및 사건내용	진행상황
‘제국의 위안부’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 원고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9명 ○ 피고 : 박유하* * ‘제국의위안부’ 작가 ○ 내용 : 위안부 피해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표현을 담은 ‘제국의 위안부’ 출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1심 원고승소 (’16.1.) 2심 원고패소 (’25.1.)
‘제국의 위안부’ 관련 명예훼손소송	○ 원고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9명(상동) ○ 피고 : 박유하 ○ 내용 : 위안부 피해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표현을 담은 ‘제국의 위안부’ 출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무죄 확정 (’24.4.)
일본정부 대상 손해배상청구 소송	○ 원고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12명 ○ 피고 : 일본국 ○ 내용 : 일본정부에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으로서 손해배상 요구	원고승소 확정 (’21.1.)
일본정부 대상 손해배상청구 소송	○ 원고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및 유족 등 20명 ○ 피고 : 일본국 ○ 내용 : 일본정부에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으로서 손해배상 요구	1심 각하 (’21.4.) 2심 원고승소 확정 (’23.11.)

자료: 성평등가족부

2)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2136-318)

○ 기술 발전에 따라 디지털성범죄가 확산하고 있고 최근 법 개정으로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책임과 업무가 커졌으나 중앙디성센터의 인력 증원은 충분하지 않아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4시간 상담 및 원스톱 지원서비스가 필요하므로, 피해자 지원 업무의 안정적 수행 및 센터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정규직 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성폭력방지법」은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성폭력행위자 등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법 개정으로 성폭력행위자 등의 인적사항 및 범죄경력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구상권 행사방법 및 절차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구상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사업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을 예방·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54]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기관운영출연금 및 사업출연금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6년 예산안은 크게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나누어지는데, 사업

54)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설립 등)** ① 국가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을 예방·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설립한다.
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종사자의 양성 및 보수교육
2.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간 연계망 구축 및 운영
3.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사업 개발 및 지원
4.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피해자 보호·지원시설에 대한 평가지원 및 컨설팅
5.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6.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 연구사업
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 지원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그 밖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비는 ① 여성폭력 추방주간 운영,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 등을 지원하는 여성폭력방지 및 현장지원, ②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시설의 종사자 양성 및 보수교육, ③ 디지털성범죄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삭제지원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여성폭력피해자 인권보호 및 ④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연구하고 피해자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연구 등 4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147억 8,800만원) 대비 4억 6,000만원(3.1%)이 증액된 152억 4,8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6년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1] (A)	2026년 예산안 (B)	증감	
	예산액	집행액 (실집행액)			B-A	%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14,692	14,692 (14,305)	14,788	15,248	460	3.1
・인건비	6,618	6,618 (6,548)	6,898	7,391	493	7.1
・운영비	1,964	1,964	2,006	2,295	289	14.4
・사업비	6,110	6,110 (5,794)	5,884	5,562	△322	△5.5
- 여성폭력방지 및 현장지원	1,888	1,888	1,120	1,120	-	-
- 종사자 교육 및 역량강화	825	825	735	735	-	-
- 여성폭력피해자 인권보호	1,443	1,443 (1,262)	2,146	1,898	△248	△11.6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연구	1,954	1,954 (1,819)	1,883	1,809	△74	△3.9

주 1) 2025년 추경예산 기준임. 즉, 2025년 제1회 추경 심사 시 ‘여성폭력피해자 인권보호’사업(1,056백만원→2,146백만원)에서 삭제지원시스템 고도화 비용 10억 9,000만원이 증액된 것을 반영한 것임.
자료: 성평등가족부

나)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 및 역량강화를 위한 인력 증원 필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55]에 따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중앙디성센터”)가 설치되어 있음.

중앙디성센터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상담, 피해영상물과 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유포 현황 모니터링, 수사·법률·의료지원 연계,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국외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함.

2024년에는 10,305명의 피해자에 대하여 삭제지원, 상담 등 총 332,341건을 지원하였음.

---

55)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설치·운영)** ① 국가는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과 해당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호·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둔다.
②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불법촬영물등 피해 신고 접수·긴급상담과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지원
2.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연구·홍보
3.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종사자 교육·컨설팅
4.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
5. 불법촬영물등 피해를 입은 사람의 보호·지원에 관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6. 제3항에 따른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업무
③ ~ ⑤ (생 략) [본조신설 2024.10.16.]

【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절차 】



자료: 성평등가족부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실적 】

(단위 : 명, 건)

구분	지원 피해자수	합계	삭제지원	상담지원	수사·법률 지원연계	의료 지원연계
2020년	4,973	170,697	158,760	11,452	445	40
2021년	6,952	188,083	169,820	17,456	708	99
2022년	7,979	234,560	213,602	19,259	1,525	174
2023년	8,983	275,520	245,416	28,082	1,819	203
2024년	10,305	332,341	300,237	28,173	3,826	105
2025.8.	8,711	221,261	201,233	18,185	1,769	74

자료: 성평등가족부

최근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 등이 발전하면서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불법촬영물 등이 제작·유포·확산되는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음. 2024년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에 따르면, 2021년 통계 작성 이후 약 4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건수나 피해자 지원 건수가 5배 이상 급증하고 있음.

【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현황 】

(단위; 건, 명)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1)]
방송통신심의위 심의건	1,913	3,574 (87%)2)	7,187 (276%)	10,305 (439%)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 지원 피해자	176	212 (20%)	423 (140%)	1,201 (582%)
딥페이크 성범죄 경찰신고건	156	160 (3%)	180 (15%)	964 (518%)

주 1) 방송통신심의위 심의건수는 2024년 9월 기준,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 지원 피해자수와 딥페이크 성범죄 경찰신고건수는 2024년 10월 기준임.
2) 괄호안은 2021년 기준 증가율임.

자료: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2024.11.)”, 2쪽 참조.

또한, 디지털성범죄는 인터넷을 통해 다수에게 빠르게 전파되고 한번 유포되면 그 피해가 계속 지속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불법촬영물 등의 유포 현황을 철저히 파악하여 모든 불법촬영물 등을 신속하게 삭제함으로써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도록 하는 중앙디성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그런데, 중앙디성센터 정원은 2021년 39명에서 2025년 41명으로 2명 순증하는 것에 그치고, 2026년에도 추가 증원은 1명만 반영(정원 42명)되어 디성센터 인력의 1인당 평균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음. 1인당

삭제지원 건수를 보면, 2021년 9,472건(선제적 삭제지원은 4,244건)에서 2024년 15,279건(선제적 삭제지원은 6,973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 중앙디성센터 인력 변동 내역 (2021~2025년) 】

(단위: 명)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획)
정규직	17	21	24	26→31[1)]	33→37[2)]	38
기간제	22	18	15	13→8	8→4	4
계	39	39	39	39	41	42

주 1) 정기증원(2명) 외에 기관 내 자체 인력 재배치로 기간제 인력 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함.
2) 정기증원(2명) 외에 수시증원으로 기간제 인력 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함.
자료: 성평등가족부

【 중앙디성센터 1인당 삭제지원 건수 】

(단위: 건, 명)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 총 삭제지원 건수		169,820	213,602	245,416	300,237
피해자 등 요청 삭제지원	· 전체건수	123,138	164,883	192,424	244,457
	· 담당인원(정규직)	13	13	12	16
	· 1인당 건수	9,472	12,683	16,035	15,279
선제적 삭제지원	· 전체건수	46,682	48,719	52,992	55,780
	· 담당인원(기간제)	11	10	12	8
	· 1인당 건수	4,244	4,872	4,416	6,973

주: 담당인원 수는 정원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므로, 현원이 정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1인당 처리건수는 늘어날 수 있음.
* 선제적 삭제지원[56)] , 자료: 성평등가족부 자료를 재구성

56)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 없이 삭제지원 할 수 있는 업무임.
*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③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등에 대해서는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 없이도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한다. 이 경우 범죄의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촬영물등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1.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이 있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촬영물등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심지어 현원이 정원에 미치지 못 하는 현실[57]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업무 부담은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됨. 특히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매년 상당수의 결원이 발생하고 있어 업무의 연속성 등을 보장할 수 없음을 고려할 때 중앙디성센터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정규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최근 3년간 중앙디성센터 정현원 현황 】

(단위: 명)

구 분	'23.12.31		'24.12.31		'25.10.15.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규직	24	24	31	29	37	34
기간제	15	7	8	2	4	1
계	39	31	39	31	41	35

자료: 성평등가족부

또한, 인력과 역량 부족으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 디지털성범죄 사건은 시간과 관계없이 발생하므로 24시간 상담 및 원스톱지원 서비스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나 현재는 평일 8시부터 22시(주말은 9시~18시)까지만 지원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음[58]. 온라인 플랫폼의 유포 현황을 감시하는 업무도 삭제지원 업무와 병행하고 있어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지원

57) 성평등가족부는 정현원 차이가 나는 주요 이유에 대하여 정규직(일반 정규직, 공무직)의 경우 일반 정규직 채용 전형을 통해 공무직이 일반 정규직으로 재입사하여 공무직 결원 발생(현재 공무직 채용 절차 진행 중), 채용 후 입사 포기 등을, 기간제의 경우 지원자 수 미달, 채용 자격 부적격, 채용 후 입사 포기, 이직으로 인한 퇴사 등을 들고 있음.

58) 중앙디성센터가 운영하지 않는 야간에는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대응하고 있음.

건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실정임.

【 온라인 플랫폼 유포 현황 탐지 내담자 수 및 지원 건수 】

(단위: 명, 건)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내담자 수	2,646	3,178	4,365
지원 건수	366,740	91,004	39,771

자료: 성평등가족부

더욱이, 디지털성범죄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로 개정한 「성폭력방지법」이 2025년 4월부터 시행되면서 중앙디성센터의 책임과 업무가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삭제지원 대상에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추가됨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지원 수요가 증가[59]하거나 중앙디성센터가 구상권 행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음.

종합하면, 최근 기술 발전에 따라 디지털성범죄가 확산·고도화되고 있다는 점,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중앙디성센터에서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피해자 구제의 핵심임에도 센터의 인력 증원이 크지 않아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 최근 법 개정으로 중앙디성센터의 책임과 업무가 커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의 안전성과 센터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정규직 인력을 추가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60]

---

59) 성평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포 건수는 2022년 48,926건에서 2024년 98,101건으로 100% 이상 증가하였다고 함.

60) 2024년에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당시 여성가족위원회는 중앙디성센터 인력 27명 증원 및 시스템 고도화 등을 위하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사업에서 총 52억 2,30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반영되

참고로, 성평등가족부는 중앙디성센터 역할 및 피해 지원 강화를 위하여 불법촬영물·딥페이크 성착취물 삭제 조치를 위한 인력 5명, 온라인 플랫폼 유포 현황 탐지를 위한 인력 5명, 24시간 상담 및 원스톱 지원을 위한 인력 6명 등 총 22명[61]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입장임.

다)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지원 비용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및 실질적인 행사 필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제4항 및 제5항[62]에 따르면, 불법촬영물 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죄를 범한 성폭력행위자 등이 부담하고 국가가 이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지원 비용에 대한 구상권 근거 규정은 2018년에 신설되었으나, 성평등가족부는 수사기관에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 부재 등을 이유로 2024년까지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었음.

지 못함.

61) 그 외 아동·청소년 성착취 정보 감시 및 선제적 삭제 지원을 위한 인력 4명, 연구·홍보 및 국제공조체계 강화를 위한 인력 1명, 구상권 집행을 위한 인력 1명을 포함한 수치임.

6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④ 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4조의2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가 부담**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제4항의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상권 행사 금액의 산정 방식은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에 국회는 2024년 10월 국가나 지자체가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성폭력 행위자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범죄경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상권 행사 및 관련 자료 요청 업무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63]을 신설하였으며, 해당 규정은 2025년 4월부터 시행 중임.

그런데 법 시행 이후 2025년 10월 현재까지 성평등가족부는 구상권 산정 및 행사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 등을 마련하지 않았고 실제로 구상권을 행사한 사례도 아직 없는 실정임.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다수이거나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 가해자의 보복이 일어날 위험성도 있는 등 실무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그러나 구상권을 도입한 이유는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비용은 가해자(행위자)의 부담과 책임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며, 삭제지원 비용에 대한 구상권 행사 근거나 이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

6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의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범죄경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4. 10. 16.>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의 업무를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또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 10. 16.>

도는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음에도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상황은 최근 법률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2026년도 예산안에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여성폭력피해자 인권보호 사업에 구상권 집행지침 연구비용으로 6,0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는바, 해당 연구를 통해 구상권 행사 대상, 행사 방법, 절차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구상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3)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지원(2136-319)

○ 2023년 관련 법 시행 후 아직까지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 설치되지 않음에 따라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 한시적으로 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현재 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전담인력(4명)으로 전국의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지원 사업은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인신매매 피해자를 조기에 구조·지원할 수 있는 정책기반을 조성하며, 피해 신고접수, 응급조치, 피해자 판정, 맞춤형 지원 연계 등 인신매매 피해 구조·지원 원스톱 체계를 구축하려는 사업으로, 인신매매 방지기반 조성과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사업 2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4억 100만원) 대비 1억 3,200만원이 증액된 5억 3,300만원(32.9%)이 편성되었음.

【 2026년도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지원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예산액	집행액			B-A	%
◦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291	272	401	533	132	32.9
· 인신매매방지 기반조성	111	110	167	296	129	77.2
· 인신매매피해자 지원사업	180	162	234	237	3	1.3

자료: 성평등가족부

나)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 미설치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모색 필요

동 사업은 2021년 인신매매의 개념과 관련 범죄군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정의하고 효과적인 피해자 조기발견 및 보호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64]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신매매방지법”)」이 제정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책조정협의회 운영, 인신매매등피해자 권익보호기관 운영, 인신매매 방지 홍보 및 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임.

「인신매매방지법」 제15조[65]에 따르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

64)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6912호)」 제안이유 참조.

65) **「인신매매방지법」 제15조(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설치)**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인신매매등의 예방·방지 등에 관한 정부 정책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둔다.
1. ~ 8. (생 략)
② 피해자를 신속히 식별·보호하고 인신매매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

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하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광역지방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하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성매매·성착취·노동착취 등 착취유형이 다양하고 강력범죄와의 연관성도 큰 인신매매 업무에 대한 부담감과 전담인력·수행기관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 설치를 희망하는 지자체가 없어 2023년 1월 법 시행 이후 2025년 10월 현재까지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 한 곳도 설치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성평등가족부는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 한시적으로 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를 구성[66]하여 2023년 8월부터 피해자 확인서를 발급하고, 피해자가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서 상담, 신고접수, 구조지원비 지원 등을 직접 수행하는 체계를 구축·운영 중임.

2026년 예산안에도 내역사업인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사업에 중앙권익보호기관 운영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 2억 3,700만원(민간위탁사업비, 320-02)을 편성하고 있으며,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 관련 예

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둔다.
1. ~ 5. (생 략)
③ ~ ⑤ (생 략)

66) 여성가족부(성평등가족부)는 2023년 6월 「(임시)사례판정위원회 한시적 운영계획(안)」을 마련하여 동 계획에 대해 감사원에 사전 컨설팅을 신청(2023.7.13.)하였고 감사원은 임시사례판정위원회의 한시적 운영 필요성을 인용(2023.8.18.)하였음.

산은 반영되어 있지 않음.

【 2026년도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사업 세부산출내역 】

□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사업(237백만원)
· **중앙권익보호기관 인건비 및 운영비: 87백만원**
-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인력(2명)의 인건비 및 운영비
* 정규직 3명(기관장, 팀장1, 팀원1)의 인건비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출연금에서 지급
· **인신매매등 방지 정책지원: 50백만원**
- 인신매매등 예방·방지관련 조사 및 연구, 법정의무교육 콘텐츠 개발 및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사례판정위원회 운영**, 인신매매 예방·방지 대국민 인식개선 사업 추진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 캠페인 등), 인신매매등 네트워크 구축 및 전문가 자문 등
· **인신매매등 피해자 구조지원: 100백만원**
- 피해자에게 생계지원, 의료지원. 귀국지원, 취업지원, 법률지원 제공

자료: 성평등가족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 설치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서 피해자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보임.

그러나 「인신매매방지법」 제14조[67]에서 “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의 운영”은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업무로만 명시하고 있으므로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서 법적 근거 없이 해당 위원회를 계속 운

67) **「인신매매방지법」 제14조(피해자 확인서 발급)** ①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자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자 확인서 발급시 피해자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판정하기 위하여 제15조에 따른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 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판정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이 경우 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판정위원회의 판정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제15조에 따른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피해자 확인서를 외국인에게 발급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 및 제46조의2의 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

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인신매매방지법」상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은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 대한 지원, 인신매매등 예방·방지 관련 조사·연구, 관련 정책 개발·보급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총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서 인신매매등의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등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업무를 하도록 한 체계에도 맞지 않은 부분도 있음.

【 「인신매매방지법」상 피해자권익보호기관 업무 관련 조항 】

「인신매매방지법」

제15조(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설치)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인신매매등의 예방·방지 등에 관한 정부 정책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둔다.

1. 제2항에 따른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 대한 지원
2. 인신매매등 예방·방지 관련 조사 및 연구
3. 인신매매등 예방·방지 관련 정책 개발·보급
4. 인신매매등 예방·방지 관련 교육 및 홍보
5. 인신매매등 예방·방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6. 인신매매등 예방·방지 관련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
7. 인신매매등의 신고접수
8.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인신매매등 예방·방지 관련 업무

② 피해자를 신속히 식별·보호하고 인신매매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둔다.

1. 인신매매등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2.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3. 인신매매등 예방·방지 관련 교육 및 홍보
4. 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의 운영
5.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인신매매등 예방·방지 관련 업무

특히, 현재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실질적인 전담인력 4명(정규직 2명, 기간제 2명)이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 없이 전국의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인신매매등 범죄에 대응하고 피해자를 신속히 파악·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음.

국가통계포털에서 관련 범죄로 추산한 인신매매등 범죄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2021년 583건에서 2023년 825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피해자가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채무, 여권압류 등으로 협박받아 신고하기 어려운 인신매매등 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실제 사건은 더욱 많을 것으로 보임.

【 인신매매등 범죄 발생건수(2019년~2023년) 】

(단위: 건)

구 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발생건수	3,106	582	500	583	616	825

주: 국내 인신매매등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계가 없어 국가통계포털(통계청)에서 인신매매등범죄에 해당하는 범죄 중 형법(약취·유인, 인신매매 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요행위 등), 특가법(제13세미만 약취, 유인 등) 등 공표통계를 중심으로 추산함.
자료: 성평등가족부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 인신매매등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고[68],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통해 피해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인원도 약 3년간 총 34명에 그치고 있음.

---

68)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에 「인신매매방지법」 제10조에 따라 인신매매등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할 예정(예산 2억원)임.

* **「인신매매방지법」 제10조(인신매매등 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국내외 인신매매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인신매매등 실태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인신매매등의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 인신매매등 피해자 확인서 발급 현황 】

(단위: 건, 명)

구 분	총 발급건수	개최 횟수	성별		국적		피해유형		
			남성	여성	내국인	외국인	성매매와 성적착취	노동력 착취	성적착취 노동력착취
계	34		10	24	-	34	10	20	4
2023년	3	1회	-	3	-	3	-	-	3
2024년	12	3회	3	9	-	12	5	6	1
2025.10	19	5회[1)]	7	12	-	19	5	14	

주 1)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2025년 11월에 1회 더 개최할 예정이라고 함.
자료: 성평등가족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종합하면, 2023년 1월 법 시행 후 2025년 10월 현재까지 지역피해자 권익보호기관이 설치되지 않음에 따라 현재 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성평등가족부는 피해자 보호·지원 전달체계를 개편하는 등 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69].

69) 해당 사업에 대하여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각각 인신매매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라는 취지의 시정요구를 채택한 바 있음.[여성가족위원회, “2023회계연도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보고서(여성가족부 소관)”, 2024. 9, 324 및 359쪽; 여성가족위원회, “2024회계연도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보고서(여성가족부 소관)”, 2025. 9, 27쪽 참조.]

4)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2136-438)

○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2026년도 지원 예산은 실질적으로 기존보다 인력 1명을 추가하는 비용만 증가하였는데, 법적·현실적으로 지역디성센터의 역할과 책임이 크게 증가한 것을 고려하여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성평등가족부, 경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중앙디성센터 및 각 지역센터 등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가) 개요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 사업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역디성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고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에 대한 예방교육 및 사이버 상담 등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다른 세부사업에 있던 내역사업 3개를 이관하고, 1개 내역사업(디지털성범죄 방지 정책 조정·협의)을 신설하여 2026년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임.

2026년 예산안은 16억 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 2026년도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A)	2026년 예산안 (B)	증감	
	예산액	집행액			B-A	%
◦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	-	-	-	1,690	1,690	순증
· 디지털성범죄 방지 정책 조정·협의	-	-	-	10	10	순증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지원	-	-	-	1,115	1,115	순증
·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	-	-	300	300	순증
· 아동·청소년 온라인성착취 사이버 상담	-	-	-	265	265	순증

자료: 성평등가족부

【 2026년도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 사업 이관 내역 】

내역사업	이관 전 세부사업명		이관 후 세부사업명
지역디성센터 운영 지원(기존 디지털성범죄 특화형 상담소 운영)	가정폭력·스토킹방지 및 피해자지원 (양평기금, 2159-432)	→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 (일반회계, 2136-438)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 성보호활동 지원 (일반회계, 2137-322)		
아동·청소년 온라인성착취 사이버 상담			

나) 지역디성센터 지원 강화 및 디지털성범죄 대응 관련 기관들 간의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 필요

디지털성범죄는 일반적으로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불법촬

영물 등을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 또는 유통·소비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성범죄를 의미[70]함.

최근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대학가 등에서 딥페이크 합성물을 텔레그램 대화방 등을 통해 공유·유포하거나 신상정보를 온라인에 공개(박제)하고 피해자를 괴롭히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디지털성범죄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그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정부는 2024년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새 정부 국정과제에서도 중앙·지역 디성센터 기능강화 및 관계부처 간 원스톱 대응협력체계 구축 등 디지털성범죄에 강력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국회도 2024년 10월 「성폭력방지법」을 개정하여 중앙디성센터 및 지역디성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삭제지원 대상에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추가하는 등 디지털성범죄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였음. 해당 개정규정[71]이 2025년 4월부터 시행됨에

---

70)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디지털 성범죄의 뜻" 참조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594&ccfNo=1&cciNo=1&cnpClsNo=1&search_put).

71)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설치·운영)** ① 국가는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과 해당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호·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둔다.
②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7. (생 략)
③ **시·도지사**는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과 해당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둘 수 있다.
1. ~ 4. (생 략)

따라 기존 디지털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는 지역디성센터로 전환되었음.

【 전국 디성센터 현황 】



자료: 성평등가족부

---

④ 시·도지사는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이라 한다)의 설치·운영 및 제4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2026년도 예산안에는 지역디성센터 16개소(서울 제외)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 11억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지역디성센터 운영 지원 예산은 기존 디지털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 지원 예산(2025년 기준 7억 1,200만원)보다 4억 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기존에 지방비로 운영되던 경기도의 지역디성센터를 국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지원인원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리면서 처우개선비용을 반영했기 때문임. 각 센터에 지원하는 운영비와 사업비 단가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됨.

【 2025~2026년도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기관 관련 예산 세부산출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	2026년도 예산안
사업명	디지털성범죄 특화형 상담소 운영	지역디성센터 운영 지원
주요내용	15개소에 각 2명 지원	16개소(경기 추가)에 각 3명 지원
예산총액	712	1,115
구체적 산출내역	· 인건비: 530 (= 35,363천원×15개소×2명×50%) · 운영비: 54 (= 7,200천원×15개소×50% · 사업비 128 (= 17,000천원×15개소×50%)	· 인건비: 921 (= 38,390천원×16개소×3명×50%) · 운영비 58 (= 7,200천원×16개소×50%) · 사업비 136 (= 17,000천원×16개소×50%)

자료: 성평등가족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즉, 지역디성센터에 대한 지원 예산은 실질적으로 기존보다 인력 1명을 추가하는 비용만 증액하고 있는데, 법적·현실적으로 지역디성센터의 역할과 책임이 크게 증가한 것을 고려하여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025년 4월부터 시행 중인 「성폭력방지법」은 불법촬영물 등 삭제 지원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고 시·도지사가 지역디성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등[72] 디지털성범죄 대응에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으며, 법률 개정 및 제도 개선에 따라 지역디성센터의 업무도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지원, 예방 관련 통계 작성·관리 등이 추가·확대됨.

---

72)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유포되어 피해(불법촬영물등의 대상자로 등장하여 입은 피해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의4에서 같다)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불법촬영물등의 대상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7조의4(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설치·운영) ③ **시·도지사**는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과 해당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둘 수 있다.

1. 불법촬영물등 피해 신고 접수·상담 및 사후관리
2.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지원
3.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교육·홍보
4.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업무

④ 시·도지사는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이라 한다)의 설치·운영 및 제4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지역디성센터 업무 】

기존	○ 피해 신고 접수 및 피해자 상담 ○ 불법촬영물 유포 모니터링 및 삭제지원(시스템 없을 시 중앙디성센터 연계) ○ 피해자 수사기관·법원 동행, 의료·무료 법률 연계 지원, 피해자 맞춤형 치유회복 프로그램 제공 등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종합 사례 관리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신규 /확대	○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지원(신규) ○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통계 작성·관리(신규) ○ 피해지원 및 예방 관련 교육·홍보 ○ 피해 지원 및 예방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교류(지역 거점기관 역할)

또한, 디지털성범죄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피해 양상도 다양하므로 중앙디성센터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 지역디성센터가 피해자 접근성이 좋고 맞춤형 지원이 보다 용이한 점, 중앙-지역디성센터간 양방향 온라인 협업 게시판을 구축하여 중앙센터 피해자를 지역센터로 연계하는 사례가 늘어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지역디성센터에 대한 인력 및 예산을 확대하여 센터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 발생건수는 2024년 기준 15,411건으로 2020년 9,700건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였으며, 성범죄 중 디지털성범죄 발생비율도 38%로 매우 높은 수준임.

【 최근 5년간 디지털성범죄 발생 현황(경찰청 범죄통계) 】

(단위 :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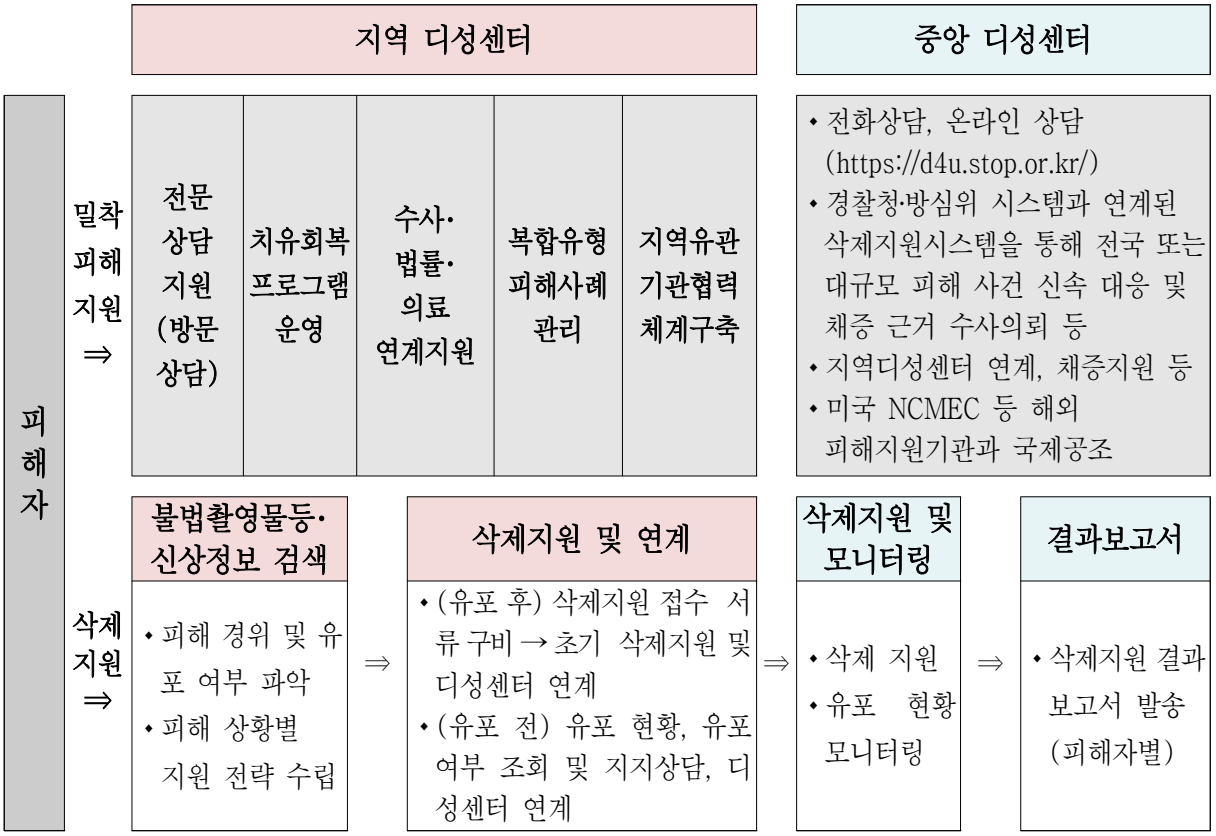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디지털성범죄 발생건수	**9,700**	**13,041**	**19,028**	**16,306**	**15,411**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2,047	5,067	10,563	8,004	5,858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등 이용촬영·반포등)	4,881	5,541	5,876	5,490	5,829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31	259	170	168	550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등이용협박·강요등)	120	546	821	970	823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배포등)	2,621	1,628	1,598	1,674	2,351
성범죄 발생건수	**36,416**	**37,518**	**45,415**	**42,708**	**40,518**
디지털성범죄/성범죄 발생비율	26.6	34.8	41.9	38.2	38.0

주: 성범죄 발생건수는 경찰청 범죄통계상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성풍속범죄(간음, 풍속영업 규제위반 제외), 기타범죄 중 청소년성보호법 제12조~제15조(성매수, 알선, 강요행위 등) 범죄 발생건수를 합산한 것임
자료: 경찰청 범죄통계(연도별)

이와 더불어 디지털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디성센터와 지역디성센터 및 지역디성센터 상호 간 협조 및 연계가 긴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73].

73) 2026년도 국내 유관기관 간 협력 관련 예산으로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2136-438)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정책 조정·협의로 1,000만원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2136-318)에 국내 유관기관 협업 및 협력체계 구축으로 6,000만원이 각각 편성되어 있음.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 】



자료: 성평등가족부

현재 국비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서울시 디성센터를 포함하여 중앙 및 각 지역디성센터간 시스템 연계 및 사례 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져 지역 간 편차 등으로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을 막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또한, 성평등가족부,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관계 기관 간 유기적 협업을 통하여 피해자 중심으로 신속하게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성평등가족부는 2025년에 통합신고홈페이지 및 중앙-지역디성센터 간 양방향으로 실시간 소통을 할 수 있는 플랫폼(게시판)을 구축하고, 2026년에는 전국 디성센터 간 간담회 및 컨설팅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정부는 2026년 국무총리 훈령을 제정하여 디성센터와 유관 부처 등이 함께 참여하여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총괄하는 “디지털성범죄 통합 대응 추진단”을 구성할 예정[74]이라고 함.

74)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 소속으로 정부기관(성평등가족부, 경찰청, 방미통위 등) 및 민간기관(중앙디성센터, 방미심위 등) 파견인력으로 구성한 추진단을 2026년 내에 출범하여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함. 다만, 2026년 예산안에 추진단 구성·운영을 위한 경상비 및 운영비(2억 9,700만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음.

* 정부는 추진단 운영 시 중앙디성센터와 한 공간에서 근무할 계획으로 이에 대한 임차료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출연금”에서 임차료 일괄 증액(19억 3,600만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다. 양성평등기금

1)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2159-432)

○ 폭력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사업은 2024년부터 민간경상보조사업(320-01)과 민간위탁사업(320-02)으로 구분하여 편성하고 있는데, 예산집행체계를 이원화할 필요성이 적고, 동일한 기관에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서로 다른 비목이 집행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민간위탁 근거를 관련 법률에 명확히 하고 비목을 민간위탁사업(320-02)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인당 생계비 단가가 286,700원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보장시설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426,741원)의 67.2%에 불과하므로 생계비 단가를 현실화하여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가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의 집행실적이 70%~80%대로 부진한 측면이 있고, 지자체별로 실집행률 차이가 크므로 실적이 부진한 이유 및 지역별 예산수요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집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은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및 가정폭력 상담소·보호시설을 운영하고 가정폭력피해자에게 의료비와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피해 회복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며,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에게 무료 법률지원을 제공하거나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에게 긴급주거시설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임.

2026년도에는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 가정폭력 상담소 및 통합상담소 운영,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운영,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의료비 등, 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등 총 7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75]됨.

2026년도 계획안은 2025년(431억 6,700만원) 대비 21억 5,200만원(5.0%)이 증액된 453억 1,9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6년도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 계획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A)	2026년 계획안 (B)	증감	
	계획액	집행액 (실집행액)			B-A	%
◦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41,497	41,490 (39,099)	43,167	45,319	2,152	5.0
·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	6,832	6,732 (6,338)	7,940	8,446	506	6.4
· 가정폭력 상담소 및 통합상담소 운영	12,251	12,208 (11,763)	12,937	13,773	836	6.5
·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지원	613	613 (602)	712	- (이관)	△712	△100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13,254	13,249 (12,722)	13,144	14,261	1,117	8.5
·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운영	1,041	1,040 (998)	1,155	1,342	187	16.2
·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의료비 등	1,853	1,853 (1,779)	1,853	1,853	-	-
· 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	3,195	3,067 (2,987)	3,195	3,195	-	-
·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2,458	2,428 (1,910)	2,231	2,449	218	9.8

자료: 성평등가족부

75) 동 사업의 내역사업 중 지역디성센터 운영 지원(디지털성범죄 특화형 상담소 운영)은 2026년도 예산안에서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2136-438) 사업으로 이관됨.

나) 폭력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사업 비목 일원화 및 관련 법령에 민간위탁 근거 마련 필요 등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폭력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사업은 법률 관련 전문기관을 통해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의 피해자에게 무료로 형사 및 민사·가사 사건에 대한 법률지원을 제공하여 폭력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사업임.

2026년도 계획안은 2025년과 동일하게 민간경상보조사업(320-01)으로 15억 500만원, 민간위탁사업(320-02)으로 16억 9,000만원 등 총 31억 9,5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6년도 폭력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사업 계획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A)	2026년 계획안 (B)	증감	
	계획액	집행액 (실집행액)			B-A	%
◦ 폭력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3,195	3,067 (2,987)	3,195	3,195	-	-
-민간경상보조(320-01)	1,505	1,505 (1,425)	1,505	1,505	-	-
-민간위탁사업비(320-02)	1,690	1,562 (1,562)	1,690	1,690	-	-

자료: 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는 2023년까지 동 사업을 전액 민간경상보조사업(320-01)으로 편성·집행하였으나, 민간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을 감축하는 정부 기조에 따라 2024년부터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

단에 대한 지원금 15억 500만원은 민간경상보조사업(320-01)으로, 대한변협법률구조공단 등 다른 기관에 대한 지원금 16억 9,000만원은 민간위탁사업(320-02)으로 구분하여 편성하고 있음.

2024년 운영실적을 보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변호사회 등 5개 기관에서 총 11,872건을 지원하였음.

【 2024년 무료 법률지원 사업 기관별 운영실적 】

(단위 : 건)

구분	처리건수						
	계	구조건수			기타건수		
		계	민/가사	형사	계	상담	기타
계	11,872	2,168	1,560	608	9,704	9,426	278
대한법률구조공단	5,845	803	803	-	5,042	4,917	125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240	185	122	63	55	7	48
한국가정법률상담소	4,096	432	431	1	3,664	3,664	-
한국성폭력위기센터	1,297	625	183	442	672	672	-
한국여성변호사회	394	123	21	102	271	166	105

자료: 성평등가족부

그런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다른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내용이나 지원 방식이 동일하여 예산구조를 이원화할 필요성이 크지 않고, 2024년에 대한법률구조공단 외 기관 3곳(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에도 민간경상보조금(320-01)이 교부[76]

76) 여성가족부(성평등가족부)는 다른 기관에 민간경상보조금을 지급한 사유에 대하여 기존에 민간경상보조로 지원받던 기관이 민간위탁방식으로 집행체계를 전환함에 따라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는 기간(2024년

된 문제가 지적되어 지난 9월 여성가족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의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때 사업 집행체계(비목)를 일원화하라는 제도개선 요구를 채택[77]한 바 있음.

민간보조사업과 민간위탁사업은 사업의 성격 및 수행절차에 차이가 있음에도 동일한 사업 내용에 대하여 서로 다른 비목으로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예산집행체계의 이원화는 기관별로 지원되는 전체 금액을 바로 알기 어렵게 하며 서로 다른 집행절차를 거치면서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임.

대한법률구조공단에만 「법률구조법」 제4조[78]를 근거로 민간경상보조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임.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 외에 다른 기관과의 차이가 없고, 동 사업은 법률구조법인의 육성·발전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성폭력방지법」 등 개별법에 따라 국가의 책무 등으로 규정된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 사업을 다른 법인·기관 등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한 것에 가깝기 때문임.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경우 국선변호사 제도 활용, 지원대상 제

3~4월)까지 피해자를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지원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라고 설명함.

77) 여성가족위원회 “2024회계연도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보고서(여성가족부 소관)”, 2025. 9, 28쪽;, 여성가족위원회 “2024회계연도 여성가족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검토보고서”, 2025.9, 184~192쪽 참조.

78) **「법률구조법」 제4조(보조금의 지급)** 정부는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과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법률구조법인"이라 한다)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한 등[79]으로 매년 실집행률이 다른 기관에 비해 저조한 편인데, 예산 비목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그 외 기관에 대한 지원금으로 구분할 경우 각 기관별 예산이 적정히 배분되기 어려운 측면도 있음. 2024년의 경우에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집행액은 8억 2,000만원으로 당초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지원하려던 민간경상보조금 15억 500만원의 절반 수준에 그침.

【 2021~2024년 무료 법률지원 기관별 예산 실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기관명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획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계획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계획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계획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대한법률 구조공단	1,594	1,078 (67.6%)	1,505	1,164 (77.3%)	1,445	785 (54.3%)	900[1)]	820 (91.9%)
한국성폭력 위기센터	780	780 (100%)	940	940 (100%)	990	990 (100%)	1,034	1,034 (100%)
한국가정 법률상담소	317	317 (100%)	470	379 (80.6%)	470	470 (100%)	512	512 (100%)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250	250 (100%)	280	280 (100%)	290	290 (100%)	315	315 (100%)
한국여성 변호사회	-	-	-	-	-	-	294	294 (100%)

주 1) 2024년 당초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민간경상보조는 15억 500만원이었으나, 다른 기관에 민간경상보조금 6억 500만원을 교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최종배분한 예산은 9억원이 됨.

자료: 성평등가족부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79)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경우 형사 절차는 국선변호사 제도를 활용하여 무료로 지원하고 지원대상을 원칙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국민으로 제한하고 있음.

* **「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시행규칙」 제5조(법률구조대상자)** ① 법률구조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중에서 공단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이하 "구조대상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구조대상자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법률구조를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민간위탁사업은 국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책임하에 행사하는 경우에 편성하는 반면, 민간보조사업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 편성함.

【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위탁사업비 비교 】

구분	민간경상보조(320-01)	민간위탁사업비(320-02)
정의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민간에 대한 경상적 지원으로 다음을 포함한다. -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 국가조성사업 또는 보호사업 중 물가안정 또는 기타 정책 목적에 의하여 원가 이하로 판매함으로써 야기되는 차액보상을 위한 일반적인 생산장려금 또는 보조금 2.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한 법정배분금 중 민간에 대한 경상적 지원	법률에 규정된 국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책임하에 행사하는 경우의 비용
일반적인 근거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사업 수행 절차	사업계획 수립 → 보조사업자 선정(공모 등) → 사업계획 제출 및 승인 → 공문 및 이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국고보조금 신청 및 교부	사업계획 수립 → 계약 공고* → 입찰 → 제안서 평가 → 계약체결 → 사업계획 제출 및 승인 → 공문 및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선금 및 대금 청구 및 지급 *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1억원 이상은 계약부서에서 조달청으로 계약체결 요청

자료: 성평등가족부 제출자료 및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을 참조하여 재작성

폭력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나 상담 등의 업무는 스스로 방어·보호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려는 업무로서 각 개별법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의 구체적인 근거를 두고 있거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 폭력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관련 근거규정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귀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의2(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등) ① 국가는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訴訟代理) 등의 지원(이하 "법률상담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관에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등의 요건과 내용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등) ④ 법 제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기관**"이란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와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법률구조 및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서비스 제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등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와 주거 지원 및 취업 등 자립 지원 서비스의 제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5조(피해자 보호・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제공,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 지원, 취학 지원 및 그 밖에 피해자의 보호, 회복, 자립・자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따라서 폭력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해당 사업은 전액 민간위탁사업(320-02)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법률지원 및 지원기관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은 사업 관련 조항이 국가 등의 책무 규정으로서 해당 기관에 대한 위탁 근거가 없는 상황임.

관련 법률에 위탁기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민간위탁사업은 경쟁입찰을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방식[80]으로 진행됨으로써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전까지 예산이 지급되지 못하는 등 피해자 지원에 불리한 부분이 있음.

80)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관련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차에 따라 경쟁입찰 등을 거쳐 수탁기관 또는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25.1, 198~199쪽].

법률구조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기관의 범위는 한정적으로 매년 수탁대상기관이 유사한 점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 대상기관을 법령에서 규정하여 경쟁입찰 등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안정적으로 사업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음.

한편,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실집행률이 매년 저조한 반면, 스토킹·교제폭력 사건에 특화되어 있는 한국여성변호사회 등은 2025년 사업비를 조기 소진하여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지된 사례[81]가 발생함.

지원기관들의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각 기관별 예산을 적정히 배분하고, 최근의 여성폭력 발생 현황, 변호사 수임료 증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폭력피해자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생계비 단가 현실화 필요[82]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아동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 제7조[83]에 따라 설치된 보호

81) 경향신문 기사(2025.7.15.), “한국여성변호사회, 예산 부족으로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 일시 중단”(https://www.khan.co.kr/article/202507151741001); 경향신문 기사(2025.10.27.), “성폭력 피해자 법률지원사업 조기 마감…기금 소진에 ‘4분기 실종’”(https://v.daum.net/v/20251027153821565) 등 참조

82) 유사한 문제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도 발생하고 있음. 자세한 내용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생계비 단가 현실화 필요(168p)’ 참조.

8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보호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認可)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시설에서 숙식 등을 제공받을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 구성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계비, 직업훈련비 등의 보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84].

2026년 계획안에는 보호시설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로 총 137억 9,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음. 이 중 사업비는 생계비, 아동교육비, 직업훈련비 및 퇴소시 자립지원금으로 구성됨.

【 2026년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세부산출내역 】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13,798백만원)
- **인건비: 11,148백만원**
  - 399명×39,085천원×50~80% = 11,148백만원
- **운영비: 949백만원**
  - 66개소×20,083~21,921천원×50~70% =949백만원
- **사업비: 1,701백만원**
  - (생계비) 220명×**286.7천원**×12월×70% = 530백만원
  - (아동교육비) 1식×65백만원×70% = 45백만원
  - (직업훈련비) 156명×900천원×50~70% = 90백만원
  - (퇴소시 자립지원금) (성인 220명×5,000천원×70%) + (아동 152명×2,500천원×70%) = 1,036백만원

자료: 성평등가족부

---

③ 보호시설에는 상담원을 두어야 하고, 보호시설의 규모에 따라 생활지도원, 취사원, 관리원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④ 보호시설의 설치·운영의 기준, 보호시설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직종(職種)과 수(數) 및 인가기준(認可基準)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84) **「가정폭력방지법」 제7조의5(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 구성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보호비용을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 구성원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7. 30., 2017. 12. 12.>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아동양육비
4. 직업훈련비

4의2. 퇴소 시 자립지원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보호비용 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그런데, 2026년 예산안의 세부산출내역을 보면, 1인당 생계비 단가는 286,700원으로, 2024년 이후 단가가 동결되어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보장시설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85]과의 격차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 성평등가족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및 보건복지부 수급자 생계급여 비교 】

구 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정부안)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생계비 단가	249,300원	249,300원	286,700원	286,700원	286,700원
보건복지부 보장시설 생계급여 최저수준[1)]	270,429원	303,266원	334,895원	356,568원	426,741원

주 1) 보장시설 생계급여 수급자 1인당 최저보장수준 중 30인 미만 보장시설 기준임.
자료: 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그동안 생계비 부족분을 내역사업 내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로 지급되는 다른 비용(예컨대 자립지원금 등)에서 충당하여 보건복지부의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만큼 수급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함.

그러나 이러한 내내역사업간 빈번한 조정은 국가재정 배분 정보를 왜곡하고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산출근거(각목명세서)를 바탕으로 심사하는 국회 예산심의권을 훼손할 여지가 있음.

특히 2026년도의 경우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생계비 단가 286,700원

85)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2025.8.1. 등 참고

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장수준(426,741원)의 67.2%에 불과하여 현실적으로 내내역사업간 조정만으로 최저수준을 맞추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음.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4항[86]에 따르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선정기준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생계비 단가를 현실화하여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가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라)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 활성화 및 지역별 합리적인 배분 필요

성평등가족부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응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들이 보호시설에서 원칙적으로 4개월 이상 입소 후 퇴소하면서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1인당 500만원(동반아동 1인당 250만원)의 자립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음.

---

8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①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4. 12. 30.>
③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30.>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그 선정기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32조(보장시설)** 이 법에서 "보장시설"이란 제7조에 규정된 급여를 실시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2026년 예산안에는 2025년과 동일하게 성인 220명, 아동 152명을 기준으로 총 10억 3,600만원이 계상[87]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3년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지원 인원은 성인 기준 200명이 넘지 않는 수준이고, 지자체의 실집행률도 70%~80%대에 머무르고 있음.

【 최근 3년간 가정폭력피해자 퇴소시 자립지원금 지원 현황 】

(단위: 명, 백만원)

연도	지원인원	교부액[1]	집행액	집행률
2022년	156	1,045	778	74.4%
2023년	179	1,245	893	71.7%
2024년	266 (성인: 183, 동반아동[2] 83)	1,347.5	1,122	83.3%

주 1) 계획현액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실제 교부된 금액 기준임.
2) 동반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금은 2024년부터 지급됨.
자료: 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는 퇴소자의 입소기간이 4개월보다 짧거나 퇴소 후 가정으로 복귀하는 등 지원자격이 미달하는 경우가 많아 집행이 저조한 측면이 있는데, 2025년에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퇴소 후 일정 기간 이내 재입소하여 총 보호기간이 4개월 이상인 경우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연도말 신청·선정으로 예산이 소진된 경우 등에는 다음 해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도를 개선하였다고 함.

87) 퇴소시 자립지원금: 1,036백만원= (성인 220명×5,000천원×70%) + (아동 152명×2,500천원×70%)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라는 특성상 피해자가 원래의 거주지로 돌아갈 경우 다시 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큼. 즉, 피해자의 자립이 중요하므로, 성평등가족부는 실적이 부진한 이유를 면밀히 파악하고 제도 안내 강화 등을 통해 자립지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일부 지자체는 자립지원금 예산을 100% 사용한 반면[88] 다른 지자체는 집행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지자체별로 집행률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전년도 집행실적, 보호시설 및 평균 입·퇴소인원 수 등 지역별 예산수요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집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89].

88) 2024년도 여성가족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의 경우 10월 말에 예산이 모두 소진되었다는 점 등이 지적된 바 있음.
89) 성평등가족부는 현재도 연초에 전년도 집행률 및 시도별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각 지자체 배분 후 연도 중 집행률 점검 후 변경내시를 통해 시도간 과부족액 조정하고 있다는 입장임.

【 2023~2024년 지자체별 예산집행현황 】

(단위 : 백만원, 국비기준)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시도명	교부액(A)	집행액(B)	집행률 (A/B)	교부액(A)	집행액(B)	집행률 (A/B)
합계	1,245	893	71.7%	1,347.5	1,122	83.3%
서울	280	195	69.6%	325	312.5	96.2%
부산	85	40	47.1%	67.5	27.5	40.7%
대구	40	30	75.0%	37.5	32.5	86.7%
인천	25	25	100.0%	30	30	100.0%
광주	100	75	75.0%	102.5	97.5	95.1%
대전	30	30	100.0%	32.5	30	92.3%
울산	20	5	25.0%	20	20	100.0%
경기	125	105	84.0%	150	150	100.0%
강원	75	50	66.7%	80	45	56.3%
충북	55	40	72.7%	62.5	39	62.0%
충남	80	45	56.3%	87.5	55	62.9%
전북	35	25	71.4%	37.5	27.5	73.3%
전남	60	40	66.7%	60	32.5	54.2%
경북	45	40	88.9%	37.5	10	26.7%
경남	140	118	84.3%	157.5	153	97%
제주	50	30	60.0%	60	60	100.0%

자료: 성평등가족부

라.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 성폭력 피해자 지원(1136-303)

○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은 기금운용 · 관리주체(법무부)와 사업주체(성평등가족부)가 이원화됨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예·결산 심사권 제약, 기금 및 사업의 운용이나 관리 · 감독 과정에서의 효율성 및 책임성 저해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성평등가족부가 운용 · 관리하는 일반회계나 양성평등기금으로 이관하는 방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내역사업인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등 지원 사업 중 치료회복프로그램 비용과 의료비가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이유로 2024년 예산이 감액된 후 삭감된 수준으로 계속 편성되고 있는데, 2023년 수준으로 회복하여 성폭력 피해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인당 생계비 단가가 288,190원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보장시설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426,741원)의 67.5%에 불과하므로 생계비 단가를 현실화하여 성폭력 피해자 보호가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법률, 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에는 성폭력 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지원,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등 지원,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지원 등 4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2026년도 계획안은 2025년(394억 1,300만원) 대비 9억 8,100만원

(2.5%)이 증액된 403억 9,4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6년도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계획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A)	2026년 계획(B)	증감	
	계획액	집행액 (실집행액)			B-A	%
◦ 성폭력 피해자 지원	37,354	37,313 (35,914)	39,413	40,394	981	2.5
· 성폭력 피해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14,181	14,170 (13,742)	14,980	16,060	1,080	7.2
·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19,465	19,465 (18,755)	20,035	20,622	587	2.9
·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등 서비스 지원	3,536	3,536 (3,275)	3,540	3,540	-	-
·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172	142	172	172	-	-
·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	-	-	686	-	△686	순감

자료: 성평등가족부

나)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중 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성평등가족부로 이관 필요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편성됨에 따라 기금운용·관리는 법무부가, 사업수행은 성평등가족부가 추진하는 이원화된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은 1994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되면서 관련 예산이 처음 편성되었고, 2001년 여성부가 신설되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해당 업무를 이관받아 일반회계에서 관련 사업을 수행하였음.

이후 2004년 「복권 및 복권기금법」[90]에 따라 복권기금이 설립되면서 2004년부터 2010년까지는 여성발전기금에서 복권기금전입금으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 사업(2004년 기준 가정·성폭력 피해자 보호프로그램 운영 사업) 등의 이름으로 사업이 편성·수행되어 옴[91].

2011년부터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이 시행되면서 관련 사업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편입됨.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성평등가족부 소관의 일반회계나 기금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 운용·관리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편성됨에 따라 아래와 같은 문제점들이 계속 지적되고 있음.

먼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결산 심사권이 제한되거나 침해되는 측면이 있음.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는 「국회법」 제84조의2[92]에 근거하여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의 예산안 및 결산을 예비심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운용·관리하는 법무

---

90) **「복권 및 복권기금법(**법률 제7159호, 2004. 1.29., 제정, 2004. 4.1. 시행)」
제23조 (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및 경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다만, 제5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복권기금은 그 비율을 100분의 5 이내의 범위로 한다.
3. 저소득층·장애인 및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여성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부칙 <법률 제7159호, 2004. 1. 29.> 제2조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특례) 정부는 복권기금이 설치된 때에는 지체없이 2004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안 및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기금의 운용계획변경안(이하 이 조에서 "복권기금운영계획등"이라 한다)을 해당 기금운용심의회(복권기금운영계획안의 경우에는 복권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의결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권기금운용계획등이 심의·확정된 것으로 본다.

91) 자료: 「2004년도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정부, 2004;
「(2005년도~2010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2004~2009.

92) **「국회법」 제84조의2(기금운용계획안의 회부 등)** ③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경우(제84조제1항에 따라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와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다를 때에는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는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기금사업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일 전날까지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른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는 기금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부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일 전날까지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의 경우 사업의 계획안 규모, 사업 내용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가 차년도 계획안 등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기금 및 사업의 운용이나 관리·감독 과정에서 효율성 및 책임성이 저해될 가능성도 큼. 사업을 수행하는 성평등가족부에서 정책 현장의 요구를 사업 계획안에 능동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임.

실제로 동 사업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회복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예산액이 2024년부터 보조금 부정수급을 이유로 당초 9억 4,700만원에서 4억 7,400만원으로 50% 감액 편성됨. 이에 관련 시설들이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93]이 있어 여성가족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의 2025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피해자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2023년 수준으로 지원을 회복할 필요성이 제기[94]되었으나 반영되지 못하였고 이번 2026년도 계획안에도 감액된 예산 규모 그대로 편성되었음.

---

93) 허민숙 입법조사관(보건복지여성팀), “감춰진 피해자들: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 특별지원 보호시설 지원업무 실태 및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4.7.18. 참조.

94) 법죄피해자보호기금의 운용관리주체는 법무부이므로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증액심사를 하지 못 하고 법제사법위원회 의결(2024.11.8.)이 여성가족위원회의 의결(2024.11.21.)보다 빨라 「국회법」상 의견제시 절차도 할 수 없어 부대의견 방식으로 채택함[여성가족위원회, “2025년도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여성가족부), 2024.11, 8쪽].

*부대의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편성되어 있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중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회복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지출계획안이 2024년부터 보조금 부정수급을 이유로 50% 감액 편성되고 있는데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2023년 수준으로 지원을 회복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마련한다.”

기금운용주체와 사업부처의 이원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지속적으로 회계 이관 등을 통하여 예산 편성 구조를 개편하라는 요구를 하였고[95], 제20대~제21대 국회에서 관련 내용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96]되었음.

성평등가족부는 법무부 및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회계 이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나,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운용상의 문제와 더불어 현재 성평등가족부 일반회계나 양성평등기금은 세수 및 재원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이관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함.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납입이 의무화된 벌금 전입금[97]의 증가 등으

---

95) 여성가족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는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41억 6,800만원 증액 의견을 제시하면서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사업비 중 68%에 달하는 437억원이 여성가족부의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에 집행되는데, 동 기금은 법무부 소관 기금이어서 우리 위원회는 의견 제시만 가능할 뿐인 한계가 있으므로 예산 편성 구조를 개선할 것"이란 부대의견을 함께 채택[여성가족위원회, "2013년도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여성발전기금, 청소년육성기금)", 2012.11. 180~183쪽 참조]하였고, 최근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도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을 여성가족부가 운용·관리하는 일반회계로 이관하여 편성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요구[여성가족위원회, "2023회계연도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보고서(여성가족부 소관), 2024.9. 327쪽]를 한 바 있음.

96) 제20대국회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에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삭제하여 여성가족부 및 보건복지부의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을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유승희의원안(의안번호 제2006823호)과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지출을 각 해당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박주민의원안(의안번호 제2018132호)이, 제21대국회에서는 기금의 용도를 법에 명시하면서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및 아동보호 관련 기관 및 시설의 설치·운영'을 배제하는 박홍근의원안(의안번호 제2104968호)이 각각 발의되었으나 모두 임기만료폐기됨.

97) 기금에 납입되는 벌금 수납액 비율이 2010년 4%에서 2020년 8%까지 점차 높아져 왔음.
- (2010) 4% → (2012) 5% → (2014) 6% → (2020) 8%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에 따른 벌금 수납액
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대위하여 취득한 구상금
3.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4. 기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금

② 정부는 「형사소송법」 제477조제1항에 따라 집행된 벌금에 100분의 6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제2조(기금의 조성) ①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이란 100분의 8을 말한다.

로 재원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확보되고 있는 반면, 양성평등기금은 재원의 90% 이상이 복권기금전입금으로 재원이 한정적임.

【 2026년도 양성평등기금 수입계획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액	2026년 계획안 (비중)	증감	
기타재산이자수입 (54-546)	3,855	1,128	2,056 (0.2%)	928	82.3
기타경상이전수입 (59-596)	46,813	17,647	29,366 (3.4%)	11,719	66.4
융자원금회수-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75-754)	-	1	1 (0.0%)		
정부예금회수- 한국은행예치금회수(85-851) 및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85-853)	51,463	45,320	38,095 (4.4%)	△7,225	△15.9
전입금-기금전입금 (91-913)	737,764	776,926	805,290 (92.1%)	28,364	3.7
계	**839,895**	**841,022**	**874,808 (100%)**	**33,786**	**4.0**

자료: 성평등가족부 예산자료(2-1)를 토대로 재구성

또한, 성폭력 피해자도 범죄피해자로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종합적 관리를 하려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설립 취지[98]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고,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이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내에서 개별 지출사업으로는 가장 큰 비중(27.3%)을 차지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회계 이관을 어렵게 하는 요소임.

98)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026년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지출계획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액	2026년 계획안 (비중)	증감	
◦ 1135 강력범죄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	35,420	40,005	48,281 (35.1%)	8,276	20.7
-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1135-300)	20,518	21,442	27,823 (21.5%)	6,381	29.8
-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회복 지원(1135-301)	3,424	3,450	3,277 (2.2%)	△173	△5.0
- 범죄피해구조금 (1135-302)	8,046	9,573	11,781 (7.8%)	2,208	23.1
-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1135-306)	3,431	5,540	5,400 (3.7%)	△140	△2.5
◦ 1136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50,297	54,540	54,192 (36.6%)	△348	△0.6
-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1136-300)	1,650	1,632	1,653 (1.2%)	21	1.3
- 성폭력 피해자 지원 (1136-303)	37,313	39,413	40,394 (27.3%)	981	2.5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1135-305)	11,334	13,495	12,145 (8.1%)	△1,350	△10.0
◦ 7110 기금운영비	48	48	60 (0.0%)	12	25.0
◦ 9110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	2,500	2,230	-	△2,230	순감
◦ 9220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	41	15	-	△15	순감
◦ 9710 여유자금 운용	54,106	48,039	42,609 (28.3%)	△5,430	△11.3
계	142,412	144,877	145,142 (100%)	265	0.2

자료: 법무부 예산자료(2-1)를 토대로 재구성

그러나 예산·기금의 편성 주체와 집행 주체를 일치시켜 소관부처의 운용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결산 심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국가재정법」상 예산 소관

주의 원칙[99]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방향임.

특히 2025년 10월 1일 성평등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되었는바, 이에 걸맞게 책임과 예산[100]이 배분될 필요가 있음.

과거에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편성되던 다른 부처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해당 부처의 회계로 이관한 사례가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편성하던 사업 중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현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2159-432)은 2014년부터 성평등가족부가 운용·관리하는 양성평등기금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사업은 2022년부터 보건복지부 소관 일반회계에 각각 이관·편성되고 있음.

따라서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의 예·결산 심사권 회복, 기금의 운용·관리상 효율성 확보, 성평등가족부의 위상 강화 및 집행 책임성 제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 법무부가 관리·운용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은 성평등가족부의 일반회계나 양성평등기금으로 이관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99) **「국가재정법」 제21조(세입세출예산의 구분)** ①세입세출예산은 필요한 때에는 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 세입세출예산은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소관별로 구분한 후 소관 내에서 일반회계·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③ 세입예산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성질별로 관·항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기능별·성질별 또는 기관별로 장·관·항으로 구분한다.
④ 예산의 구체적인 분류기준 및 세항과 각 경비의 성질에 따른 목의 구분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100) 2026년도 성평등가족부 총 지출규모는 1조 9,996억원으로 정부 총 지출(728.0조원)의 0.27%수준임.

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료회복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2023년 수준으로 증액 필요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등 지원 사업은 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하여 의료비, 간병비, 치료회복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도와 동일한 35억 4,000만원이 계상됨.

【 2026년도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등 지원 사업 세부산출내역 】

□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등 지원(3,540백만원)
- 의료비·간병비 지원: 2,134백만원
  - (의료비) 170천원×19천명×50~70% = 2,108백만원
  - (간병비) 2,502천원×16명×50~70% = 26백만원
-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지원: 474백만원
  - (치료회복프로그램) 984명×718천원×50~70% = 474백만원
- 피해자 치료동행 서비스, 기타 부대비용 등 지원: 932백만원
  - (치료동행 서비스) 49백만원×24개소×50~70% = 778백만원
  - (부대비용) 6백만원×41개소×50~70% = 154백만원

자료: 성평등가족부

그런데 해당 사업 중 치료회복프로그램 비용과 의료비 지원액이 보조금 부정수급[101], 지출구조조정 등의 이유로 2024년 예산이 감액된 후 삭감된 수준으로 계속 편성되고 있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101) 치료회복프로그램운영 지원 사업은 2022년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 1건이 발생하여 사업비 50% 감축 구조조정 되었음. 성평등가족부는 해당 시설에 대하여 보조금 환수 및 사업수행 배제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고 사건 적발 이후 지자체 자체 사업 점검 및 관계기관 합동 운영실태 현장 점검 시 지원프로그램 집행 실적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등 보조금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운영 중이라는 입장임.

이 축소된 측면이 있으므로 2023년 수준으로 회복할 필요가 있음.

먼저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은 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별 심리상담, 집단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심신회복캠프, 문화체험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9억 4,7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024년부터는 절반 수준인 4억 7,400만원으로 편성되고 있음.

의료비 지원 사업은 성폭력 피해자(스토킹·교제폭력도 포함) 및 가족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22억 5,8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024년부터는 1억 5,000만원이 감액된 21억 8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는 매년 3만 건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 중 과반수 이상이 강간·강제추행 등 강력범죄로서 응급치료와 더불어 피해 관련 트라우마 등 후유증에 대한 장기적인 치료·관리가 필요함.

【 성폭력 사건 발생 현황 】

(단위: 건)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총 계	32,080	40,515	37,752	35,059
강간·강제추행	20,267 (63.2%)	22,484 (55.5%)	22,381 (59.3%)	21,199 (60.5%)
카메라 등 통신매체 이용 촬영·음란 등	11,279 (35.2%)	17,428 (43.0%)	15,371 (40.7%)	13,860 (39.5%)

자료: 경찰청

예산 감액으로 성폭력 피해로 손상된 심신·정서 회복을 지원하여 정상적인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한 지원서비스가 축소될 경우 성폭력 피해자들은 정신건강 문제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처할 우려가 높음.

실제로 의료비의 경우 2024년에 지원인원 수가 10% 정도 감소하였고, 치료회복프로그램의 경우 공모 과정을 통해 예산이 지원되는 구조로서 각 시설들이 지원인원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노력하여 2024년에 지원인원 수가 크게 줄지는 않았으나, 1인당 평균 지원액이 44만원(947백만원/2,124명)에서 24만원(474백만원/1,943명) 수준으로 대폭 감소하여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되는 실정임.

【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및 치료회복프로그램 지원인원 수 】

(단위: 명)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의료비	12,817	12,794	12,339	11,207
치료회복프로그램	2,029	1,802	2,124	1,943

자료: 성평등가족부

관련 시설들이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102]도 계속 제기되었고,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의 2025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지원비를 2023년 수준으로 회복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부대의견[103]을 채택한 바 있음.

결론적으로, 성폭력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료·회복을 위한 의료비 및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비용을 2023년 수준으로 증액하여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피해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라)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생계비 단가 현실화 필요[104]

성폭력 보호시설에 입소한 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구성원은 「성폭력방지법」 제14조[105]에 따라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등의 보호비용을

---

102) 허민숙 입법조사관(보건복지여성팀), “감춰진 피해자들: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 특별지원 보호시설 지원업무 실태 및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4.7.18. 참조; 뉴시스 기사(2024.9.23.) “친족성폭력 미성년 피해자 회복 예산 제자리…절반 깎이고 복구 안돼”(https://v.daum.net/v/20240923103335407); 경량신문 기사(2024.8.10.), “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삭감 후 8개월…타격 입은 성폭력 상담소”(https://www.khan.co.kr/article/202408100800021) 등 참조.

103)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운용관리주체는 법무부이므로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증액심사를 하지 못 하고 법제사법위원회 의결(2024.11.8.)이 여성가족위원회의 의결(2024.11.21.)보다 빨라 「국회법」상 의견제시 절차도 할 수 없어 부대의견 방식으로 채택함[여성가족위원회, “2025년도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여성가족부), 2024.11, 8쪽].

*부대의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편성되어 있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중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회복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지출계획안이 2024년부터 보조금 부정수급을 이유로 50% 감액 편성되고 있는데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2023년 수준으로 지원을 회복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마련한다.”

104) 유사한 문제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도 발생하고 있음. 자세한 내용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생계비 단가 현실화 필요(150p)’ 참조.

105) **「성폭력방지법」 제14조(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보호비용을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음. 2026년 계획안에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사업비로 10억 2,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음.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세부산출내역 】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7,406백만원)**

- 보호시설 인건비, 운영비 지원: 6,288백만원
  - (인건비) 184~295백만원×35개소×50~70% = 5,674백만원
  - (운영비) 16~39백만원×35개소×50~70% = 614백만원
- **보호시설 사업비 지원: 1,029백만원**
  - **생계비** 및 퇴소자립지원금, 직업훈련비 등: 1,029백만원
- 보호시설 기능보강 개보수, 증개축비, 기자재비 등 89백만원
  - 5,100천원×35개소×50% = 89백만원

자료: 성평등가족부

그런데 2026년 계획안의 1인당 생계비 단가는 288,190원[106]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보장시설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107]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아동양육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106)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지출각목명세서 참조.

내역	산출근거	원화
다.보호시설 사업비(35개소)		1,029,000
1) 입소자 생계비 및 퇴소자립지원금 지원		463,140
가) 생계비	288,190원*35명*12월*100%=	121,040

107)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2025.8.1. 등 참고

【 성평등가족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및 보건복지부 수급자 생계급여 비교 】

구 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정부안)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268,052원	287,225원	287,225원	288,190원	288,190원
보건복지부 보장시설 생계급여 최저수준[1)]	270,429원	303,266원	334,895원	356,568원	426,741원

주 1) 보장시설 생계급여 수급자 1인당 최저보장수준 중 30인 미만 보장시설 기준임.
자료: 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생계비는 보호시설 사업비에 포함되는 항목으로서 생계비 부족분은 다른 사업비(내내역사업)에서 충당하여 보건복지부의 생계급여 최저수준만큼 수급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함.

그러나 지속적으로 각목명세서에 적시된 내용과 다르게 예산을 조정·집행하는 것은 국가재정 배분 정보를 왜곡하고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심사하는 국회 예산심의권을 훼손할 여지가 있음.

특히 2026년도의 경우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생계비 단가 288,190원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장수준(426,741원)의 67.5%에 불과하여 현실적으로 사업간 조정만으로 최저수준을 맞추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음.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4

항108)에 따르면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선정기준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생계비 단가를 현실화하여 성폭력 피해자 보호가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10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①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4. 12. 30.>
③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30.>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그 선정기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32조(보장시설) 이 법에서 "보장시설"이란 제7조에 규정된 급여를 실시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5. 청소년정책관

가. 총괄

1) 개요

2026년도 청소년정책관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와 청소년육성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액은 2,682억 7,800만원으로 전년(2,455억 2,800만원) 대비 227억 5,000만원(9.3%)이 증가하였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079억 8,700만원으로, 전년(950억 1,200만원) 대비 129억 7,500만원(13.7%)이 증가하였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363억 1,900만원으로 신규 편성되었으며,

청소년육성기금 지출계획안은 1,239억 7,200만원으로, 전년(1,505억 1,600만원) 대비 265억 4,400만원(△17.6%)이 감소하였음.

【 2026년도 청소년정책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표 】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
계	245,528	245,528	268,278	22,750	9.3
일반회계	95,012	95,012	107,987	12,975	13.7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	36,319	36,319	순증
청소년육성기금	150,516	150,516	123,972	△26,544	△17.6

주: 기금의 경우 계획은 예산, 당초계획은 본예산, 수정계획은 추경을 의미
자료: 성평등가족부

2026년도 청소년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사업은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구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피해예방,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 등 9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은 청소년방과후활동 지원, 청소년 지도사 배치지원 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소년육성기금 사업은 청소년 사회안전망구축,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등 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6년도 청소년정책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명세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
계	245,528	245,528	268,278	22,750	9.3
【일반회계】	95,012	95,012	107,987	12,975	13.7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구축	2,427	2,427	4,171	1,744	71.9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16,425	16,425	16,575	150	0.9
청소년유해환경개선 및 피해예방	8,328	8,328	8,988	660	7.9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	5,706	5,706	8,873	3,167	55.5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	12,727	12,727	11,667	△1,060	△8.3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운영지원	39,459	39,459	44,420	4,961	12.6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운영지원	9,354	9,354	12,918	3,564	38.1
청소년정책관기본경비(총액대상)	275	275	87	△188	△68.4
청소년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311	311	288	△23	△7.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	36,319	36,319	순증
청소년방과후활동 지원	-	-	32,474	32,474	순증
청소년 지도사 배치지원	-	-	3,845	3,845	순증
【청소년육성기금】	150,516	150,516	123,972	△26,544	△17.6
청소년방과후활동 지원	30,387	30,387	-	△30,387	순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	4,189	4,189	1,017	△3,172	△75.7
청소년 사회안전망구축	71,820	71,820	73,859	2,039	2.8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33,079	33,079	36,355	3,276	9.9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	11,041	11,041	12,741	1,700	15.4

주: 기금의 경우 계획은 예산, 당초계획은 본예산, 수정계획은 추경을 의미

자료: 성평등가족부

2) 주요 증·감액사업 현황

2026년도 청소년정책관 소관 사업 중 예산이 전년 대비 감액된 사업은 일반회계 3개, 청소년육성기금 2개 사업임.

이 중 일반회계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사업은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 추진일정 등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10억 6,000만원(△8.3%)이 감액된 116억 6,700만원이 편성되었음.

청소년육성기금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사업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 등의 사유로 전년 대비 31억 7,200만원(△75.7%)이 감액된 10억 1,700만원이 편성되었고, ‘청소년방과후활동 지원’ 사업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세부사업이 이관되었음.

【 2026년도 청소년정책관 주요 감액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B)	증감		감액사유
	본예산	추경(A)		B-A	%	
【일반회계】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	12,727	12,727	11,667	△1,060	△8.3	수련원 건립 추진 일정 등 고려
청소년정책관기본경비(총액대상)	275	275	87	△188	△68.4	기본경비 절감 등
청소년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311	311	288	△23	△7.4	기본경비 절감 등
【청소년육성기금】						
청소년방과후활동 지원	30,387	30,387	-	△30,387	순감	세부사업 이관(청육기금→지특회계)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	4,189	4,189	1,017	△3,172	△75.7	내역사업 이관(청육기금→지특회계)

주: 기금의 경우 계획은 예산, 당초계획은 본예산, 수정계획은 추경을 의미
자료: 성평등가족부

한편, 2026년도 청소년정책관 소관 사업 중 예산이 전년 대비 증액된 주요 사업으로, 일반회계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구축’ 사업은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청소년 그룹활동 지원 예산 반영, 법정 실태조사 등의 사유로 17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청소년육성기금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은 노후시설 개보수 예산 반영 등의 사유로 17억원이 증액되었음.

【 2026년도 청소년정책관 주요 증액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B)	증감		증액사유
	본예산	추경(A)		B-A	%	
【일반회계】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구축	2,427	2,427	4,171	1,744	71.9	법정 실태조사비,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청소년 그룹활동 지원 예산 반영 등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16,425	16,425	16,575	150	0.9	사업안내 강화를 위한 홍보비 증액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피해예방	8,328	8,328	8,988	660	7.9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시설보수비, 급식비 단가 인상 예산 반영 등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	5,706	5,706	8,873	3,167	55.5	건립사업 추진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공사비,감리비,시설부대비 반영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운영지원	39,459	39,459	44,420	4,961	12.6	청소년지도사 현장실습, 청소년 글로벌 역량 강화 예산 반영 등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운영지원	9,354	9,354	12,918	3,564	38.1	회계이관,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시스템 재구축 등
【청소년육성기금】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	71,820	71,820	73,859	2,039	2.8	고위기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전담인력 확대, 위기청소년 긴급전화 1388 ISMP, 학교밖청소년 급식지원 강화,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확대 등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33,079	33,079	36,355	3,276	9.9	시설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확대, 가정 밖 청소년 성장일터사업, 가정 밖 청소년 급식지원 강화 등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	11,041	11,041	12,741	1,700	15.4	노후시설 개보수비, 급식비 단가 인상 예산 반영 등

나. 일반회계

1)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구축(2231-311)

○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지원은 2014년~2024년 동안 운영된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의 운영 현황에 관한 자료가 없고, 참여 청소년 역량강화, 운영 매뉴얼 보급, 우수사례 발굴·확산·홍보 등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중앙 차원의 지원이 미흡함. 따라서 성평등가족부는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파악·관리, 참여 청소년과 담당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네트워크 형성 등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이 활성화·내실화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많은 청소년의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하여 청소년 위원의 활동기간도 2년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구축은 ① 청소년정책연구개발 및 실태조사, ②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운영 등, ③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구축 운영비 등, ④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⑤ 청소년의 달 행사, ⑥ 청소년활동디지털 플랫폼 구축 ISP, ⑦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⑧ 청소년 그룹활동 지원 등 8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24억 2,700만원) 대비 17억 4,400만원(71.8%)이 증액된 41억 7,1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6년도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구축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 (B)	증감	
	예산액	집행액 (실집행액)			B-A	%
◦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구축	2,002	1,869 (1,867)	2,427	4,171	1,744	71.9
·청소년정책연구개발 및 실태조사	583	540	544	850	306	56.3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운영 등	639	607	654	654	-	-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구축 운영비 등	8	6	8	6	△2	△25.0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321	285	321	825	504	157.0
·청소년의 달 행사	300	300 (298)	350	465	115	32.9
·청소년활동디지털 플랫폼 구축 ISP	151	131	-	-	-	-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	-	550	671	121	22.0
·청소년 그룹활동 지원	-	-	-	700	700	순증

자료: 성평등가족부

나)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내실화 필요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사업 중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지원 사업은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109]에 따라 청소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109)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협의·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협의회 등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책 수립 및 시행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의 권익 증진과 민주시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임.

2023년까지는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2024년과 2025년에는 '국민 직접지원 미해당' 등의 이유로 국비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음.

2026년도 예산안에는 청소년 활동 및 참여 지원 강화를 위하여 4억 2,4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6년도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
◦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사업**	321	825	504	157.0
· 청소년특별회의 구성·운영 등	321	401	80	24.8
·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지원	-	424	424	순증

자료: 성평등가족부

【 2026년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지원 사업 예산안 산출내역 】

계	예산안 세부 산출내역
424백만원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가. 17개 시·도 × 10백만원 × 지자체보조 50% = 85백만원 나. 226개 시·군·구 × 3백만원 × 지자체보조 50% = 339백만원

자료: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참여위원회는 2025년 10월 현재 전국적으로 225개의 위원회가 운영 중임. 국비가 지원되었던 2023년에는 241개가 운영되었으나, 국비 예산이 전액 삭감된 2024년부터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연도별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현황 】

(단위: 개)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10월
197	204	216	221	230	239	240	240	241	241	224	225

시·도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시·군·구 청소년참여위원회는 각 지역의 청소년이 스스로 정책을 제안하고, 지역 예산과 정책의 추진과정을 모니터링하며, 토론회·캠페인·설문조사 등을 통해 청소년 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 내용 】

- 청소년정책 제안 및 추진현황 점검
- 정부 및 지자체 청소년정책 모니터링, 자문, 평가
- 청소년정책 모니터링단 운영 및 역량강화 교육
- 지역 청소년참여위원회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성과공유회 개최

자료: 성평등가족부

한편, 중앙정부 차원의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기능은 청소년특별회의

가 수행하고 있음.

【 청소년특별회의와 청소년참여위원회 비교 】

구분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주체	성평등가족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위탁 운영기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시·도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시·군·구	위탁운영기관(위탁 운영시)
법적근거	「청소년 기본법」 제12조 (청소년특별회의의 개최)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추진경과	2004년 시범운영, 2005년 제1회 시행	1998년 문화관광부 '청소년위원회' 설치 후 전국 확산	
운영현황	1개, 청소년위원 100여명	225개, 청소년위원 3,200여명	
주요기능	청소년 및 청소년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여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제안하는 전국 단위의 회의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참여기구	
2026년 예산안	401백만원(국비 100%)	424백만원(국비 50%, 지방비 별도)	

자료: 성평등가족부

동 사업은 청소년 정책의 수요자인 청소년이 지역사회의 정책 의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 형성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으며, 국비 지원이 없었던 2024년 및 2025년에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운영이 감소되었는바, 지역간 청소년 참여기회의 형평성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시 국비를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방향으로 보임.

한편,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110]는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위원은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위원 수, 위원의 임기 등 구체적 기준은 규정하지 않고 있음.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청소년 위원은 공개모집과 교육(지원)청, 학교, 청소년단체·시설 등 추천, 청소년 직접선거 등[111]을 통해 구성하고 있으며, 청소년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최대 3회까지 활동 가능함.

각 위원회의 위원은 10~30명 내외의 청소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 10월 현재 약 3,200명의 청소년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음.

그런데,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참여위원회의 모집 및 구성에 대해 다문화, 북한이탈, 근로, 장애, 학교 밖 청소년 등 소수 청소년을 일정 비율(10% 내외) 구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시·군·구)에서 유관기관에 홍보 및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고, 참여 청소년의 정책 이해 및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참여활동 기본교육, 참여활동 자문단 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

110)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② 참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참여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③ 참여위원회는 효율적인 정책 제안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참여위원회는 청소년 관련 정책에 관한 의견 제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토론회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참여위원회가 청소년 관련 정책의 전문적·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111) 2025년 청소년사업 안내(1)(100p.)

2014년~2024년 동안 운영된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의 운영 현황에 관한 자료가 없고, 참여 청소년 역량강화, 운영 매뉴얼 보급, 우수사례 발굴·확산·홍보 등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중앙 차원의 지원은 미흡함.

따라서 성평등가족부는 참여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한 파악·관리, 참여 청소년과 담당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네트워크 형성 등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이 활성화·내실화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청소년 위원은 총 3년간(임기 1년, 3회 활동 가능)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보다 많은 청소년의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하여 활동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2)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피해예방(2233-332)

○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사업 관련, 최근 청소년의 인터넷 · 스마트폰 과의존률이 상당하고, 미디어 과의존 연령이 저연령화되고 있는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배치된 미디어 과의존 전담상담사는 54명(전체 센터 240개 중 38개 센터에 배치)에 불과하므로 미 배치 센터에 과의존 전담상담사 배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 청소년 치유 · 회복 지원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청소년 유해환경개선 및 피해예방은 ①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운영, ②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③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 운영, ④ 유해매체물 심의 및 매체 자율정화 ⑤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등 5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83억 2,800만원) 대비 6억 6,000만원(7.9%)이 증액된 89억 8,8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6년도 청소년 유해환경개선 및 피해예방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A)	2026년 예산안 (B)	증감	
	예산액	집행액 (실집행액)			B-A	%
◦ 청소년 유해환경개선 및 피해예방	7,953	7,432 (7,325)	8,328	8,988	660	7.9
·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운영	2,749	2,696	3,056	3,571	515	16.8
· 디지털미디어 피해청소년 회복 지원	2,645	2,467 (2,377)	2,683	2,822	139	5.2
·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 운영	2,047	1,779	2,077	2,139	62	3.0
· 유해매체물 심의 및 매체 자율정화 등	106	98	106	79	△27	△25.5
·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406	392 (375)	406	377	△29	7.1

자료: 성평등가족부

나) 디지털미디어 피해청소년 회복 지원 사업 확대 필요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사업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디지털미디어 과의존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임.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전담상담사를 배치하여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을 총괄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료협력병원, 치유캠프 및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과의 연계를 통한 상담·치료 지원 및 청소년 상담전문가의 사후관리 등의 지원

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함.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26억 8,300만원) 대비 1억 3,900만원(5.2%)이 증액된 28억 2,2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6년도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사업 예산안 산출내역 】

계	예산안 세부 산출내역
2,822백만원	▪ **민간위탁사업비(320-02)** **가. 발굴진단 시스템 운영: 132백만원** ・ 시스템 유지보수비 = 12개월 × 5.92백만원 = 71백만원 ・ 전산전담인력 배치 = 5.08백만원 × 12개월 = 61백만원 **나. 지역별 피해 청소년 치유·회복 지원: 1,622백만원** 나-1) 피해 청소년 집중치유프로그램 운영: 598백만원 ・ 미디어치유캠프 운영 = (치유캠프 6회×50백만원) + (연계캠프 11회×15.1백만원) = 466백만원 ・ 가족치유캠프 운영 = 10회×13.2백만원 = 132백만원 나-2) 지역별 개인·집단상담·병원치료 연계 등 지원: 954백만원 ・ 연계망 운영지원 = (운영지원비 25백만원) + (운영지원 인건비 129백만원)= 154백만원 ・ 지역사업 운영비 = 17개 시·도×47,059천원=800백만원 나-3) 전문성 강화·교육지원 : 70백만원 ・ 전문가 양성 교육 지원 47백만원 = 1,400명×33.5천원 ・ 신규콘텐츠 연구개발비 23백만원 = 1회×23백만원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가. 피해 청소년 지원 전담상담사 배치(54명): 1,068백만원** ・ 전담상담사 배치 인건비 = 54명×3,296천원×12개월×지자체보조 50%

자료: 성평등가족부

최근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이 청소년의 일상으로 깊숙이 들어오면서 미디어 이용 행태가 급격히 변화하였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율은 2022년 37.6%에서 2024년 43.8%로 급증하였으며, 전체 청소년의 과의존율 또한 4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남.[112)]

또한, 2025년에 전국 초·중·고등학생 1,234,5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미디어 이용 습관 진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17.3%(213,243명)가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분류되었음.

【 청소년 미디어 이용 습관 진단 조사 결과 】

(단위: 명)

구분	조사 인원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초4	중1	고1	합계
2021년	1,272,981	67,280	85,731	75,880	228,891
2022년	1,273,020	71,262	86,342	78,083	235,687
2023년	1,276,789	65,127	90,730	74,777	230,634
2024년	1,249,317	58,081	89,812	73,136	221,029
2025년	1,234,587	57,229	85,487	70,527	213,243

자료: 성평등가족부

이와 같은 미디어 과의존은 단순한 생활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학업 중단·우울증·가정 갈등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종합적 관리 체계가 요구되고 있음.

한편, 2026년도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사업의 예산안 산출내역을 보면, 피해 청소년 지원 전담상담사 배치 지원 예산안은 2025년(10억 3,200만원) 대비 3,600만원(3.5%)이 증액된 10억 6,800만원이 편성되었음. 이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배치된 전담상담사 54

112) 2024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명에 대한 인건비임.

【 2026년도 피해 청소년 지원 전담상담사 배치 예산안 산출내역 】

2025년 예산 세부산출내역	2026년 예산안 세부 산출내역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가. 피해 청소년 지원 전담상담사 배치(54명): 1,032백만원 · 전담상담사 배치 인건비 = **54명**×3,185천원 ×12개월×지자체보조 50%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가. 피해 청소년 지원 전담상담사 배치(54명): 1,068백만원 · 전담상담사 배치 인건비 = **54명**×3,296천원 ×12개월×지자체보조 50%

자료: 성평등가족부

전담상담사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미디어 과의존과 관련한 상담, 심리검사, 치유캠프 운영, 보호자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데, 미디어 과의존 전담상담사 배치현황을 보면, 전국의 17개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0개 중 38개 센터에만 미디어 과의존 전담상담사(54명)가 배치되어 있음.

【 미디어 과의존 대응 전담상담사 배치 현황(2025년 기준) 】

(단위 : 명)

구분	소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도	33	2	2	2	2	2	2	2	1	3	2	2	2	2	1	2	2	2
시·군·구	21	4	1	1	-	1	1	1	-	5	1	1	1	1	2	1	-	-
계	54	6	3	3	2	3	3	3	1	8	3	3	3	3	3	3	2	2

자료: 성평등가족부

미디어 과의존 전담상담사가 배치되지 않은 센터는 202개소로 전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84.2%에 달하고 있는바, 미 배치 센터에 과의존 전담상담사 배치를 확대하여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를 통해 나타난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 정도에 따라 청소년상담기관[113]을 통해 상담, 추가심리검사, 치료협력병원 연계, 기숙치유프로그램, 부모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114]

2026년도 예산안 산출내역을 보면, 지역별 피해 청소년 치유·회복 지원 예산은 2025년(15억 1,900만원) 대비 1억 300만원(6.8%)이 증액된 16억 2,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동 사업은 2024년에 청소년매체활용역기능 해소 사업에서 이관된 사업으로, 2024년 예산(15억 1,300만원)이 편성된 이후 예산액이 거의 증가하지 않은 상황임.

113)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240개소)

114) '주의사용자군'에게는 학교별 집단상담, '위험사용자군'에게는 개인별 상담을 제공하며,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의 질환이 공존하는 경우에는 병원치료까지 연계 지원함.
또한, 인터넷이 차단된 환경에서 집중치유가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학 및 주말 중에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캠프(7박 8일, 중·고생 대상), 가족치유캠프(1박 2일: 초1 대상, 2박 3일: 초2~초6 대상)를 운영하고, 학기 중에도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에서 상시적인 통합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함.

【 2026년도 지역별 피해 청소년 치유·회복 지원 예산안 산출내역 】

2025년 예산 세부산출내역	2026년 예산안 세부 산출내역
나. 지역별 피해 청소년 치유·회복 지원 **: 1,519백만원** 나-1) 피해 청소년 집중치유프로그램 운영 : 495백만원 **· 미디어치유캠프 운영 = (치유캠프 4회×50백만원) + (연계캠프 11회×14.9백만원) = 364백만원** · 가족치유캠프 운영 = 10회×13.1백만원 = 131백만원 나-2) 지역별 개인·집단상담·병원치료 연계 등 지원: 954백만원 · 연계망 운영지원 = (운영지원비 25백만원) + (운영지원 인건비 129백만원)= 154백만원 · 지역사업 운영비 = 17개 시·도×47,059천원 =800백만원 나-3) 전문성 강화·교육지원 : 70백만원 · 전문가 양성 교육 지원 47백만원 = 1,400명×33.5천원 · 신규콘텐츠 연구개발비 23백만원 = 1회×23백만원	**나. 지역별 피해 청소년 치유·회복 지원** **: 1,622백만원** 나-1) 피해 청소년 집중치유프로그램 운영 : 598백만원 **· 미디어치유캠프 운영 = (치유캠프 6회×50백만원) + (연계캠프 11회×15.1백만원) = 466백만원** · 가족치유캠프 운영 = 10회×13.2백만원 = 132백만원 나-2) 지역별 개인·집단상담·병원치료 연계 등 지원: 954백만원 · 연계망 운영지원 = (운영지원비 25백만원) + (운영지원 인건비 129백만원)= 154백만원 · 지역사업 운영비 = 17개 시·도×47,059천원 =800백만원 나-3) 전문성 강화·교육지원 : 70백만원 · 전문가 양성 교육 지원 47백만원 = 1,400명×33.5천원 · 신규콘텐츠 연구개발비 23백만원 = 1회×23백만원

자료: 성평등가족부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5년 청소년 미디어 이용 습관 진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17.3%(213,243명)가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분류되었고, 최근 청소년의 미디어 과의존 연령이 저연령화[115]되고 있는데, 치유캠프 참여인원은 극히 소수에 불과한 바, 치유·회복 지원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115) 2024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율은 2022년 37.6%에서 2024년 43.8%로 증가함.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치유 서비스 지원 실적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상 담	148,458건	160,552건	117,370건	162,126건	188,518건	180,740건	187,624건
치 료	878명	863명	505명	809명	900명	793명	570명
인터넷 치유캠프	14회 321명	14회 334명	7회 104명	10회 115명	10회 189명	8회 151명	4회 80명
가족치유캠프	35회 839가족	20회 452족	8회 100가족	12회 178가족	15회 267가족	15회 311가족	10회 196가족
드림마을 치유캠프	22회 575명	22회 576명	14회 312명	18회 323명	19회 382명	22회 469명	22회 479명

3)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2233-335)

○ 국립 경남권 청소년 디딤센터 건립 사업은 경남 의령군 내 건립 후보지가 결정되지 않아 2024년 예산액이 전액 불용되었고, 2025년에는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은 등 건립 추진이 원활하지 않았는 바, 경남권 청소년의 정신건강 위기 대응 및 지역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조속히 건립할 필요가 있으므로, 건립 후보지를 조속히 결정하고, 의령군, 조달청, 기획재정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에 만전을 기하여 집행부진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건립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은 지방에 거주하는 정서·행동 장애 청소년의 치유 수요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한 상시 전문 치유기관 건립을 위한 사업으로, ① 국립 호남권청소년 디딤센터 건립, ② 국립 광주청소년 디딤센터 건립, ③ 국립 경남권 청소년 치료재활센터 건립 등 3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57억 600만원) 대비 31억 6,700만원(55.5%)이 증액된 88억 7,3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6년도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A)	2026년 예산안 (B)	증감	
	예산현액	집행액			B-A	%
◦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	4,773	1,665	5,706	8,873	3,167	55.5
· 국립호남권청소년 디딤센터 건립	1,391	1,195	3,732	4,450	718	19.2
· 국립광주청소년 디딤센터 건립	2,382	470	1,974	3,473	1,499	75.9
· 국립경남권청소년 디딤센터 건립	1,000	-	-	950	950	100.0

자료: 성평등가족부

나) 국립 경남권 청소년디딤센터 건립 원활한 사업 추진 필요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국립 경남권 청소년디딤센터 건립 사업은 지역 정서·행동 문제 청소년의 치유서비스 수요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경남권의 청소년치료재활센터 확충 필요성에 따라 2024년 신규 사업[116]으로 추진되었고, 경남 의령군에 건립할 예정임.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대비 9억 5,000만원(100.0%)이 증액된 9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6년도 국립 경남권 청소년디딤센터 건립 사업 예산안 산출내역 】

계	예산안 세부 산출내역
950백만원	▪ 기본조사설계비(420-01)×1식

자료: 성평등가족부

116) 2023년 12월 국회 예산 심의시 10억원이 반영됨.

【 국립 경남권 청소년디딤센터 개요 】

구 분	국립 경남권 청소년디딤센터
후보지(안)	경남 의령군 의령읍 하리 25번지 일원
총사업비	미정
사업기간	미정
사업규모(안)	부지면적 29,451㎡

자료 : 성평등가족부

그런데, 동 사업은 그동안 건립 추진이 원활하지 못하였음. 2024년 예산액 10억원은 전액 불용되었고, 2025년에는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음. 이는 경남 의령군 내 건립 후보지가 결정되지 않음에 따라 건립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임.

【 2024년도 국립 경남권 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	1,000	-	-	1,000	-	-	1,000	-
건설보상비	596	-	-	596	-	-	596	-
기본조사설계비	400	-	-	400	-	-	400	-
시설부대비	4	-	-	4	-	-	4	-

자료: 성평등가족부

동 사업의 추진경과를 보면, 2024년에는 경남 의령군에서 후보지 선정을 위하여 국립 경남 청소년디딤센터 의령군 건립 타당성조사 및

건립후보지 제안 용역[117]을 추진하였고,

성평등가족부는 2025년 10월 현재 의령군에서 제안한 후보지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중이라고 함.

【 국립 경남권 청소년디딤센터 추진 경과 및 계획 】

일 정	추진 현황 및 계획
2024. 5. ~ 2025. 3.	지자체 타당성 검토 및 후보지 제안서 작성(의령군)
2025. 3.	지자체 타당성 검토결과 및 후보지 제안서 제출
2025. 4. ~	지자체 타당성 검토결과 및 후보지 제안서 검토

자료 : 성평등가족부

최근 청소년의 건강 위기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 디딤센터는 정서·행동 문제 청소년에게 치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인접 지역 청소년에게 광역 거점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따라서 경남권 청소년의 정신건강 위기 대응 및 지역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국립 경남권 청소년디딤센터를 조속히 건립할 필요가 있는바, 건립 후보지를 조속히 결정하고, 의령군, 조달청, 기획재정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에 만전을 기하여 집행부진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건립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117) 경남 의령군의 타당성 검토 및 후보지 제안 연구 개요
- 연구용역명: 국립 경남 청소년디딤센터 의령군 건립 타당성조사 및 건립후보지 제안 용역
- 연구기간: 2024.5.~12.
- 연구기관: ㈜ 한국학술연구회
- 후보지 주소 : 경남 의령군 의령읍 하리 25번지 일원(29,451㎡)

4)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운영지원(2237-371)

○ 청소년 글로벌 역량 강화 사업은 2024년에 폐지되었다가 2026년에 다시 편성된 사업으로, 2023년까지 추진되었던 기존의 국가간 청소년 교류 사업은 상대국 청소년과의 교류 활동, 청소년 관련기관 · 시설 방문, 홈스테이, 문화체험 등 파견·초청국 일정에 단순하게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바, 파견·초청국 일정에 따른 단순 방문형 참여를 지양하고, 사전단계부터 청소년 주도로 주제를 설정하는 등 청소년 주도의 교류활동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충남 천안)의 2026년도 토지임차료는 독립기념관의 요구에 따라 임차료 산정방식을 변경하여 2025년(14억 1,000만원) 대비 7억 7,800만원(55.2%)이 증액된 21억 8,800만원이 편성되었음. 그런데, 독립기념관과의 기존 토지사용협약이 2024년 10월에 종료된 이후 새로운 연장 협약 체결이 지연되어 2025년 10월 현재 토지임차료가 전혀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바, 협약을 연도내에 체결하여 2025년 토지임차료를 정상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운영지원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제6조의6에 따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① 인건비, ② 운영비, ③ 사업비, ④ 토지임차료 등 4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394억 5,900만원) 대비 49억 6,100만원(12.6%)이 증액된 444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6년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운영지원 사업 계획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 (B)	증감	
	예산액	집행액 (실집행액)			B-A	%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운영지원	39,967	39,965 (39,952)	39,459	44,420	4,961	12.6
· 임차료	16,707	16,707	17,508	18,171	663	3.8
· 운영비	815	815	815	815	-	-
· 사업비	21,084	21,084 (21,071)	19,726	23,246	3,520	17.8
· 토지임차료	1,361	1,359	1,410	2,188	778	55.2

자료: 성평등가족부

나) 청소년 글로벌 역량 강화 사업은 청소년 주도의 교류활동 추진 필요

2026년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사업비 예산안은 2025년(197억 2,600만원) 대비 35억 2,000만원(17.8%)이 증액된 232억 4,6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6년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사업비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계획(A)	2026년 계획안(B)	증감	
			B-A	%
◦ 사업비	19,726	23,246	3,520	17.8%
- 청소년활동 진흥 사업	2,001	2,142	141	7.0
- 청소년활동 안전 사업	4,090	3,990	△100	△2.4
- 국립청소년시설 관리·운영	10,893	13,607	2,714	24.9
- 사회배려대상 청소년 지원 사업	2,230	2,230	-	-
- 청소년지도사 양성	312	1,277	965	309.3
- 국립청소년시설 기능 활성화	200	-	△200	순감

자료: 성평등가족부

청소년활동 진흥 사업은 청소년이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 봉사활동, 청소년 주도 활동[118], 청소년활동 정보, 우수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글로벌 역량강화 등 정책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20억 100만원) 대비 1억 4,100만원(7.0%)이 증액된 21억 4,2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6년도 청소년활동 진흥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
◦ **청소년활동 진흥 사업**	**2,001**	**2,142**	**141**	**7.0**
· 청소년활동 활성화 지원	120	120	-	-
· 청소년 봉사활동	199	199	-	-
· 청소년 주도 활동 지원	198	198	-	-
· 청소년활동 정보	175	175	-	-
· 취약계층 청소년 학교안팎 청소년활동 지원	159	-	△159	순감
· 우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	850	650	△200	△23.5
· 늘봄학교 운영	300	-	△300	순감
· 청소년 글로벌 역량 강화	**-**	**800**	**800**	**순증**

자료: 성평등가족부

청소년활동 진흥 사업 중 청소년 글로벌 역량 강화 사업은 2026년도 신규 사업으로 8억원이 편성되었음. 동 사업은「청소년활동 진흥법」제54조[119]에 따라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대응하여 청소년의 글로

118) 포상제 및 청소년 자기주도형 활동(PBL, Project based learning)

119)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4조(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지방자치단체·국제기구 또는 민간 등이 주관하는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

벌 역량을 체계적으로 함양하고, 국가 간 우의·협력 증진을 통해 미래 세대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임.

한편, 국가간 청소년 교류사업은 한-말레이시아 청소년 교류(1965년 약정, 1979년 교류)를 시작으로 2023년[120]까지 39개 국가와 교류 약정을 체결하여 매년 10여개국 국가와 교류를 추진(1979~2023년의 기간 동안 13,132명 교류, 2023년 13개국 380명)하였는데,

2024년도에 재정건전성 확보 등의 정책 기조에 따라 청소년 관련 예산의 삭감[121]으로 사업이 폐지되었다가, 2026년도 예산안에 다시 편성된 것임.

동 사업은 MOU 협약(39개)국 중 온·오프라인 교류활동을 통한 공동 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한 7개국[122]을 선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지원 인원은 총 210명(7개국×파견·초청 30명)임. 온·오프라인 교류 활동을 통한 공동 프로젝트 수행[123], 심층 교류 프로그램[124] 및 국가별 맞춤형 프로그램[125]을 사업내용으로 함.

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다른 국가와 청소년교류협정을 체결하여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기구가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시행할 때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20) 2023년 예산액은 8억 8,100만원임.

121) 청소년 국제교류 지원 사업은 2024년에 사업이 폐지되었는데, 동 사업 중 스카우트활동 지원 사업은 2023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특정단체 지원 사업에 대한 감축 의견 반영에 따라 전액 삭감되었고, 청소년 국제교류, 해외체험 프로그램, 국제행사 개최 지원 사업은 재정건전성 확보 등의 기조에 따라 전액 삭감됨.

122) 7개국은 2025년 12월 선정 예정임.

123) 양국 주제 선정 → 문제해결 능력 및 협업 역량 강화

124) 문화교류 및 Action Plan 이행

125) 각 MOU 체결국의 문화적, 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만족도 향상

【 2026년도 청소년 글로벌 역량 강화 사업 예산안 내역 】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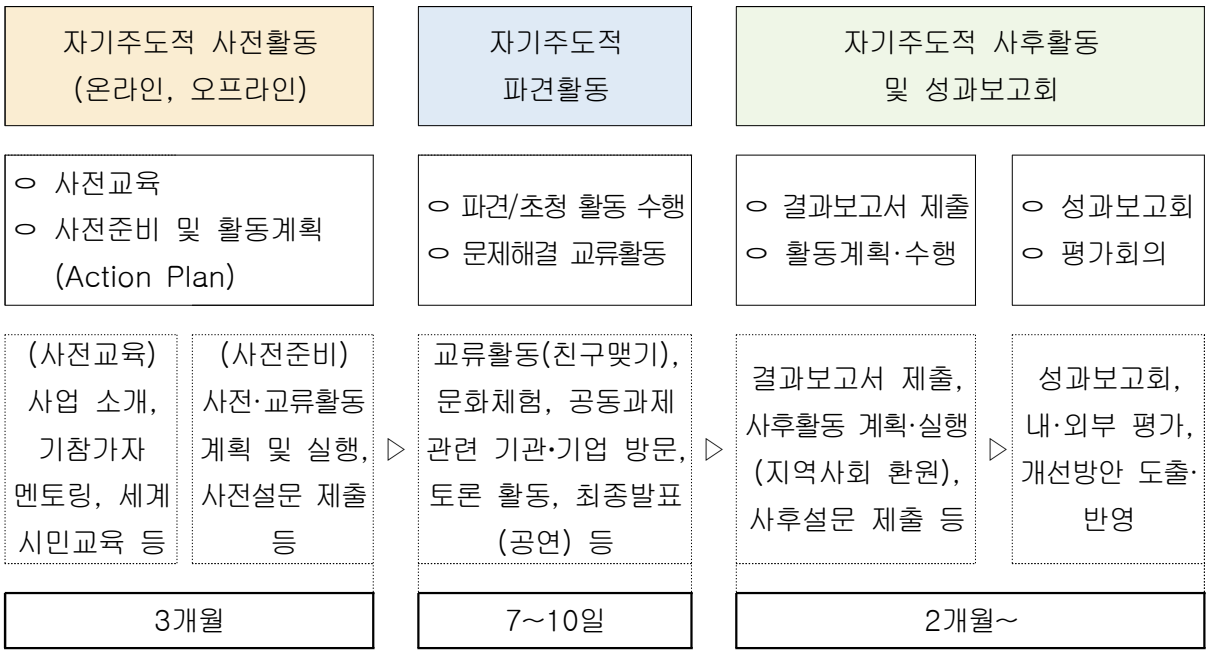
세부항목	주요 내용	2026년도 예산안
운영비	국가별 온·오프라인 국제교류활동 (7개국×90백만원)	630
경상경비	선발·발대식·교육·지원인력·여비 등 (210명 = 7개국 ×30명)	120
일반용역비	국제교류시스템개선·효과성 연구 등	50
합 계		800

자료: 성평등가족부

2023년까지 추진되었던 기존의 국가간 청소년 교류 사업은 상대국 청소년과의 교류 활동, 청소년 관련기관·시설 방문, 홈스테이, 문화체험 등 파견·초청국 일정에 단순하게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바, 파견·초청국 일정에 따른 단순 방문형 참여를 지양하고, 사전단계부터 청소년 주도로 주제를 설정하도록 하는 등 청소년 주도의 교류활동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2026년 사업 대상국이 관심을 가지는 글로벌 의제를 함께 발굴·협의하고 사업 대상국의 여건과 관심 분야를 충분히 반영하여 주제를 설정하여 상호 관심사에 기반한 교류활동을 추진하여야 할 것임.

【 온오프라인 융합형 국제교류활동 운영체계(안) 】



자료: 성평등가족부

다)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토지사용협약 연도내 추진 필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서울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본원이 있으며,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충남 천안),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강원 평창), 국립청소년미래환경센터(경북 봉화), 국립청소년바이오생명센터(전북 김제), 국립청소년우주센터(전남 고흥), 국립청소년생태센터(부산 사하구)를 운영하고 있음.

동 사업의 내역사업 중 토지임차료는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충남 천안)이 독립기념관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바, 이에 소요되는 비용임.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운영현황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본원

- 서울 서대문구 경기대로 47
- 연면적 2,557㎡(임대)
- 기획조정본부/경영지원본부/활동사업본부/안전연수본부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 강원 평창('98.11.14. 개원)
- 부지 483,818㎡
- 건축연면적 22,348㎡
- 생활관(491명), 실내모험체험시설

국립청소년미래환경센터

- 경북 봉화('22.7.21. 개원)
- 부지 104,362㎡
- 건축연면적 8,572㎡
- 생활관(162명), 산림생태체험관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 충남 천안('01.8.15. 개원)
- 부지 540,641㎡
- 청소년성장센터(본부)
- 건축연면적 35,401㎡
- 생활관(722명), 국제회의장

국립청소년해양센터

- 경북 영덕('13.7.1. 개원)
- 부지 50,169㎡
- 건축연면적 13,664㎡
- 생활관(285명), 해양환경체험관

국립청소년바이오생명센터

- 전북 김제('13.7.1. 개원)
- 부지 38,806㎡
- 건축연면적 11,907㎡
- 농생명체험관

국립청소년우주센터

- 전남 고흥('10.7.9. 개원)
- 부지 320,757㎡
- 건축연면적 13,711㎡
- 생활관(226명), 우주활동체험관

국립청소년생태센터

- 부산 사하구 을숙도('24.7.11. 개원)
- 부지 64,710㎡
- 건축연면적 10,691㎡
- 생활관(124명), 생태체험관

토지임차료의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14억 1,000만원) 대비 7억 7,800만원(55.1%)이 증액된 21억 8,8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6년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토지임차료 예산안 산출내역 】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 임차료(210-07) : 1,410백만원 -(면적) 420,716㎡×3,351원 =1,410백만원 * 1,361백만원×103.6% =1,410백만원	▪ 임차료(210-07) : 2,188백만원 -(면적) 354,851㎡×(공시지가) 112,100원/㎡ ×(요율) 5%×(부가가치세) 110%

자료: 성평등가족부

토지임차료가 대폭적으로 증액된 이유는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과 독립기념관의 기존 토지사용협약이 2024.10.31. 종료됨에 따라 연장 협약에 관한 협의 과정에서 독립기념관의 요구를 반영하여 임차료 산정 방식을 변경하여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임.

2025년까지 토지임차료는 전년도 토지임차료에 전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는데, 2026년부터는 전전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함에 따른 것임.

그런데, 토지임차료의 2025년 집행현황을 보면, 2025년 10월 현재 집행액이 전혀 없는 실정임.[126]

【 2025년 토지임차료 집행현황(2025년 10월 현재)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 토지임차료	1,410	-	0%

자료: 성평등가족부

126) 기존의 토지임차료는 통상적으로 매년 6월말에 집행하였음.

2025년 10월 현재 토지임차료가 전혀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사유는 기존 토지사용협약이 2024년 10월에 종료된 이후 신규 토지사용협약 체결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인바, 토지사용협약을 연도내에 체결하여 2025년 토지임차료를 정상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음.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토지사용협약의 주요내용 】

기존 토지사용협약	- **사용기간** : '95.11.1~'24.10.31(30년), 상호협의에 따라 연장 가능 - **사용면적** : 424,814㎡ - **사 용 료** : 전년도 사용료+(전년도 사용료×전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협의 중인 토지사용협약(안)	- **사용기간** : '24.11.1~'29.10.31(5년),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사용면적** : 354,851㎡(△69,963㎡) - **사 용 료** : 재산가액(전전년도 개별공시지가)×5%×1.1 * '25년도 사용료는 기존 협약과 같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적용

자료: 성평등가족부

- 성평등가족부는 2025년 3월에 잠정적으로 독립기념관과의 토지사용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026년도 예산안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토지임차료 예산(정부안)의 조정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 확정전까지 협약체결을 보류중으로, 2026년도 예산이 확정되는 즉시 협약 체결 및 2025년도 내에 토지임차료를 집행할 계획이라고 함.

다. 청소년육성기금

1)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2254-431)

○ 청소년상담 1388 운영 사업은 코로나19 이후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의 심화와 위기청소년의 증가 등으로 청소년상담 1388 온라인 상담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온라인 상담원은 2023년 이후 99명으로 동일함. 온라인 상담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온라인 상담 평균 대기시간이 18분, 응답률은 82%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므로 온라인 상담원을 확충하여 평균 대기시간을 줄이고, 응답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127]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128] 등에 따라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사회안전망 내에서 도움이 필요한 위기청소년을 발견하고 지원하려는 것으로, ① 청소년안전망 운영, ② 청소년상담 1388 운영, ③ 학교 밖 청소년 지원, ④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⑤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⑥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등 6

127)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2026년도 계획안은 2025년(718억 2,000만원) 대비 20억 3,900만원(2.8%)이 증액된 738억 5,9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6년도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A)	2026년 계획안(B)	증감	
	계획액	집행액 (실집행액)			B-A	%
◦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72,073	71,698 (68,445)	71,820	73,859	2,039	2.8
· 청소년안전망 운영	31,242	31,203 (29,245)	31,698	33,109	1,411	4.5
· 청소년상담 1388 운영	2,601	2,598	2,670	2,928	258	9.7
· 학교밖청소년 지원	28,888	28,882 (28,063)	29,408	29,465	57	0.2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4,287	4,287 (3,952)	4,287	4,287	-	-
·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3,966	3,678 (3,667)	2,428	2,465	37	1.5
· 고립·은둔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1,089	1,050 (1,021)	1,329	1,605	276	20.7

자료: 성평등가족부

나) 청소년상담 1388 온라인 상담인력 등 확충 필요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청소년상담 1388 운영 사업은 전화와 온라인을 통해 365일·24시간 위기청소년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대표적인 비대면 상담 지원 사업임.

동 사업의 2026년도 계획안은 2025년(26억 7,000만원) 대비 2억 5,800만

원(9.7%)이 증액된 26억 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 2026년도 청소년상담 1388 운영 사업 계획안 산출내역 】

2025년 계획	2026년도 계획안 세부 산출내역
▪ 민간경상보조(320-01) 가. 청소년온라인상담 운영: 2,638백만원 ・ 인건비 = 23,888천원 × 99명 = 2,365백만원 ・ 운영비 =234백만원 × 1식 = 234백만원 ・ 사업비 = 39백만원 × 1식 = 39백만원	▪ 민간경상보조(320-01) 가. 청소년온라인상담 운영: 2,721백만원 ・ 인건비 = 24,727천원 × 99명 = 2,448백만원 ・ 운영비 =234백만원 × 1식 = 234백만원 ・ 사업비 = 39백만원 × 1식 = 39백만원
	▪ 일반연구비(260-01) 가. 위기청소년 긴급전화 1388 ISMP : 183백만원 × 1식
▪ 일반수용비(210-01) 가. 청소년상담1388 관리: 20백만원 × 1식	▪ 일반수용비(210-01) 가. 청소년상담1388 관리: 16백만원 × 1식
▪ 국내여비(220-01) 가. 청소년상담1388 운영 사업 여비 : 3백만원 × 1식	▪ 국내여비(220-01) 가. 청소년상담1388 운영 사업 여비 : 1백만원 × 1식
▪ 사업추진비(240-01) 가. 청소년상담1388 운영 사업 추진 : 9백만원 × 1식	▪ 사업추진비(240-01) 가. 청소년상담1388 운영 사업 추진 : 7백만원 × 1식

자료: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상담 1388 운영 사업의 2024년도 운영 실적을 보면, 총 69.5만 건(전화 29만 건, 온라인 40.5만 건)의 상담이 이루어졌음.

전화 상담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인력이 담당하고 있으며, 온라인 상담은 온라인 상담원이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온라인 상담 실적을 보면 2021년 371,693건에서 2024년

405,084건으로 증가하였으나, 온라인 상담원은 2023년 이후 99명으로 동일하고, 2026년 계획안에도 99명에 대한 온라인 상담원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음.

【 청소년상담 1388 운영 사업 실적 】

(단위: 건)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화 상담	480,738	493,393	353,087	290,102
온라인 상담	371,693	342,642	384,301	405,084
계	**852,431**	**836,035**	**737,388**	**695,186**

자료: 성평등가족부

【 청소년상담 1388 운영 사업 온라인 상담원 현황 】

(단위: 명)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온라인 상담원	93	89	99	99

주. 1. 청소년상담1388 전화상담 전담 인력은 없음.
2. 2022년 사이버·모바일 상담 사업 운영 주체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으로 통합되어 인력 일부(4명) 감원
자료: 성평등가족부

한편, 온라인 상담 평균 대기시간 및 응답률 현황을 보면, 평균 대기시간은 18분, 응답률은 82%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바, 온라인 상담인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임.

【 청소년상담 1388 운영 사업 온라인 상담 평균 대기시간 및 응답률 현황 】

구 분	2023년	2024년
평균 대기시간(분)	17.31	18.67
응답률(%)	84.23	81.88

주. 2023년 신규시스템 도입 이후 산출한 것임.
자료: 성평등가족부

코로나19 이후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의 심화와 위기청소년의 증가 등으로 청소년상담 1388 온라인 상담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온라인 상담원을 확충하여 평균 대기시간을 줄이고, 응답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온라인 상담원 확충을 통하여 야간·주말 등 비근무시간에도 전문상담원이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전화 상담 전담인력이 별도로 없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인력이 전화상담·대면상담·행정업무 등을 병행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전화 상담 전담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6. 가족정책관

가. 총괄

1) 개요

2026년도 가족정책관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양성평등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액은 1조 4,020억 9,700만원으로, 전년(1조 2,321억 1,400만원) 대비 1,699억 8,300만원(13.8%)이 증가하였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664억 900만원으로, 전년(5,215억 6,500만원) 대비 1,448억 4,400만원(27.8%)이 증가하였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50억 9,500만원으로, 전년(39억 5,000만원) 대비 11억 4,500만원(29.0%)이 증가하였으며,

양성평등기금 지출계획안은 7,305억 9,300만원으로, 전년(7,065억 9,900만원) 대비 239억 9,400만원(3.4%)이 증가하였음.

【 2026년도 가족정책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표 】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
계	1,232,114	1,232,114	1,402,097	169,983	13.8
일반회계	521,565	521,565	666,409	144,844	27.8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950	3,950	5,095	1,145	29.0
양성평등기금	706,599	706,599	730,593	23,994	3.4

주: 기금의 경우 계획은 예산, 당초계획은 본예산, 수정계획은 추경을 의미
자료: 성평등가족부

2026년도 가족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사업은 가족역량강화지원, 가족정책 추진기반 구축, 아이돌봄지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가족정책관 기본경비(총액대상), 가족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등 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은 가족센터 건립(지역자율계정) 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성평등기금 사업은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지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등 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6년도 가족정책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명세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
계(가족정책관)	**1,232,114**	**1,232,114**	**1,402,097**	**169,983**	**13.8**
【일반회계】	**521,565**	**521,565**	**666,409**	**144,844**	**27.8**
가족역량강화지원	2,102	2,102	2,102	-	-
가족정책 추진기반 구축	2,518	2,518	3,617	1,099	43.6
아이돌봄지원	475,028	475,028	600,305	125,277	26.4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	13,026	13,026	14,113	1,087	8.3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28,730	28,730	46,128	17,398	60.6
가족정책관 기본경비(총액대상)	19	19	14	△5	△26.3
가족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142	142	130	△12	△8.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950**	**3,950**	**5,095**	**1,145**	**29.0**
가족센터 건립(지역자율계정)	3,950	3,950	5,095	1,145	29.0
【양성평등기금】	**706,599**	**706,599**	**730,593**	**23,994**	**3.4**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552,833	552,833	572,246	19,413	3.5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2,723	2,723	2,301	△422	△15.5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지원	5,846	5,846	4,667	△1,179	△20.2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145,197	145,197	151,379	6,182	4.3

주: 기금의 경우 계획은 예산, 당초계획은 본예산, 수정계획은 추경을 의미
자료: 성평등가족부

2) 주요 증·감액사업 현황

2026년도 가족정책관 소관 사업 중 예산이 전년 대비 감액된 사업은 일반회계 중 2개 사업, 양성평등기금 2개 사업임.

일반회계에서는 공공부문 경비 절감 방침에 따라 가족정책관 기본경비(총액)와 가족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가 감소하였음.

양성평등기금에서는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사업은 복지급여 대상자인 청소년한부모 수의 감소와 체계 변동으로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 4억 2,200만원(△15.5%)이 감소되었으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사업은 시설의 신축, 증축 수요 감소[129] 및 사회복무요원 수요 감소에 따라 시설 기능보강 지원 및 인력경비 11억 7,900만원(△20.2%)이 감소하였음.

129) 신축 1개소, 증축 2개소, 개보수 등 36개소 -> 개보수 등 37개소

【 2026년도 가족정책관 소관 주요 감액사업 】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2025예산		2026년 예산안 (B)	증감		주요 감액사유
		본예산	추경(A)		B-A	%	
일반회계	가족정책관기본경비(총액)	19	19	14	△5	△26.3	공공부문 경비 절감
	가족정책관기본경비(비총액)	142	142	130	△12	△8.5	공공부문 경비 절감
양성평등기금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2,723	2,723	2,301	△422	△15.5	청소년한부모 가구 감소 추세 등 고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지원	5,846	5,846	4,667	△1,179	△20.2	'26년 시설유형 개편 관련 신축·증축 수요 감소 및 사회복무요원 수요 감소 반영

주: 기금의 경우 계획은 예산, 당초계획은 본예산, 수정계획은 추경을 의미
자료: 성평등가족부

한편, 2026년도 가족정책관 소관 사업 중 예산이 전년 대비 증액된 사업은 일반회계 4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개, 양성평등기금 2개임.

일반회계의 아이돌봄지원 사업은 ① 정부지원 가구 및 대상 확대(12만 가구→12.6만 가구), ② 아이돌봄 수당(5%)과 영아돌봄수당(500원/시간) 인상, ③ 야간긴급돌봄수당(5,000원/일) 및 3~5세의 유아돌봄수당(1,000원/시간) 신설, ④ 소득기준 완화(기준 중위소득 200%→250%), ⑤ 한부모 및 조손가구에 대한 정부지원시간 확대(연간 960시간→1,080시간), ⑥ 공공 서비스제공기관 복수지정 등 서비스 인프라 확대(17개소 추가) 등으로 1,252억 7,700만원(26.4%)이 증액되었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은 아이돌봄사 자격제도 도입에 따른 자격관리 운영 사업의 신설 등에 따라 10억 8,300만원(8.3%) 증액되었음.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사업은 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시행됨에 따른 선지급 제도 운영비 및 양육비 회수, 강제징수 등을 위한 인력 증원 등에 따라 173억 9,800만원(60.6%)이 증가하였음.

양성평등기금의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은 복지급여 지원대상의 확대(기준 중위소득 63%→65%)와 추가 아동양육비 단가 상향조정(월 5~10만원→10만원), 생활 보조금(월 5만원→10만원) 및 학용품비(연 9.3만원→10만원)의 인상에 따라 194억 1,300만원(3.5%)이 증가하였고,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은 건강가정지원센터(1개소)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2개소)의 가족센터 전환, 공동육아나눔터 지방활성화(20개소 운영시간 연장, 인력 추가지원 등) 등으로 61억 8,200만원(4.3%)이 증액되었음.

【 2026년도 가족정책관 소관 증액사업 】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2025예산		2026년 예산안 (B)	증감		주요 증액사유
		본예산	추경 (A)		B-A	%	
일반회계	가족정책추진 기반 구축	2,518	2,518	3,617	1,099	43.6	가족실태조사 및 가족친화 수준조사 사전조사 추진
	아이돌봄지원	475,028	475,028	600,305	125,277	26.4	정부지원 가구 및 대상 확대, 돌봄수당 인상 및 유아돌봄·야간긴급돌봄수당 신설, 한부모·조손가구 등 정부지원시간 확대 등 * 돌봄수당 인상(+5%) * 지원가구(12→12.6만) * 소득기준 완화(중위소득 200%→250%) * 한부모·조손가구 정부지원시간 확대(연 960h→1,080h, +120h)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	13,026	13,026	14,113	1,087	8.3	인력 증원 및 처우개선,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운영 등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28,730	28,730	46,128	17,398	60.6	인력 증원 및 처우개선, 선지급제 운영 등
지특회계	가족센터 건립	3,950	3,950	5,095	1,145	29.0	지자체 수요 반영한 가족센터 건립 (신규 3개소, 계속 6개소 등)
양성평등기금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552,833	552,833	572,246	19,413	3.5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금 인상 등 * 기준중위소득 63→ 65%, * 추가아동양육비 월 5~10→10만원 * 생활보조금 월 5→10만원 * 학용품비 연 9.3 → 10만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145,197	145,197	151,379	6,182	4.3	맞춤형 가족서비스 확대, 가족센터 평가 및 결혼중개업 실태조사 추진, 공동육아나눔터 지방활성화 등 * 가족센터 전환(건가 1개소·다가 2개소→가족센터) * 취약·위기가족 지원 확대(227개소→233개소) * 공동육아나눔터 지방활성화 (20개소/운영시간 연장, 인력 추가 지원, 프로그램비 지원 등)

주: 기금의 경우 계획은 예산, 당초계획은 본예산, 수정계획은 추경을 의미
자료: 성평등가족부

나. 일반회계

1) 아이돌봄 지원(2334-341)

○ 돌봄수당은 전년 대비 1,202억 5,500만원(31.4%)이 증액된 5,048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최근 실집행률이 저조(2023년 82.3%, 2024년 71.6%)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의 지원실적 감소 등 최근의 집행추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 예산을 산정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 돌봄수당의 집행실적 저조의 원인으로 아이돌보미 공급 부족이 지적되고 있고, 양성 교육인원 대비 활동 아이돌보미 증원 저조, 열악한 처우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아이돌보미의 공급확보 및 연계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 및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아이돌봄 지원법」이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관리시스템 구축 예산은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자격제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시스템 구축 사업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돌봄수당의 미집행분을 다른 내내역사업의 예산 부족분으로 변경하여 집행하지 않도록 아이돌보미 관리 사업의 4대보험 및 퇴직적립금 등 법정부담금을 적정 수준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서비스지원 사업을 구성하고 있는 내내역사업(돌봄수당, 아이돌보미 양성관리, 서비스제공기관 운영)들은 사업내용 및 사업성격이 다르므로, 별도 내역사업으로 분리 편성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예산은 2025년과 동일한 42억 1,200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 제도 도입에 따라 보수교육은 아이돌봄사의 의무사항으로 변경되었는바, 동 제도가 시행되는 2026. 4.23. 이후에는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아이돌봄사 자격증 유지 비용은 아이돌봄사 개인의 부담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아이돌봄 지원법」[130]에 근거하여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1:1로 아동을 돌보는 서비스를 통해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사업으로, ① 서비스지원(돌봄수당, 아이돌보미 관리,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② 광역지원센터 운영, ③ 중앙지원센터 운영, ④ 시스템 운영 지원, ⑤ 경상경비 등 5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4,750억 2,800만원) 대비 1,252억 7,700만원(26.4%)이 증액된 6,003억 500만원이 편성되었음.

130) **「아이돌봄 지원법」 제4조(국가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의3(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의4(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① 시·도지사는 원활하게 아이돌보미를 관리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제20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④ 통합정보시스템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 2026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현액 (A)	2026년 예산안 (B)	증감	
	예산액	집행액 (실집행액)			B-A	%
◦ 아이돌봄 지원	467,866	467,836 (370,416)	475,028	600,305	125,277	26.4
· 서비스지원	461,821	461,716 (364,417)	467,706	593,354	125,648	26.9
- 돌봄수당	384,222	384,117 (275,212)	384,356	504,892	120,536	31.4
- 아이돌보미 관리	57,299	57,299 (63,746)	61,318	64,349	3,031	4.9
-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20,300	20,300 (25,459)	22,032	24,113	2,081	9.4
· 광역지원센터 운영	4,697	4,802 (4,681)	5,194	5,277	83	1.6
· 중앙지원센터 운영	1,249	1,223	1,249	1,441	192	15.4
· 시스템 운영지원	-	-	95	190	95	100
· 아이돌봄 자격관리, 민간등록 정보시스템 구축 컨설팅	-	-	281	-	△281	△100
· 경상경비	99	95	503	43	△460	△91.5

자료: 성평등가족부

나) 돌봄수당 편성 규모의 적정성 검토 및 아이돌보미 충원 등 공급측면 지원 강화 필요

아이돌봄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서비스지원 중 돌봄수당은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이용요금의 일부를 이용가정의 소득유형에 따라 차등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아이돌봄 서비스 유형[131]은 시간제(기본형, 종합형), 영아종일제, 질병

131) 아이돌봄 서비스의 유형
① 시간제(기본형) : 가사활동을 제외한 일반적인 돌봄을 제공
② 시간제(종합형) : 기본형 + 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까지 제공
③ 영아종일제 : 가사활동을 제외한 영아(36개월 이하)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의 서비스를 제공
④ 질병감염 아동지원 :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

감염 아동지원, 기관연계 서비스로 구분됨. 2026년도 돌봄수당 예산안은 12.6만가구(전년 대비 6천가구 증가)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2025년 예산현액 (3,843억 5,600만원) 대비 1,205억 3,600만원(31.4%)이 증가한 5,048억 9,2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6년도 돌봄수당 예산 산출 내역 】

- 돌봄수당 12.6만 가구, 504,892백만원(+120,255백만원)

* 영아종일제 2,500가구, 17,884백만원

- 1자녀 : {(가형 1,500가구×85%) +(나형 650가구×60%) +(다형 200가구×30%) + (라형 150가구×15%)}×12,790원×평균 1,200시간(최대 2,400시간)×65%
- 다자녀 추가지원 : {(가형 900가구×2%) + (나형 390가구×4%) + (다형 120가구×7%) + (라형 90가구×9%)}×12,790원×평균 1,200시간(최대 2,400시간)×65%

* 시간제 123,500가구, 405,472백만원

- 1자녀 미취학 : {(가형 59,280가구×85%)+(나형 25,688가구×60%)+(다형 7,904가구×30%)+ (라형 5,928가구×15%)}×12,790원×평균 560시간(최대 960시간)×65%
- 다자녀 미취학 : {(가형 35,568가구×2%)+(나형 15,413가구×4%)+(다형 4,742가구×7%)+(라형 3,557가구×9%)}×12,790원×평균 560시간(최대 960시간)×65%
- 1자녀 취학 : {(가형 14,820가구×80%)+(나형 6,422가구×50%)+(다형 1,976가구×25%)+(라형 1,482가구×10%)}×12,790원×평균 560시간(최대 960시간)×65%
- 다자녀 취학 : {(가형 8,892가구×2%)+(나형 3,853가구×5%)+(다형 1,185가구×8%)+ (라형 889가구×9%)}×12,790원×평균 560시간(최대 960시간)×65%

* 취약가정 지원 23,694백만원

- 가형 취약가정 5% 추가지원 : 14,749가구×5% 추가지원×12,790원×560시간×65%
- 청소년(한)부모(0~1세 자녀양육) 추가지원 : 260가구×5%~75% 추가지원×12,790원×560시간×65%
- 취약가정 정부지원시간 확대 : 25,124가구×평균 77%×12,790원×120시간×65%
- 가형가구 야간긴급돌봄 할증료 지원 : 미취학(2,534가구×950원×최대 240시간×65%)+취학(424가구×1,280원×최대 240시간×65%)

*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 1,179백만원(순증)

⑤ 기관연계서비스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기관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

- 9,000가구×평균 360원×560시간×65%

* 영아돌봄수당 40,507백만원(+37,582백만원)

- 51,080가구×2,000원×610시간×65%

* 유아돌봄수당 13,993백만원(순증)

- 38,443가구×1,000원×560시간×65%

* 야간긴급돌봄수당 2,163백만원(순증)

- 5,547가구×5,000원×120건×65%

자료: 성평등가족부

돌봄수당의 주요 증액사유를 보면, ① 이용자 지원 측면에서는 정부지원가구를 확대(12만 가구 → 12.6만 가구)하고, 한부모·조손가구 등 추가지원 한도를 늘리며,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200%이하에서 250%이하까지 완화하고, 야간긴급돌봄 할증료, 인구감소지역 가정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② 서비스 공급 측면에서는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위하여 돌봄수당을 5.0% 인상하고, 영아돌봄수당을 인상하며, 유아돌봄수당 및 야간특화 긴급돌봄수당을 신설함에 따른 것임.

【 2026년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지원 확대 】

	'25	'26
정부지원가구 확대	12만 가구	**12.6만 가구**(+6천가구)
한부모, 조손가구 등 추가 지원	연 960시간 한도	**연 1,080시간 한도**(+120시간)
정부지원비율 인상 *취학아동	10% ~ 75%	**10% ~ 80%**(구간5~10%p↑)
정부지원 소득기준 완화 *중위소득	200% 이하	**250% 이하**

※ (기타) '26년 신설: 인구감소지역 가구 본인부담금 10% 추가지원, 가형가구 야간긴급돌봄 할증료 지원

【 2026년도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

	'25	'26
돌봄수당(시간당)	12,180원	**12,790원**(5.0%↑)
영·유아 추가돌봄수당(시간당)	영아 1,500원	**영아 2,000원, 유아 1,000원**(신설)
야간특화 긴급돌봄수당*	-	**5,000원**(신설)

그런데, 최근 5년간 아이돌봄 지원 사업의 실집행 현황을 보면, 2022년에는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률이 95.6%에 달하였으나, 2023년부터 정부지원 범위 확대로 돌봄수당 예산이 증가하면서 실집행률은 점차 저조(2023년 82.3%, 2024년 71.6%)하였음.

【 최근 5년간 돌봄수당 실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A)	집행액	실집행액(B)	실집행률(B/A)
2020년	173,342	177,685	177,685	173,852	97.8%
2021년	180,158	185,063	184,338	182,451	98.6%
2022년	202,031	204,912	204,912	195,935	95.6%
2023년	281,874	281,874	281,874	231,883	82.3%
2024년	384,222	384,117	384,117	275,212	71.6%

돌봄수당과 같이 예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사업의 경우 실집행률의 저조가 국가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2026년도 돌봄수당 예산의 증액 규모가 적정한 것인지 지원 대상

과 최근의 집행추이를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히,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의 경우 예산 편성 기준을 2025년과 동일하게 2,500가구로 추계하였는데, 최근 영아종일제 지원 실적을 보면, 이용가구 수가 2023년을 제외하고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2025년 실적 예상 또한 1,200가구에 불과하므로 실적부진의 원인과 최근의 집행추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 예산을 산정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영아종일제 계획 대비 실지원 현황 】

- **(예산 편성 기준 가구)**
  (′21) 4천 → (′22) 3.6천 → (′23) 3.5천 → (′24) 4.0천 → (′25) 2.5천
  → (′26정부안) 2.5천
- **(영아종일제 지원 가구 실적)**
  (′21) 2,346 → (′22) 2,543 → (′23) 1,707 → (′24) 1,025 → (′25) 1,200(예상)

【 2020년∽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현황 】

(단위 : 가구)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이용가구 계	59,663	71,789	78,212	86,100	118,126
시간제	56,525	57,454	61,138	66,515	70,021
영아종일제	3,138	2,617	2,760	1,890	1,155
일시, 기관연계	-	11,718	14,314	17,695	46,950

자료 : 성평등가족부

또한, 최근 돌봄수당의 집행실적 저조의 원인으로 아이돌보미 공급 부족이 지적되고 있음. 아이돌봄서비스 대기 현황을 보면, 2024년 기

준 대기가구 수는 9,519가구로, 2023년(13,031가구)에 비하여 3,512가구 감소하였으나, 평균 대기일수는 32.8일로 2023년(33일)과 유사한 수준이었음. 아이돌봄서비스의 평균 대기일은 2020년 8.3일에서 2021년에는 19일로 크게 증가하였고, 2023년 33일, 2024년 32.8일로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아이돌봄서비스 대기 현황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대기가구 수	2,606	6,809	14,745	13,031	9,519
평균 대기일	8.3	19.0	27.8	33.0	32.8

주: 1. 대기가구는 연도말 대기가구 상태에 있는 가구수를 의미
2. 평균 대기일수는 신규로 아이돌봄서비스가 연계된 가구의 평균 대기일수를 의미
자료: 성평등가족부

이러한 대기가구의 발생은 아이돌보미의 부족으로 신청가구에 아이돌보미를 연계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됨을 의미함.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인원 및 활동 아이돌보미 현황을 보면, 2024년 양성 교육인원이 목표 인원(6,000명)을 초과한 7,204명[132]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활동 아이돌보미 수는 2023년에 비해 1,564명 증가하는 데에 그쳐 예산상 목표인 34,908의 84.9%에 불과하였음[133]. 교육인원 대비 증원비율이 21.7%에 불과한바,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사업의 효과성도 낮은 것으로 보임.

132) 2024년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은 고용노동부의 예산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이 도입되었음.
133) 2025년 9월 기준 활동 아이돌보미 수는 30,631명으로, 전년 동기(2024년 9월) 27,948명 대비 약 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성평등가족부는 이를 기준으로 2025년말 활동 아이돌보미 수를 33,000명(2024년 기준 10% 증)으로 예상하고 있음.

【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인원 및 활동 아이돌보미 현황 】

(단위: 명)

연도	양성 교육인원			활동 아이돌보미 수				
	예산상 목표	실제 교육인원	달성률	예산상 목표	실제 활동인원	달성률	전년대비 증감	교육인원 대비 증원비율
2020년	4,500	2,403	53.4%	34,500	24,469	70.9	△208	△8.7%
2021년	10,300	3,937	38.2%	35,000	25,917	74.0	1,448	36.8%
2022년	5,000	3,544	70.9%	33,000	26,675	80.8	758	21.4%
2023년	4,500	3,946	87.7%	29,090	28,071	96.5	1,396	35.4%
2024년	6,000	7,204	120.1%	34,908	29,635	84.9	1,564	21.7%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인원 대비 활동 아이돌보미 증원이 저조한 사유로는 아이돌보미의 열악한 처우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2026년의 경우 아이돌보미 활동수당을 시간당 11,120원(최저임금 대비 107.8%)으로 인상할 계획이나 아이돌보미 공급확대를 위한 충분한 처우개선으로 보기는 어려운바, 성평등가족부는 아이돌보미의 안정적 공급확보 및 연계율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현황 】

(단위: 원,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서비스요금	6,500	7,800	9,650	9,890	10,040	10,550	11,080	11,630	12,180	12,790
활동수당(A)	6,500	7,800	8,360	8,600	8,730	9,170	9,630	10,110	10,590	11,120
최저임금(B)	6,470	7,530	8,350	8,590	8,720	9,160	9,620	9,860	10,030	10,320
A/B	100.5	103.6	100.1	100.1	100.1	100.1	100.1	102.5	105.6	107.8

자료: 성평등가족부

주) 2018년부터 아이돌보미 주휴수당을 주게 됨에 따라 서비스요금과 활동수당의 차이가 발생하게 됨

특히, 2025년 4월 22일 개정된 「아이돌봄 지원법」[134]에 따라 2026. 4.23.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가 시행됨에 따라 민간서비스 제공기관에서도 아이돌봄사를 채용할 것으로 보이는바, 공공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사와 민간서비스 제공기관 소속의 아이돌봄사 간의 처우수준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공공의 영역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사의 민간 유출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공공부문의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아이돌봄사 공급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음.

다) 아이돌봄사 국가자격관리시스템 구축 예산 반영 필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 및 민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도를 도입하는 「아이돌봄 지원법」이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바,

134) 2026. 4. 23. 시행, 법률 제20932호

기존 아이돌보미는 아이돌봄사로 명칭이 변경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관리하는 국가자격증으로 개편될 예정임. 또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정 기관 외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민간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음.

【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 관련 주요 제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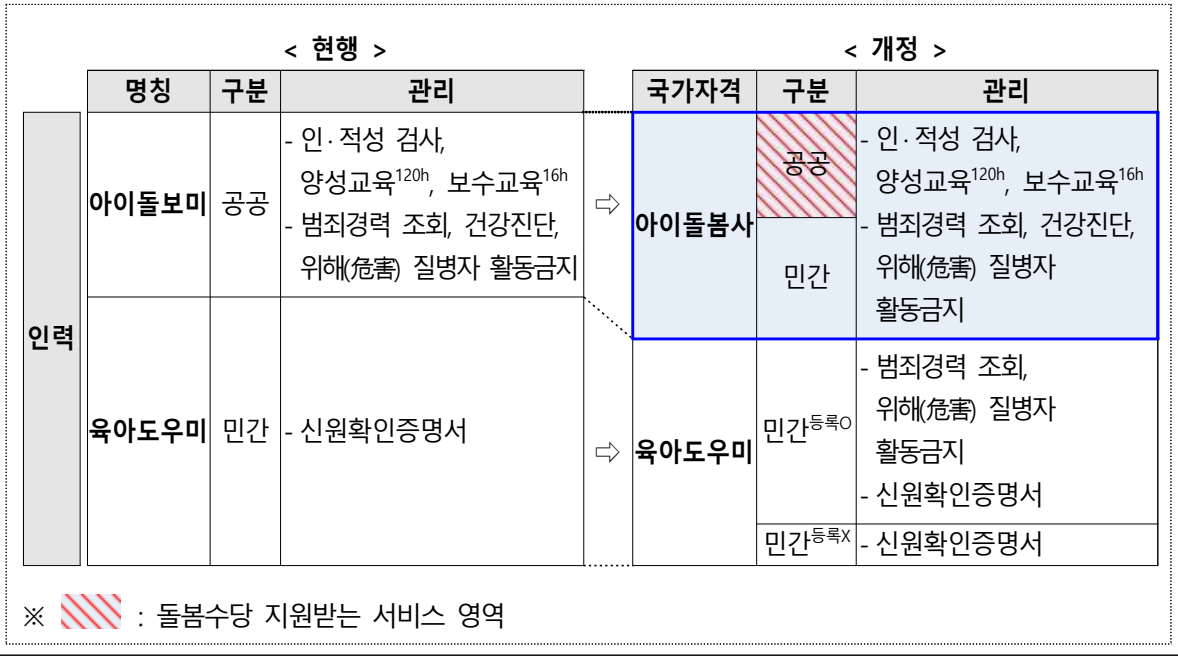
○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 전문 돌봄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인·적성 검사 등을 받은 사람에게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함

○ **민간 아이돌봄기관 등록제**

: 민간 아이돌봄 업체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기관은 소속 돌봄인력에 대한 관리를 하도록 하는 제도

<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



이에 따라 성평등가족부는 2025년에 아이돌봄 자격관리, 민간등록 정보시스템 구축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2026년도 예산안에 아이돌봄사

의 자격제도 관리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음.

세부 편성내역을 보면, ①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시행을 위하여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운영지원[135] 사업에 자격제도 지원 인력의 인건비 2억 4,000만원(인력 6명 증원) 및 사업비 5억 3,200만원을 반영하였고, ② 민간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등록제 운영과 관련하여 아이돌봄 지원의 내역사업 중 중앙지원센터 운영에 민간 등록기관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 및 교육, 교육자료의 제작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1억 9,2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으며, ③ 성평등가족부 정보화 추진 사업으로 민간등록시스템 신규 구축비 10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음.

【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 및 민간 서비제공기관 등록제도 시행을 위한 예산편성 구조 】

구 분	① 국가자격제 시행		② 민간등록제 시행	③ 시스템
추진사항	자격관리 전담기관 신설		등록업체 관리 등	지원 시스템 개발
필요성	자격제 운영, 자격증 교부·관리 등 관리업무 수행 전담 필요		등록업체 대상 제도안내 등 관리 체계 기틀 마련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스템 구축
세부사업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운영 지원		아이돌봄지원	성평등가족부 정보화추진
내 용	(인건비) 2.4억	(사업비) 5.3억	(중앙지원센터 운영) 2억	(시스템 개발비) 민간등록 10억

135)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전담기관 지정이 예정되어 있음.

【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 및 민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도 시행 관련 예산반영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주요내역
		정부안	미반영	
아이돌봄 자격관리, 민간등록 정보시스템 구축 컨설팅	281	-	-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 관리 시스템 구축	**-**	**-**	**6,042**	**- 시스템 개발 : 3,114백만원** **- 상용SW 구매 : 949백만원** **- 개인정보영향평가 : 139백만원** **- 감리 등 : 559백만원** **- 인프라 도입 : 1,281백만원**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시스템 구축	-	1,010	-	- 시스템 개발 : 770백만원 - 개인정보영향평가 : 107백만원 - 감리 : 113백만원 - 부대비 : 20백만원
중앙지원센터 운영 (민간등록제 지원)	-	192	-	- 민간등록제 설명회 : 12백만원 - 기관 컨설팅 지원 : 20백만원 - 시스템 교육 : 20백만원 - 교재 및 매뉴얼 개발 : 140백만원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운영	-	772	-	- 인건비 : 240백만원 · 인력 6명 증원 - 사업비 : 532백만원

그런데, 아이돌봄사 자격제도 시행을 위한 국가자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요 예산은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2026년부터 시행될 아이돌봄사 자격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음.

성평등가족부는 2025년 10월 현재 동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컨설팅(BPR/ISMP, 2025. 7.~2025.12.)[136]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

136) 성평등가족부는 2025년에 정보시스템 구축 방향 및 요구사항 도출, 목표 모델 설계, 투자계획 수립 등을 내용으로 한 동 시스템 구축 컨설팅 사업비로 2억 8,100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음.

2028년까지 3단계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임. 3단계 사업의 총 사업비는 84억 800만원으로, 2026년에는 1차 시스템 구축비 60억 4,200만원의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음.

【 아이돌봄사 국가자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비 내역 】

○ **아이돌봄사 국가자격관리시스템 구축(6,042백만원)**

- **아이돌봄사 국가자격관리시스템 개발 3,114백만원**
  * [(총 기능점수(3,148.1FP)×FP당 단가(605,784원)×보정계수)×(1+이윤(25%))] × (1+부가세(10%))
- **상용SW 구매 949백만원, 감리 등 698백만원**
  * 개인정보 비식별화, 연계관리, 레포트 등 11종 × 86.27백만원
  * 감리 342백만원 + PMO 217백만원 + 개인정보영향평가 139백만원
- **전산 인프라 도입 1,281백만원**
  * 서버, 스토리지 등 HW 322백만원 + DBMS 등 시스템SW 959백만원

*** 2026~2028년까지 총사업비 84억원**

: (1차, '26년) 시스템 구축(6,042백만원), (2차, '27년) 고도화(1,697백만원), (3차, '28년) 안정화(669백만원)

아이돌봄사 국가자격관리시스템은 아이돌봄사 자격증의 발급·재발급, 교육의 관리(접수, 출석, 평가, 수료증 발급 등), 인·적성검사, 결격사유 조회 등 자격관리를 위한 시스템으로, 2026년부터 시행되는 아이돌봄사 자격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아이돌봄사 국가자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비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라) 돌봄수당의 별도 내역사업으로의 분리 및 아이돌보미 관리 예산 적정 편성 필요

아이돌봄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 중 서비스지원은 돌봄수당, 아이돌보미 관리, 서비스제공기관 운영의 3개 내내역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음.

2026년도 예산안을 보면, 서비스지원 예산은 2025년 예산현액(4,677억 600만원) 대비 1,256억 4,800만원(26.9%)이 증액된 5,933억 5,4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6년도 서비스지원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현액 (A)	2026년 예산안(B)	증감	
	예산액	집행액 (실집행액)			B-A	%
· 서비스지원	461,821	461,716 (364,417)	467,706	593,354	125,648	26.9
- 돌봄수당	384,222	384,117 (275,212)	384,356	504,892	120,536	31.4
- 아이돌보미 관리	57,299	57,299 (63,746)	61,318	64,349	3,031	4.9
-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20,300	20,300 (25,459)	22,032	24,113	2,081	9.4

먼저, 서비스지원 사업은 예산 편성시 적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돌봄수당의 미집행분을 아이돌보미 관리 및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사업비로 변경하여 집행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최근

5년간 아이돌봄 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을 보면, 아이돌보미 관리는 2022년부터, 서비스제공기관 운영은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예산을 초과집행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아이돌봄 지원 사업 내역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돌봄수당①		아이돌보미 관리	서비스제공 기관 운영	소계
		영아종일제	시간제돌봄			
2020년	예산현액(A)	33,311	144,374	51,742	18,709	248,136
	집행		177,685	51,742	18,709	248,136
	실집행(B)	22,878	150,974	23,905	24,311	222,068
	실집행률(B/A)	68.7%	104.6%	46.2%	129.9%	89.5%
2021년	예산현액(A)	24,140	160,923	52,231	19,094	256,388
	집행		184,338	52,231	19,094	255,663
	실집행(B)	24,515	157,936	45,800	23,821	252,072
	실집행률(B/A)	101.6%	98.1%	87.7%	124.8%	98.3%
2022년	예산현액(A)	25,304	179,608	51,000	19,870	275,782
	집행		204,912	51,000	19,870	275,782
	실집행(B)	21,719	174,216	52,115	23,756	271,806
	실집행률(B/A)	85.8%	97.0%	102.2%	119.6%	98.6%
2023년	예산현액(A)	23,059	258,815	46,969	19,367	348,210
	집행		281,874	46,969	19,367	348,210
	실집행(B)	15,619	216,264	57,430	24,756	314,069
	실집행률(B/A)	67.7%	83.6%	122.3%	127.8%	90.2%
2024년	예산현액(A)	27,928	356,189	57,299	20,300	461,716
	집행		384,117	57,299	20,300	461,716
	실집행(B)	12,982	262,230	63,746	25,459	364,417
	실집행률(B/A)	46.5%	73.6%	111.3%	125.4%	78.9%

특히, 아이돌보미 관리 예산의 경우 아이돌보미의 4대보험 및 퇴직적립금 등 법정부담금을 적정 수준으로 편성하지 못한 것이 초과집행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2026년 예산안 산출 근거를 보면 아이돌보미 27,000명(2025년과 동일)에 대한 4대보험 및 퇴직적립금을 계상하고 있음. 이는 2026년 활동 예상 아이돌보미 36,000명의 75%에 불과한 수치임.

【 2026년 아이돌보미 양성관리 예산안 산출 근거 】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안
○ 아이돌보미 양성관리(61,318백만원) ·보수교육 4,212백만원 =36,000명×180천원×65% ·돌봄활동지원 205백만원 =243개소×130만원×65% ·배상보험료 468백만원 =36,000명×20천원×65% ·4대보험 및 퇴직적립금 56,432백만원 =27,000명×2,436원×110시간×12개월×65%	○ 아이돌보미 양성관리(64,349백만원) ·보수교육 4,212백만원 =36,000명×180천원×65% ·돌봄활동지원 410백만원 =31,550명×1만원×2회×65% ·배상보험료 468백만원 =36,000명×20천원×65% ·4대보험 및 퇴직적립금 59,259백만원 =27,000명×2,558원×110시간×12개월×65%

그런데, 아이돌보미의 4대보험 및 퇴직적립금 부담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성평등가족부에 의하면 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아이돌보미의 비율은 평균적으로 목표 활동 아이돌보미 인원 대비 85%로 나타나고 있는바, 4대보험 및 퇴직적립금 부담 대상을 목표 활동 아이돌보미의 75%로 편성한 예산안은 과소편

성되었다고 보임. 또한, 2025년 7월말 기준 아이돌보미 관리 실집행률이 52.6%에 달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아이돌봄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한 각종 수당 등이 반영되어 있어 60시간 이상 활동하는 아이돌보미 인력이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정 수준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음.

【 연도별 아이돌보미 양성관리 편성기준인원 및 실인원 현황 】

(단위:만명)

구분	2023	2024	2025	2026(정부안)
목표 활동 도우미	2,9	3.3	3.6	3.6
실인원(활동도우미)	2.8	2.96	-	-
4대보험 및 퇴직적립금*	2.2	2.6	2.7	2.7
실지급인원	2,66	2.73		

* 통상 목표 활동 도우미 대비 약 74~78%으로 산정하였으나 편성인원 대비 실지급 인원↑, 초과집행 발생

【 2025년 서비스지원 사업 실집행 현황(7월말 기준) 】

('25. 7월말 기준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A)	집행액	실집행액(B)	B/A
- 서비스지원	467,706	344,911	248,038	53.0%
· 돌봄수당	384,356	283,444	203,391	52.9%
· 아이돌보미 관리	61,318	45,219	32,245	52.6%
·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22,032	16,248	12,402	56.3%

다음, 서비스지원 사업을 구성하고 있는 내내역사업들은 사업 내용 및 성격이 다르므로, 이를 별도 내역사업으로 분리 편성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성평등가족부는 2023년까지 각각의 내역사업으로 편성되어온 돌봄수당, 아이돌보미 양성관리,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사업을 2024년부터 통합 집행하기 위하여 하나의 내역사업 내의 세부 내용으로 편성하고 있음. 또한 현장의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탄력적 운영과 내역사업 간 칸막이로 인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이돌보미 관리 및 서비스제공기관 운영사업의 부족예산을 돌봄수당에서 충당하여 왔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런데, 돌봄수당은 제공되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시간 및 유형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산식으로 계산되어 아이돌보미에게 지급되는 서비스이용료 및 추가 수당으로, 아이돌보미 지원을 위해 교육, 집담회 등을 운영하고, 배상보험료, 4대보험 및 퇴직적립금을 충당하는 아이돌보미 관리나 서비스제공기관의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지급을 위한 서비스제공기관 운영과는 그 내용과 성격이 전혀 상이함.

또한, 돌봄수당의 경우 2026년 예산안 규모가 5,000억원 이상으로 지원규모가 크고, 2026년부터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 유아돌봄수당, 야간긴급돌봄수당 등 새로운 수당들이 신설되었는바,

사업관리 및 사업평가를 정확히 하고, 사업의 내용 및 사업추진경과를 외부에서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다른 내내역사업과 분리하여

별도 내역사업으로 편성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마)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지원예산 적정규모 편성 필요

서비스지원의 내내역사업 중 아이돌보미 관리 예산안의 세부내역을 보면,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예산을 2025년과 동일하게 42억 1,2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예산은 활동중인 아이돌보미에 대하여 연 1회 16시간(양성교육을 수료한 연도에는 보수교육 면제)의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아이돌보미 36,000명을 기준으로 1인당 보수교육비 18만원에 대하여 65%를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편성되어 있음.

【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지원 예산 편성 내역 】

2025년도 본예산	2026년도 예산안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4,212백만원 = 36,000명×180천원×65%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4,212백만원 = 36,000명×180천원×65%

그런데, 현행 「아이돌봄 지원법」 제7조는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교육과정을 수료하는 등 일정 자격을 갖추도록 하고, 제10조는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아이돌보미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아이돌보미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실시를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

고 있는 반면,

2026. 4.23. 시행 예정인 「아이돌봄 지원법」 제7조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아이돌봄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제10조는 아이돌봄사에게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보수교육은 아이돌봄사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즉, 아이돌봄사 자격의 관리 주체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되고, 보수교육은 아이돌봄사가 자신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이 됨.

【 「아이돌봄 지원법」상 보수교육 관련 규정 】

(현행) 아이돌봄 지원법 [법률 제21065호]	(2026.4.23.시행예정) 아이돌봄 지원법 [법률 제20932호]
제7조(아이돌보미의 자격) ①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제9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예방 교육 2. 아동의 안전관리 교육 3. 성희롱 예방 교육 4. 아이돌보미의 인성함양 5.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와 인식 개선 교육 6.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인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생 략) ⑤ 제1항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교육과정	**제7조(아이돌봄사의 자격)**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인성 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아이돌봄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1. 제9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개설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는 교육과정의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예방 교육 2. 아동의 안전관리 교육 3. 성희롱 예방 교육

(현행) 아이돌봄 지원법 [법률 제21065호]	(2026.4.23.시행예정) 아이돌봄 지원법 [법률 제20932호]
및 제3항에 따른 적성·인성 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4. 아이돌봄사의 인성함양 5.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와 인식 개선 교육 6.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 ⑥ (생 략) ⑦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아이돌봄사 자격증을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수 있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에게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사의 교육과정, 적성·인성 검사 및 제7항에 따른 아이돌봄사 자격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보수교육)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아이돌보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제7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기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보수교육) ① 아이돌봄사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②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유로 소속 아이돌봄사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제7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기간·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 도입에 따라 아이돌봄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지정 아이돌봄서비스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보수교육은 아이돌봄사가 자신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의무사항[137]인바,

아이돌봄사가 자신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보수교육비 지원의 근거도 없는 상황임.

결론적으로, 아이돌봄사 국가자격 제도가 시행되는 2026. 4. 23. 이후에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자격증 유지 비용은 아이돌봄사 개인의 부담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138].

---

137) **「아이돌봄 지원법」** (2026.4.23.시행예정) [법률 제20932호]

제32조(아이돌봄사 자격정지)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정지시켜야 한다.

3. 제10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제33조(아이돌봄사 자격취소)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4. 제32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138) 성평등가족부는 아이돌봄사 보수교육 비용을 자부담으로 변경하는 경우 아이돌봄사 처우 개선에 역행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계속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필요한 경우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아이돌봄사에 대한 보수교육 지원에 대한 법령상 비용지원 근거 마련 등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임.

2)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2335-352)

○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법인으로 신설하는 내용의 법률이 2024. 3.26. 개정(2024. 9.27. 시행)되었음에도 독립 법인 신설에 따라 발생하는 임대차 계약의 변경에 대하여 사전 검토 및 대응이 미비하여 계약 유지기간 연장(3년→5년)과 총 임차료 상승(70억 7,800만원→ 122억 9,600만원) 문제가 발생하였는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현재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기관의 이전 등 향후 사무공간 확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2025. 7. 1.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9월 현재까지 신청 및 지급 현황을 보면, 당초 예상보다 지원 대상과 금액의 수준이 높지 않아 집행률 저조가 예상되는바, 향후 양육비 선지급의 신청 및 지급율, 양육비 선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양육비 선지급제는 기존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에 비하여 지급 대상 및 기간이 상당히 확대되어 제도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지원금의 회수율 제고가 필수적이므로, 관련 시스템의 마련, 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으며,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징수 인력은 2026년 증원 계획(3인→ 11인)을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징수 인력 1인당 담당하여야 할 징수대상 건수(2026년 선지급 대상 가구 추정치 기준으로 1인당 845건 추정)가 과다하므로, 징수인력 보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법률지원서비스의 경우 예산의 부족이 연례적으로 발생하여 결산잉여금 또는 법원 인지송달료 환급금 등으로 부족분을 집행하여 왔는데, 법적 양육비 채권 보유 여부에 따라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 행태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양육비 채권 등을 지원하는 법률지원서비스의 공급에 부족이 없도록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사업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이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상담, 소송 등의 지원을

하고,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녀를 대상으로 양육비를 선지급하며,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과 양육비 이전, 면접교섭서비스 지원 등의 기능을 통해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의 3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동 사업예산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2024년 9월 27일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신설됨에 따라 2025년부터 신규 편성되었음.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287억 3,000만원) 대비 173억 9,800만원(60.6%)이 증액된 461억 2,8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6년도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본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예산액	집행액			B-A	%
◦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	-	28,730	46,128	17,398	60.6
· 인건비	-	-	5,501	6,352	851	15.5
· 운영비	-	-	2,263	3,215	952	42.1
· 사업비	-	-	20,966	36,561	15,595	74.4
- 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			1,601	-	△1,601	-
- 양육비이행지원금(선지급)			16,200	32,400	16,200	100
- 양육비이행지원금(선지급) 제도 운영			-	385	385	순증
- 양육비이행종합정보서비스 제공 및 운영			1,243	1,854	611	49.2
- 법률지원서비스			1,802	1,802	-	-
- 양육비이행촉진서비스			120	120	-	-

자료: 성평등가족부

나)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법인화에 따른 임차료 상승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세부사업 중 운영비는 기관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적 행정경비를 지출하기 위한 것임.

2026년도 양육비이행관리원 운영비 예산은 32억 1,500만원으로, 2025년(22억 6,300만원) 대비 9억 5,200만원(42.1%)이 증액되었음. 운영비가 증가한 사유는 임관리비가 2025년(14억 8,000만원) 대비 10억 3,000만원(69.6%)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2026년도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운영비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본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예산액	집행액			B-A	%
· 운영비	-	-	2,263	3,215	952	42.1

자료: 성평등가족부

【 2026년도 양육비이행관리원 운영비 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A)	2026년(안)(B)	증감(B-A)
계		2,263	3,215	952
- 임관리비		1,480	2,510	1,030
- 기타 운영비		783	705	△78
	운영비	662	584	△78
	여비	7	7	-
	업무추진비	24	24	-
	직책수행경비	47	47	-
	유형자산	43	43	-

자료: 성평등가족부

※ 2026년 기타운영비 세부내역은 연말 이사회를 통해 최종 결정 예정

양육비이행관리원[139]은 한부모가족 아동이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5년에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내부 기관으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었으나,

예산·인사·조직에 대한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지 못해 양육비 이행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독립기관화하여 양육비 이행지원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4. 3. 26.)[140]되었고, 2024년 9월 27일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신설되었음.

이에 따라, 기존에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임차하여 사용하던 서울시 중구 소재 사무공간을 분리하여 신설 법인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재

---

139)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양육비이행관리원)** ①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이행관리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2024. 3. 26.>
③ 이행관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10. (생 략)
④ 이행관리원이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이행관리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신설 2024. 3. 26.>
⑥ 이행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24. 3. 26.>
1. 비양육부·모와 양육부·모의 양육비와 관련한 상담
2. 양육비 이행 촉진을 위한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
3.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4.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5.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추심 지원 및 양육부·모에게 양육비 이전
6.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7.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등 연구
8. 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9.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10. 그 밖에 양육비 채무 이행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⑦ 국가는 이행관리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⑧ 이행관리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40) 법률 제20417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계약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제비용이 적정 시점에 편성되지 않아 임차료 상승 등 계약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음.

【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에 따른 임대차계약 변경】

	임차인	목적물			임차인	목적물
종전 계약*	한국건강가정 진흥원	24층	➜	변경 계약	양육비이행관리원	24층
		21층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1층

* (계약기간) '22.10.1.~'27.9.30.(5년) / (계약금액) 5년 총액 약 145억원

당초 양육비이행관리원 분리 전에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체결한 사무실의 임차계약 기간은 2022년 10월부터 2027년 9월까지 5년간으로, 계약 금액은 5년 동안 총 145억원이었음. 이를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사용하고 있던 24층의 면적 비율로 계산하면 연간 14억 8,000만원의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독립 법인 신설 후 해당 사무공간의 임대인은 주변 시세를 반영하여, 기존보다 약 28% 상향한 임차료로 신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2025년도 예산에는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지 못하여 임차료 지급이 불가하게 되었음[141].

이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사용하고 있던 사무공간의 임차를 지속하기 위하여 당초 계획하였던 3년 계약 대신 5년 계약을 체결하면서, 추가로 발생한 렌탈프리[142] 7개월분을 활용하여 2024년 및 2025년 임차

141) 성평등가족부는 해당 임차료 인상 요구가 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시점 이후에 발생하여 예산안에 이를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142) 임대차 등의 장기 계약 시 약정 기간 동안 일정 기간을 임차료 없이 대여하는 무상임대 제도. 1년에 2개월분 제공

료 상승분을 지불하였음.

이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계약기간 동안 지불하여야 하는 전체 임차료는 70억 7,800만원(3년 계약)에서 122억 9,600만원(5년 계약)으로 상승하였으며, 향후 5년간 해당 계약을 유지하면서 높은 임차료를 지출하여야 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음.

【 양육비이행관리원 임대차 계약 변경 개요 】

○ (종전) 3년 계약시

– 국회 예산 증액 시, 3년 계약 추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소요예산	2,301 (rf 2개월)	2,359 (rf 2개월)	2,418 (rf 2개월)

○ (변경) 5년 계약시

– 국회 증액 미반영에 따라 5년 계약으로 변경 및 계약 완료('24.12월)

(단위 : 백만원)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소요예산	1,533 (rf 7개월)	2,510 (rf 1개월)	2,573 (rf 1개월)	2,805 (rf 0개월)	2,875 (rf 0개월)

* 2025년 예산 부족분 53백만원은 자체 절감

※ 렌탈프리 1개월분은 '24년(10월~12월) 사용

○ 계약기간 변경 사유

– 국회 예산 미반영 된 상황, 3년 계약 시 렌탈프리*를 ' 25년에 최대한 당겨 배정(5개월)하더라도 ' 25년 예산 부족(356백만원)으로 임차료 지급 불가

* 렌탈프리 : 장기 계약 시 약정 기간 동안 일정 기간을 임차료 없이 대여하는 무상임대로 **1년에 2개월분 제공(관리비는 제외)**

– 2025년 356백만원에 대한 조달 가능여부를 검토했으나, 계약임박 시점 당시 차년 예산 전용 등에 대한 불확실로 조달 불가 판단

○ **5년 계약 후, 5년치 렌탈프리를 2025년에 활용(7개월)해 2025년 임관리비 충당**

【 양육비이행관리원 임관리비 지출 계획 】

(단위:백만원)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임관리비	2,510	2,573	2,805	2,875

※ 現 임대차계약 종료('29)시 적정한 건물로 이전 계획

양육비이행관리원은 2025년도 예산 편성 및 법인의 신설 완료 시점 이후인 2024년 9월에 임대인으로부터 현재 임차료 시세에 준하는 금액으로 계약할 것을 통보받았으며, 3년 계약 갱신에 따른 예산 부족분을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증액이 되지 않은 상태로 2025년도 예산이 확정되면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법인 독립은 법률 개정 시점인 2024년 2월[143]부터 그 시기 및 내용이 예정된 사항이므로 사무공간 임대차 계약 관계의 변경 등에 관한 내용을 당초 2025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검토·반영하였어야 하는바, 이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였음. 성평등가족부는 2024년에 법인 신설에 따른 행정지원시스템 등의 비용을 전용하여 집행한 바 있는데, 그 밖에 계약관계의 변경 또한 예측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필요 예산은 지원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52억 1,800만원(3년간 70억 7,800만원 → 5년간 122억 9,600만원)의 임차료를 추가 지급하게 된 것임.

성평등가족부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의 제·개정 시 관련 비용, 법률관계의 변경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임차료 상승에 따른 과다한 운영비 지출을 고려하여 2027년

14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처리 경과
- 여성가족위원회 의결 : 2024. 2.23.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의결 : 2024. 2.29.
- 국회 본회의 의결 : 2024. 2.29.
- 공포일 : 2024. 3.26.

9월에 임차계약이 종료되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및 2029년 9월에 계약이 종료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대하여 기관의 이전을 포함하여 향후 사무공간 확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음.

다) 양육비 선지급 예산의 적정성 검토 필요

양육비 선지급제는 2024년 10월 16일에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144]에 따라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하여 지급한 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사업임.

지원 대상은 ①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의 ③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18세까지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2026년도 예산안에는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을 위한 양육비이행지원금(선지급금) 324억원과 선지급 제도 운영비 3억 8,500만원이 계상되었음.

---

14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양육비 선지급 신청)** ① 양육비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이하 "양육비 선지급"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 이하인 경우
3. 제11조제2항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는 자(이하 "선지급 신청인"이라 한다)는 양육비 선지급에 필요한 범위에서 선지급 신청인과 그 가구원에 대하여 금융정보등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신청인이 제21조의11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양육비 선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④ 양육비 선지급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2026년도 양육비이행관리원 사업비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본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예산액	집행액			B-A	%
· 사업비	-	-	20,966	36,561	15,595	74.4
- 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			1,601	-	△1,601	-
- 양육비이행지원금(선지급)			16,200	32,400	16,200	100
- 양육비이행지원금(선지급) 제도 운영			-	385	385	순증
- 양육비이행종합정보서비스 제공 및 운영			1,243	1,854	611	49.2
- 법률지원서비스			1,802	1,802	-	-
- 양육비이행촉진서비스			120	120	-	-

자료: 성평등가족부

【 2026년 양육비이행지원금(선지급) 관련 예산 산출 근거 】

- **양육비이행지원금(선지급) 32,400백만원**
  * 양육비이행지원금(선지급) 월 20만원 × 13,500명 × 12개월 = 32,400백만원
- **양육비이행지원금(선지급) 제도 운영 385백만원**
  * 선지급 심의회 등 0.3백만원×5명×12회=18백만원
  * 선지급 결정 등 통지서 발송 85백만원
  * 선지급금 회수 수수료 등 2,540원×9,257건×6개소×2회=282백만원

2026년 양육비이행지원금(선지급금) 집행을 위한 예산 324억원은 지원 대상자 13,500명을 기준으로 월 20만원을 12개월동안 지급할 수 있도록 편성되었음. 또한, 대상자 13,500명은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구 수에 양육비채권 보유율, 양육비 채무 불이행률, 가구당 평균 자녀 수를 곱하여 계산한 것임.

【 양육비이행지원금(선지급) 자녀 수 추계 】

구분	18세 이하 유자녀 이혼·미혼 한부모 가구①	양육비 채권 보유율②	양육비 채무 불이행률②	가구당 평균 자녀수	소득기준, 신청률 등을 고려한 조정	선지급 지원 자녀수
2025년	301,307가구	21.3%	25.9%	1.45명	56%	13,500명
2026년	300,405가구	31.0%	20.0%	1.45명	50%	13,500명

※ ① 18세 이하 유자녀 이혼·미혼 한부모가구: 장래가구추계를 토대로 추정
② 양육비 채권 보유율 / 양육비 채무 불이행률: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또는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그런데, 양육비 선지급제도가 시행된 2025년 7월부터 현재까지의 선지급 신청 및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당초 예산 편성시에는 지원 대상 자녀수를 13,500명(9,300가구)으로 추계하여 162억원을 계상하였는데, 2025년 9월 현재까지 5,088가구가 선지급을 신청하였고, 실집행액이 13억 6,800만원(지급아동수 2,275명)에 불과한바, 2025년도 실집행률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됨.

사업의 집행 초기임을 고려하더라도 양육비 선지급 신청부터 지급 개시까지 30일 이내(조사 등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145]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연말까지 월

14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7(양육비 선지급의 결정)**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양육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의11에 따른 조사 또는 제21조의12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기한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지급 기간, 지급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은 제5조에 따른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책정한다.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선지급 신청인 및 양육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자(이하 "선지급 대상자"라 한다)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 양육자 또는 양육비 채권금액의 변동 등 양육비 선지급의 지급 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별 지원실적 수준이 9월의 실적에서 크게 오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성평등가족부는 향후 양육비 선지급액의 신청 및 지급율, 그 밖에 양육비 선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

【 2025년(7월~9월) 양육비 선지급제 실적 현황 】

(단위: 건, 명, 백만원)

구 분	7월	8월	9월
지원가구수	188	630	1,421
지원자녀수	313	1,024	2,275
지원금액	62	346	960

자료: 성평등가족부

라) 양육비 선지급제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급금 회수 역량 강화 필요

양육비 선지급제는 기존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수행하고 있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에 비하여 지급 대상과 기간이 확대된 제도로[146],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선지급금의 회수율을 양호하게 유지하는 것이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과도한 예산 투입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 요건임.

146) 지원대상 : 1,000명(중위소득 75%) → **1.35만명**(중위소득 150%), 지원기간 : 1년 → **18세까지**

【 기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과의 비교 】

구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양육비 선지급
대상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질병, 장애, 경제적 어려움 등 심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기간	**최대 1년** (9개월+3개월 연장)	**18세까지**

그런데, 2025년 7월 1일 양육비 선지급제 실시에 따라 종료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의 회수 현황을 보면, 구상권이 청구되기 시작한 2017년부터 2025년 8월까지의 총 청구금액은 27억 7,600만원이었으나, 그 중 5억 2,400만원(누적 회수율 18.9%)만이 징수되었는바, 양육비 선지급의 경우에도 저조한 회수율 문제는 유사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연도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회수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8월	누계
당해 청구액(A)	95	74	105	122	239	552	772	482	335	2,776
당해 회수액(B)	0	2	1	17	39	92	150	150	73	524
누적회수율 (B/A)	-	1.18	1.09	5.05	9.29	12.72	15.36	18.48	18.9	18.9

자료: 여성가족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147]은 양육비 선지급금이

147)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기 위하여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

지급된 경우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양육비 채무자 본인 동의 없이 소득·재산자료 및 개인정보를 관계기관에게 요청하고, 예금, 급여, 부동산, 주식 및 가상자산 등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의 시행을 위한 시스템 개발, 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징수 담당 인력은 2025년 현재 3인에 불과함. 2026년도 예산안에는 징수 인력 8명 증원을 위한 인건비를 반영

등"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가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의7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되어 선지급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본인 동의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금융정보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16.>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10(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 회수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수절차 및 방법, 회수금 처리방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여 총 11인이 징수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나, 해당 인력이 증원되더라도 2026년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선지급 대상 가구 추정치[9,300가구 = 선지급 지원 자녀수(13,500명) / 가구당 평균 자녀수(1.45명)]를 기준으로 한 징수 담당인력 1인당 징수대상 건수는 845건(추정)에 달하여 여전히 과도한 수준임.

【 2026년 양육비이행관리원 인력 증원 내역 】

※ 2026년 양육비이행관리원 인력 증원(13인)

- **(징수 8명)** 채권설정, 소득재산 조사, 강제징수, 예금, 급여, 부동산 등 유형별 강제징수, 채권관리 등 수행
- **(모니터링 3명)** 지급 대상자별 선지급 자격 검증 및 소득정보 조사, 양육비 채권 이행 여부 점검, 지급 중지 및 처분 통지 · 심사위원회 운영 등 수행
- **(기록물 관리사 1명)** 기관의 체계적 기록물관리와 기록관리 내실화를 위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담당 1명)** 개인정보 수집 · 이용과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다루는 기관으로,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 담당

【 징수 담당 조직 및 인력 비교 】

구분	이행관리원(안)	서울시청	경기도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 담당부서	양육비선지급징수부(가칭)	38세금징수과	조세정의과	통합징수실
조직	1부 2팀 (징수부, 총괄팀, 징수팀)	1과 5팀 (38세금징수과, 38징수1팀~4팀)	1과 6팀 (조세정의과, 체납총괄팀, 법인조사팀, 기획조사팀, 광역체납팀, 세외수입징수팀, 차량유치TF팀)	1실 4부 (통합징수실, 징수관리부 통합고지부, 수납정산부 체납징수부)
채권설정	○	○	○	○
소득재산조사	○	○	○	○
직접징수	○	○	○	○
채권관리	○	○	○	○
직접 징수대상(A)	9,300명	21,000명	15,446명	45,050명
징수 수행인원(B)	(현)3명/(2026년)11명	41명	41명	145명(지역본부 포함)
1인당 담당(A/B)	(현)3,100건/(2026년)845건	512건	376건	310건

성평등가족부는 선지급제의 경우 채무자 동의 없이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강제징수 절차 등 회수율 제고 장치를 강화하였고, 2026년 예산안에 인력 증원이 일부 반영되었으므로, 제도의 시행상황을 점검하여 향후 인력의 추가 증원 등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나, 양육비 선지급제도의 정착과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수 인력의 증원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마) 법률지원서비스 집행실적을 고려한 예산확보 필요

양육비이행관리원 사업비 중 법률지원서비스는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자녀 인지·양육비 청구 등 양육비 관련 소송과 이를 확보하기 위한 양육비이행확보 소송 등을 지원하고, 감치집행보조활동 등 제재조치와 소송지원을 위한 현장조사 등을 수행하는 사업임.

2026년도 법률지원서비스 예산액은 18억 200만원으로, 2024년 및 2025년과 동일한 금액이 편성되었음.

【 2026년도 법률지원서비스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본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예산액	집행액			B-A	%
- 법률지원서비스			1,802	1,802	-	-

자료: 성평등가족부

법률지원서비스의 실집행 현황을 보면, 2022년(실집행률 130.6%)과 2023년도(실집행률 114.7%)에 당초 예산액을 초과한 실집행이 이루어졌음.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해당 예산의 부족분 발생을 2023년까지는 결산잉여금을 활용하여 왔으나, 2025년부터는 법원 인지송달료 환급금으로 연도말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음.

【 법률지원서비스사업 예산액·실집행액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9	2026년
당초예산액(A)	1,616	1,802	1,802	1,802	1,802
결산잉여금(B)	495	265	-	-	-
예산액(결산잉여금포함) (C=A+B)	2,111	2,067	1,802	1,802	-
실집행액(D)	1,616	1,802	1,802	1,782	-
실집행액(결산잉여금포함)(E)	**2,111**	**2,067**	**1,802**	**1,782**	**-**
당초예산액-실집행액(결산잉여금포함) (A-E)	△495	△265	0	20	-
집행률(D/A)	100	100	100	98.9	-
집행률(E/A)	130.6	114.7	100	98.9	-

자료: 여성가족부

2024년 월별 집행현황을 보면,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8월 기준으로 예산 집행률이 99.5%에 달하였으며, 2025년의 경우에도 8월 현재 법률지원서비스 집행률은 98.2%로, 하반기에 집행할 금액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황임.

【 2024년 법률지원서비스 월별 집행현황 및 지원실적 】

(단위 : 백만원, %, 건)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집행액 (누적)	10	207	652	667	1,104	1,472	1,495	1,793	1,793	1,793	1,800	1,802
집행률	0.6	11.5	36.2	37.0	61.3	81.7	83.0	99.5	99.5	99.5	99.9	100
지원 건수	607	643	478	785	697	771	659	707	492	619	726	813

【 2025년 법률지원서비스 월별 집행현황 및 지원실적 】

(단위 : 백만원, %, 건)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집행액 (누적)	5	699	718	1,292	1,306	1,739	1,754	1,769
집행률	0.3	38.8	39.8	71.7	72.5	96.5	97.3	98.2
지원건수	641	634	833	712	879	698	805	387

그런데, 성평등가족부가 실시한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33.3%(정기지급 30.2%, 일시지급 2.3%, 둘 다 있는 경우 0.8%)로, 양육비 정기지급 채권이 있는 한부모(30.2%) 중 실제로 양육비를 지급 받은 비율은 80.1%(정기 63.8% + 부정기 16.3%), 지급받은 평균 금액은 786,000원으로 나타났음[148].

【 한부모가족 양육비 채권 보유 현황 】

(단위: %)

구 분	2018년	2021년	2024년
합계	24.5	21.3	33.3
정기지급 채권 보유	22.5	19.9	30.2
일시지급 채권 보유	1.9	1.1	2.3
둘 다 보유	0.1	0.3	0.8

주: 2018, n=2039, 2021, n=2,848, 2024, n=2,951
자료: 한부모가족실태조사

148)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154016호), p.193~p.214.

【 양육비 정기지급 채권 보유자 중 양육비 지급 현황 】

(단위: %)

구 분	2018년	2021년	2024년
정기지급	61.1	63.8	63.8
부정기지급	9.5	10.3	16.3
받지 못함	29.4	25.9	20.0

주: 2018: n=462, 2021: n=576, 2024: n=917
자료: 한부모가족실태조사

반면, 양육비 채권이 없는 한부모(66.6%) 중 양육비를 지급받은 비율은 2.6%에 불과하였고, 지급받은 금액은 평균 27.1만원으로[149] 나타났음.

【 양육비 정기지급 채권 미보유자 중 양육비 지급 현황 】

(단위: %)

구 분	2018년	2021년	2024년
정기지급	1.7	2.6	0.4
부정기지급	2.7	1.8	2.2
받지 못함	95.5	95.6	97.4

주: 2018: n=1,538, 2021: n=2,241, 2024: n=1,966
자료: 한부모가족실태조사

즉, 양육비 정기지급 채권의 유무에 따라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지급 행태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고, 양육비 선지급의 요건으로도 양육비 채권 보유가 요구되므로,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양육비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의 법적 양육비 채권의 보유 등을 지원하는 내용인 법률지원서비스의 공급에 부족함이 없도록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149)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154016호), p.215~p.219.

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 가족센터 건립(2333-334)

○ 가족센터 건립 사업은 연례적으로 실집행률이 저조하고,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계속사업의 집행실적 또한 저조한 상황이므로, 사업 선정시 지방비 확보 여부, 사전 행정절차의 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정율과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절차 지연 등의 상황의 모니터링을 통해 보조금 교부 시점을 결정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가족센터 건립 사업은 지역 기반의 보편적 가족서비스 제공 및 가족기능의 강화를 위한 공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족센터 건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에 해당하는 자치단체 자본보조(330-03) 사업임.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39억 5,000만원) 대비 11억 4,500만원(29.0%)이 증액된 50억 9,5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6년도 가족센터 건립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현액(A)	2026년 예산안(B)	증감	
	예산액	집행액 (실집행액)			B-A	%
·가족센터 건립	9,050	8,750 (4,070)	3,950	5,095	1,145	29.0

자료: 성평등가족부

나) 연례적인 실집행률 저조에 대응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

가족센터 건립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하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150]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151]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가족센터[152]의 건립비를 정액(기본형 10억원 이하, 확장형 15억원 이하)으로 사업기간(신축 3년, 리모델링 2년)에 따라 연차별로 차등 배분하여 보조하는 사업임.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총 111개소 가족센터에 대한 건립이 지원되었음.

---

150)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5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52) **「건강가정기본법」 [시행 2025. 10. 23.] [법률 제20929호, 2025. 4. 22., 일부개정]**
제35조의2(가족센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가족센터 건립 사업 개요 】

○ **(사업목적)** 다양한 가족형태에 알맞은 가족교육·상담·자녀돌봄 등의 가족서비스 제공 공간 마련

○ **(사업내용)** 지역중심의 보편적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참여·소통·교류의 기반이 되는 가족센터 건립 지원 및 공정관리 강화

○ **(공간구성)** 상담실, 교육실, 공동육아나눔터, 사무공간, 다목적 소통·교류공간 등

[가족센터 공간별 적정 표준면적]

세부구분	기본형(509㎡)	확장형(759㎡) (기본형 필수 공간 포함)
가족상담	상담실(집단, 개인, 전화)	상담실(집단, 개인, 전화)
가족교육	일반교육실, 언어발달교실	일반교육실, 언어발달교실
가족돌봄	공동육아나눔터	공동육아나눔터
가족소통	-	다목적 가족소통·교류공간
사무공간	가족센터(前,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센터(前,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지원내용)** 가족센터 건설비 지원 및 지자체 별 컨설팅

- (건립비) 사업기간(신축 3년/리모델링 2년)에 따라 총 예산* 연차별 차등배분(신축 3년간 1:3:6, 리모델링 2년간 5:5) 지원

  * (신축/리모델링) 기본형 12억원 / 9.6억원 이하 / 확장형 18억원 / 14.4억원 이하

- (컨설팅) 복합화 시설과의 연계 강화, 가족센터 건립 취지 및 지역 특성에 맞는 공간 구성 등 지자체 컨설팅(한가원)* 지원

  * 건축 및 가족 분야 전문가 참여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주관

○ **(건립현황)**

(단위 : 개소 / 2025. 8.31.기준)

계	2015년	2017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4년	2025년
111	2	1	5(8)	60(68)	23(91)	11(102)	3(105)	6(111)

2026년도 가족센터 건립 사업 예산안에는 2024년도 시작 가족센터의 3차 연도(2개소) 건립 지원 7억 3,500만원, 2025년도 시작 가족센터 2차 연도(4개소) 27억원, 2026년 신규반영 가족센터 1차 연도(3개소) 1

6억 6,600만원이 포함된 총 50억 9,5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6년도 가족센터 건립 사업 예산안 산출 근거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안	산 출 기 초		
	5,095	9개소		
'24년 2개소 (3차 연도)	735	확장형	3년	1개×1,500백만원×25%=375백만원(부산 동래구)
			3년	1개×1,500백만원×24%=360백만원(서울 도봉구) * 2차 지원
'25년 4개소 (2차 연도)	2,700	확장형	3년	1개×1,500백만원×60%=900백만원(부산 남구)
			3년	1개×1,500백만원×20%=300백만원(경북 울릉군)
		확장형 (리모델링)	2년	1개×1,200백만원×75%=900백만원(경북 구미시)
		기본형	2년	1개×1,000백만원×60%=600백만원(경기 광명시)
`26년 3개소 (1차 연도)	1,660	확장형 (리모델링)	1년	1개×1,440백만원×100%=1,440백만원(인천 계양구)
			2년	1개×900백만원×11.1%=100백만원(대구 중구)
		기본형	2년	1개×1200백만원×10%=120백만원(경북 영양군)

동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연례적인 실집행률 저조와 과다한 이월액이 지적되어 왔음.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률을 보면, 42.6%(‘21년) → 52.3%(‘22년) → 53.0%(‘23년) → 71.9%(‘24년)로 실집행률이 매년 저조하였음. 2025년의 경우 10월말 기준으로 예산현액 39억 5,000만원 중 2억 8,600만원만이 집행되었음.

2025년 10월 기준 계속중인 가족센터 건립 사업 중 지연사업의 현황을 보면, 서울 송파구, 부산 영도구, 경기 고양시의 3개 사업은 2022

년도에 시작되어 2024년까지 사업이 완료되었어야 함에도 설계변경, 시설 또는 공법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추가 소요 등으로 현재까지 완료되지 못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 시작된 서울 도봉구, 부산 동래구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 투자심사 승인 지연 등으로 지연되고 있음.

【 가족센터 건립 예산 실집행 지연사업 현황('25.10.27. 기준) 】

(단위: 백만원, %)

	시도	시군구	시작연도	지연사유	총사업비	총교부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2026년 예산안
합계					7,500	5,550	1,877	33.8	735
1	서울	도봉구	2024	공공부지내 공공주택 확대를 위한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	1,500	300	0	0.0	360
2	서울	송파구	2022	설계용역 준공 후 증액된 사업비 확보방안 모색으로 공사(착공) 지연	1,500	1,500	189	12.6	-
3	부산	동래구	2024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승인 지연('24.3. 조건부 승인, 2025. 4.승인)	1,500	750	450	60	375
4	부산	영도구	2022	공법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소요 및 소음 분진 민원 발생 등으로 공사 지연	1,500	1,500	928	61.9	-
5	경기	고양시	2022	당초 복합시설 내 입주시설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추가 진행 등	1,500	1,500	310	20.7	-

2026년도에 계속될 2024년, 2025년 시작 가족센터 건립 예산의 실집행 내역을 보면, 2025년도에 교부된 보조금 17억 5천만원 중 9월까지 집행된 금액은 1억 7,700만원에 불과하였음.

2024년도부터 계속중인 사업 2개소 중 서울 도봉구는 공공부지 내 공공주택 확대를 위한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사업 시작연도인 2024년에 집행을 전혀 하지 못하였고, 2025년에는 예산편

성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지연된 사업은 2026년과 2027년에 계속될 예정임.

【 가족센터 건립 실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

연도	성평등가족부			사업시행주체(지방자치단체)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A)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B)	실집행액 (C)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D)	불용액	실집행률 (C/B)	이월률 (D/A)
	본예산	추경						예산 현액	실집행액				
2021	45,178	44,878	42,398	42,398	35,653	78,051	33,215	42,098	11,249	44,704	132	42.6	105.4
2022	48,166	48,166	51,857	51,857	44,404	96,261	50,355	51,856	16,110	43,979	1,927	52.3	84.8
2023	14,660	14,660	14,660	14,660	43,979	58,639	31,098	14,660	1,941	23,356	4,185	53.0	159.3
2024	9,050	9,050	8,750	8,750	23,962	32,712	23,508	8,750	4,070	8,057	1,147	71.86	24.6
2025	3,950	3,950	3,950	3,950	8,057	12,007	4,310	3,950	286	-	-	-	-

자료: 성평등가족부

【 2026년 가족센터 건립 계속사업의 실집행 내역 】

(단위 : 백만원)

지역명	사업기간*	사업비	2024년			2025년			2026년 예산안
			예산	집행	실집행	예산	집행	실집행 (~25.9.)	
부산 동래구 ('24~)	3	1,500	300	300	300	450	450	150	375
서울 도봉구 ('24~)	4	1,500	300	300	0	-	-	-	360
부산 남구 ('25~)	3	1,500	-	-	-	300	300	10	900
경북 울릉군 ('25~)	3	1,500	-	-	-	300	300	0	300
경북 구미시 ('25~)	2	1,200	-	-	-	300	300	17	900**
경기 광명시 ('25~)	2	1,000	-	-	-	400	400	0	600

* 사업기간 : 총 예산지원 기간을 의미, 도봉구는 24, 26, 27년 국비지원 예정(3년)

** 리모델링 사업 진행 `26.1 착공, `26.12. 준공 예정으로 2년차 예산 9억원 확보 필요

성평등가족부는 동 사업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에 해당하는 시·도 자율편성사업으로 각 시·도는 신청한도 내에서 사업 내용을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설계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의 진행 중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이나 설계 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증가하거나 지방비 확보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연례적인 실집행율 저조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방비 확보 여부, 사전 행정절차의 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정율과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절차 지연 등의 상황의 모니터링을 통해 보조금 교부 시점을 결정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라. 양성평등기금

1)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2331-433)

○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는 아동양육비 지원 목표인원 1,505명 및 자립촉진수당 등의 지원 목표가구 157가구(2025년과 동일)를 기준으로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2024년 및 2025년(8월말 기준) 집행률 추이를 고려할 때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비의 조정과 함께 실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발굴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정책연구 및 홍보 사업은 청소년한부모에 한정되지 않고 전체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지침 제작, 회의 및 사업추진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평가 등을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소년한부모 지원 예산의 규모와 집행내역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별도로 분리하여 적정한 사업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음.

○ 저소득 청소년한부모가 지급받는 아동양육비 지원 총액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는 매월 35만원, 2025년부터는 매월 37만원이며, 영아 양육시 지원받는 총 금액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매월 40만원으로 동일한 수준인바, 저소득 청소년한부모가 자녀 양육 및 자립을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아동양육비 지원액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 2024년 및 2025년의 경우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한부모 가구에 대한 아동양육비는 월 15만원으로 책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집행단계에서 월 14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이는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를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2331-431) 사업과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2331-433)에서 각각 편성하고 있어 단가 책정에 오류가 발생한 것임. 이처럼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자녀의 아동양육비 예산 편성 및 집행 구조가 복잡하여 총 지원금액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사업부서에서도 단가책정과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저소득 청소년한부모를 대상으로 한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은 「한부모가족지원법」[153]에 따라 청소년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아동양육비, 자립촉진수당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동 사업은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 정책연구 및 홍보 등 2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6년도 계획안은 2025년(27억 2,300만원) 대비 4억 2,200만원(△15.5%)이 감액된 23억 100만원이 편성되었음.

---

15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복지 급여의 내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에 따른 복지 급여의 신청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4. 아동양육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아동양육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제4호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 또는 부의 직계존속이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2. 34세 이하의 모 또는 부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제17조의2(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학업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 및 교육비 지원 또는 검정고시 지원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3.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교육 지원
4. 그 밖에 청소년 한부모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의4(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 주거마련 등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2026년도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계획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현액 (A)	2026년 계획안(B)	증감	
	예산액	집행액 (실집행액)			B-A	%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3,303	3,286 (2,852)	2,723	2,301	△422	△15.5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	2,852	2,852 (2,418)	2,582	2,185	△397	△15.4
·정책연구 및 홍보	451	434	141	116	△25	△17.7

자료: 성평등가족부

나)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 과다편성 및 집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는 부 또는 모의 나이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 스스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자녀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아동양육비, 자립촉진수당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사업임. 서울은 사업비의 50%, 그 밖의 지역은 80%를 보조금으로 지급함.

지원 대상은 청소년한부모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인 한부모가구이며,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14만원(0~1세의 영아를 양육하는 경우 3만원 추가 지급) 및 가구 당 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2026년도 예산안에는 2025년(25억 8,200만원) 대비 3억 9,700만원(△15.4%)이 감액된 21억 8,5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6년도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 계획안 산출 근거 】

○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

('25) 2,582 → ('26예산안) 2,185백만원, △15.4%

- (내용)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아동양육비, 자립촉진수당 등 복지급여 지원 필요

- (산출)

① 아동양육비 : 2,045백만원(전년 대비 397백만원 감)

· (중위 65% 이하)

(서울 166명x14만원×12월×50%) + (지방 1,339명x14만원×12월×80%)

· <0~1세 영아 추가금> (중위 65% 이하)

(서울 47명×3만원×12월×50%) + (지방 342명×3만원×12월×80%)

② 자립촉진수당 등 : 140백만원(전년 동)

· (서울) 29가구×10만원×12월×50%+(지방) 128가구×10만원×12월×80%

* 검정고시학습비 포함

자료: 성평등가족부

동 사업은 연례적으로 실집행률이 저조하였음. 최근 5년간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의 실집행 현황을 보면, 2021년 실집행률은 67.0%, 2022년에는 68.2%, 2023년 77.2%, 2024년 84.8%로 집행실적이 제고되는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저조한 수준임. 2025년에는 8월말 기준으로 53.3%이 집행되었음.

【 최근 5년간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 실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연도	여성가족부			사업시행주체(지방자치단체)					
	계획		집행액	교부액	계획현액	실집행액(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B/A)
	당초	수정(A)							
2021년	5,006	5,006	5,006	5,006	5,006	3,354	-	1,652	67.0
2022년	4,913	4,913	4,765	4,765	4,765	3,351	-	1,414	68.2
2023년	3,786	3,786	3,786	3,786	3,786	2,895	-	891	76.5
2024년	2,852	2,852	2,852	2,852	2,852	2,418	-	434	84.8
2025년 (8월)	2,582	2,582	2,070	2,070	-	1,377	-	-	53.3

자료: 성평등가족부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 실집행률이 연례적으로 부진한 이유는 지원대상자인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가구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따르면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의 세대수와 세대원은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현황 】

(단위: 세대, 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세대	3,441	3,213	2,408	2,017	1,626	1,428
세대원	6,956	6,513	4,841	4,082	3,340	2,926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연도말 기준

이처럼 사업대상인 청소년한부모 가구가 감소추세임에도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 실집행·지원내역을 보면, 아동양육비 목표인원과 자립

촉진수당 목표가구가 모두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과다 편성되고 있음. 과다 편성율 또한 아동양육비는 20%를, 자립촉진수당은 50%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높게 나타남.

【 2021년∽2025년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 실집행·지원내역 】

(단위: 명, 가구, %)

사업명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안)
청소년 한부모 복지 급여	아동 양육비	목표인원(A)	2,871	2,622	1,800	1,672	1,505
		지원인원(B)	1,785	1,639	1,412	1,254	-
		과다 편성인원(A-B)	1,086	983	388	418	-
		과다 편성율(A-B/A)	37.8	37.5	21.6	25.0	-
	자립촉진 수당 등	목표가구(C)	357	157	157	157	157
		지원가구(D)	72	77	60	46	-
		과다 편성가구(C-D)	285	80	97	111	-
		과다 편성율(C-D/C)	79.8	51.0	61.8	70.7	-

자료: 성평등가족부, *2025년 8월말 기준

2026년 기금계획안을 보면, 아동양육비의 목표인원은 2025년(1,672명) 대비 167명이 감소한 1,505명을, 자립촉진수당 등의 목표가구는 2025년과 동일한 157가구를 기준으로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2024년 실제 지원인원(아동양육비 1,412명, 자립촉진수당 60가구) 및 2025년 8월 기준 지원인원(아동양육비 1,254명, 자립촉진수당 46가구)을 고려할 때 여전히 과다한 것으로 보이는바, 사업비의 조정과 함께 실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발굴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 내역사업의 분리 필요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사업은 청소년한부모가 직접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고,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아동양육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 학습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그런데, 동 사업의 내역사업 중 정책연구 및 홍보 사업은 청소년한부모에 한정되지 않고 한부모가족 전체를 정책 대상으로 하여,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지침 제작, 회의 및 사업추진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평가를 수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2026년도 정책연구 및 홍보 사업 계획안 】

○ 정책연구 및 홍보 : (2025) 141 → (2026예산안) 116백만원, △17.7%
- (내용) 사업홍보 등 비용,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평가비
- (산출) 일반수용비 (인쇄비, 사례비 등) : 1식×47백만원
  사업추진비 (자문회의 등) : 1식×4백만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평가 : 65백만원×1식=65백만원

이처럼 정책연구 및 홍보 사업은 전체 한부모가족 지원의 홍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평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소년한부모 지원 예산의 규모와 집행내역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별도로 분리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평가는 사업대상과 목적에 부합할 수 있

도록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2331-434) 사업으로 이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

【 2026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한부모가족 관련 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회계	사업코드	세부사업명	계획현액	사업목적 및 내역사업 현황	사업대상
양성평등기금	2331-431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572,246	한부모가족의 건강한 자녀 양육과 생활안정을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우편요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등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한부모가족
	2331-434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4,667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생활을 위하여 주거 환경을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시설 기능보강 지원, 시설 입소자 상담·의료지원,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공동생활가정형 주거지원 등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한부모가족
	2331-433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2,301	청소년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환경 개선과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 정책연구 및 홍보 등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청소년한부모

라) 청소년한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 등 지원 단가 인상 필요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 사업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 자녀 아동양육비와 자립촉진수당(검정고시학습비 포함)을 지급하고 있음.

【 2026년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 사업 내용 】

지원 구분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청소년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등
지급시기	월별 지급	월별 지급	수시지급(신청시)
지원액	월 14만원 (0~1세 17만원)	월 10만원	연 154만원 이내 (최대 2년)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지원방법	계좌입금	계좌입금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등록한 학원 또는 개인계좌로 입금

2026년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 사업 계획안의 산출내역을 보면, 아동앙육비는 매월 14만원(0~1세 영아를 양육하는 경우 3만원 추가 지급), 자립촉진수당 매월 10만원을 지급할 계획임.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양성평등기금의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사업(2331-431)에서도 매월 23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음. 성평등가족부는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자녀 아동양육비는 총 지원금을 매월 37만원(0~1세 영아를 양육하는 경우 매월 40만원)으로 정하고, 총 지원금과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사업(2331-431)에서 지급하는 금액과의 차액(37만원 - 23만원 = 14만원)을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에서 지급하는 구조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에게 지급하는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는 매월 35만원으로 동일한 금액이었고, 2025년부

터는 매월 37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2024년에 영아 추가금(매월 5만원)이 신설됨에 따라 영아를 양육하는 경우 매월 총 40만원을 지급하였음.

2025년에는 아동양육비를 2만원 인상하면서 영아에 대한 추가금을 매월 3만원(△2만원)으로 삭감함에 따라 영아 양육시 지급하는 총 금액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매월 40만원으로 동일함.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총액 】

2011년	2017년	2018년	2019년~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획안)
월 15만원	월 17만원	월 18만원	월 35만원	월 35만원 * (0~1세) 월 40만원	월 37만원 * (0~1세) 월 40만원	월 37만원 * (0~1세) 월 40만원

한국경제인협회가 2025년 10월 발표한 「민생물가 상승 요인 분석 및 대책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동안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2.8%였으며, 의식주 물가는 이보다 높은 연평균 4.6%의 상승률을 기록하였는바, 저소득 청소년한부모가 유기나 입양 대신 직접 자녀를 양육하도록 하고 자립을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 지원액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영아를 양육하는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자녀의 양육과 학업 또는 직업활동을 병행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바, 지원금액의 상향과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마)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사업의 통합 편성 및 관리 필요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 사업의 2024년도 및 2025년도 기금계획을 보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로 매월 15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사업(2331-431)에서는 한부모가족자녀 아동양육비로 2024년에는 매월 21만원을, 2025년에는 매월 23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청소년한부모에게 매월 총 아동양육비(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를 2024년에는 36만원(영아 양육시 41만원)을, 2025년에는 38만원(영아 양육시 매월 41만원)을 지급하여야 함.

그런데,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 사업 집행시에는 월 14만원만을 지급하여 총 지원금액을 기준 중위소득 63%~65%의 경우와 동일하게(2024년 월 35만원, 2025년 월 37만원) 지급하고 있음.

성평등가족부는 당초 기금계획안 수립시 청소년한부모에게 지급되는 총 아동양육비 지원액을 먼저 정해두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와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를 계상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사업 단가 조정에 누락이 있었던 것이라 설명하고 있음.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총지원금액</th><th>2024년</th><th>2025년</th><th>2026년(안)</th></tr>
<tr><td rowspan="3">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비</td><td rowspan="2">2세 이상 아동</td><td rowspan="2">‘24년 : 35만원

‘25, ‘26년 : 37만원</td><td><중위 63%~65%>
- 35만원 편성</td><td><중위 63%~65%>
- 37만원 편성</td><td rowspan="2"><중위 65% 이하>
- 14만원 차액 편성
* 일반한부모 지원사업에 23만원 편성</td></tr>
<tr><td><중위 63% 이하>
- 15만원 차액 편성
* 일반한부모 지원사업에 21만원이 편성되어 실제 14만원만 지급</td><td><중위 63% 이하>
- 15만원 차액 편성
* 일반한부모 지원사업에 23만원이 편성되어 실제 14만원만 지급</td></tr>
<tr><td>0~1세 영아</td><td>총 40만원</td><td><중위 65% 이하>
- 5만원 추가금 편성</td><td><중위 65% 이하>
- 3만원 추가금 편성</td><td><중위 65% 이하>
- 3만원 추가금 편성</td></tr>
</table>

결과적으로 국회에서 예산을 심사한 내용과 다르게 예산이 집행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인바, 이러한 단가책정에 대한 오류는 청소년한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을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2331-431) 사업과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2331-433) 사업에서 각각 예산을 편성·집행함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는 매년 지급 총액을 설정하고,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양육비 등 지원(2331-431) 사업에 계상된 금액과 총액과의 차이를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2331-433) 사업에서 계상하고 있음.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구조가 복잡하여 총 지원금액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사업부서에서의 단가 책정과 관리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저소득 청소년한부모를 대상으로 한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2356-432)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가족센터 운영 사업과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은 사업의 대상과 목적, 내용에 유사성이 높음에도 별도의 내역사업으로 분리되어 분절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바,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 대상자가 지원내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유사한 사업내역들은 하나의 내역사업으로 통합 편성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의 내용 중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등 가족센터의 기능 수행에 필수적인 사업은 가족센터의 기본사업으로 전환을 통해 사업추진의 안정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특성화사업을 수행하는 결혼이민자 전담인력에 대한 열악한 처우 및 차별을 시정하고 근무환경 개선과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가족센터 운영 사업 중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의 2026년도 계획안(143억 100만원, 전년대비△13억 2,500만원)은 2024년도 실제 지원인원(46,000명)을 고려하여 47,500명에 대한 지원분으로 편성되었는데, 최근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의 지속적 증가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 확보와 함께 집행률 제고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지원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은 다양한 형태의 가정의 안정성 강화와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가족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다문화가족, 취약·위기가족을 지원하여 사회통합을 도모하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을 통해 양육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임.

동 사업은 가족센터 운영,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사회복무요원 배치지원, 가족전용상담전화 운영, 다문화가족 사회통합기반구축,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등 7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6년도 계획안은 2025년(1,451억 9,700만원) 대비 61억 8,200만원(4.3%)이 증액된 1,513억 7,9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6년도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계획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현액 (A)	2026년 계획안(B)	증감	
	계획액	집행액 (실집행액)			B-A	%
◦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146,131	142,427 (132,174)	145,197	151,379	6,182	4.3
・가족센터 운영	91,523	89,414 (83,057)	92,928	96,176	3,248	3.5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11,813	11,671 (11,428)	12,132	13,716	1,584	13.1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33,873	33,096 (29,976)	33,252	34,069	817	2.5
・사회복무요원 배치지원	247	231 (185)	400	400	-	-
・가족전용상담전화 운영	5,644	5,644 (5,157)	5,782	5,947	165	2.9
・다문화가족 사회 통합기반 구축	703	785 (785)	703	671	△32	△4.6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2,328	1,586 (1,586)	-	400	400	100

자료: 성평등가족부

나)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의 가족센터로의 통합 관리 등 검토 필요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의 내역사업 중 가족센터 운영 사업은 가족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을 통해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운영,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진로설계지원, 기초학습지원,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전담인력),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취약·위기가족 통합지원 등을 수행하는 사업임.

한편, 내역사업 중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문교육서비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이중언어 학습 지원,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등을 수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가족센터 운영 사업 및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의 세부내역 】

구 분	산출내역
가족센터 운영 사업	**(2026 계획안) 96,176백만원** ◦ 민간위탁사업(320-02) : 430백만원(순증) **가. 가족센터평가** : 1식×430백만원 ×100% (3년주기)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95,746백만원(+2,818) **가. 센터운영 : 40,563백만원(+1,893)** ・(가족센터 운영) 38,618백만원(+2,149) 219개소×366.1백만원×30~70%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809백만원(△110)

	6개소×269.5백만원×50%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 1,136백만원(△146) 12개소×189.3백만원×50% **나.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운영 : 2,746백만원(+118)** · 120개소×47.16백만원×30～70% **다.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 25,250백만원 (△1,001)** · (진로설계지원) 3,518백만원(+113) 135개소(147식)×49.6백만원×30～70% · (기초학습지원) 7,431백만원(+211) 183개소(276식)×56.1백만원×30～50% **·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14,301백만원(△1,325)** * (교육활동비) 10,285백만원 (초등) 연 400천원×29.7천명×30～70% (중등) 연 500천원×11.8천명×30～70% (고등) 연 600천원×6.0천명×30～70% * (전담인력) 4,016백만원 220개소×38.18백만원×30～70% **라.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 2,215백만원(+39)** ·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2,215백만원 * 70과정×60백만원×30~70% **마. 취약·위기가족 통합지원 : 24,972백만원(+1,769)** · 233개소×223.6백만원×30~70%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2026 계획안) 34,069백만원**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34,069백만원(+817) **가. 방문교육서비스 : 13,194백만원(△77)** 1,329명×20.28백만원×30~70%=13,194백만원 **나.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 6,557백만원(+329)** 310명×43.94백만원×30~70%=6,557백만원 **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 7,335백만원(+372)** 400명×38.04백만원×30~70%=7,335백만원 **라. 이중언어 학습 지원 : 4,772백만원(+193)** (이중언어 부모코칭) 3,820백만원(+193) 200명×40.13백만원×30~70%=3,820백만원 (이중언어 직접학습) 952백만원(전년동) 130개소×15.7백만원×30~70%=952백만원 **마.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 2,211백만원(전년동)** 231개소×20.1백만원×30~70%

2026년도 계획안에 따르면, 가족센터 운영 사업은 2025년(929억 2,800만원) 대비 32억 4,800만원(3.5%)이 증액된 961억 7,600만원이,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은 2025년(332억 5,200만원) 대비 8억 1,700만원(2.5%)이 증액된 340억 6,900만원이 계상되었음.

2개의 내역사업의 세부내역을 보면, 가족센터 운영에 포함된 가족센터평가(4억 3,000만원, 민간위탁)를 제외하면, 두 사업은 모두 가족센터를 통해 수행되는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사업으로,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유사한 내역을 다수 포함하고 있음.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의 경우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에서는 통·번역 서비스,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을, 가족센터 운영 사업에서는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사업을 보면,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에는 방문교육서비스, 언어발달 지원, 이중언어 학습 지원 등이, 가족센터 운영 사업에는 진로설계지원, 기초학습지원, 교육활동비 등이 각각 편성되어 있음.

【 ‘가족센터 운영’과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포함 내내역사업 】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비고
가족센터 운영사업 (96,176백만원)	① 가족센터 운영	
	②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③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④ 다문화가족교류소통공간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⑤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진로설계지원)	다문화자녀 지원
	⑥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기초학습지원)	다문화자녀 지원
	⑦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교육활동비 지원)	다문화자녀 지원
	⑧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	결혼이민자 지원
	⑨ 취약·위기가족 통합지원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34,069백만원)	⑩ 방문교육서비스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다문화자녀 지원
	⑪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다문화자녀 지원
	⑫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결혼이민자 지원
	⑬ 이중언어 학습 지원	다문화자녀 지원
	⑭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결혼이민자 지원

가족센터 운영 사업과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은 사업의 대상과 목적, 내용에 유사성이 높음에도 별도의 내역사업으로 분리되어 분절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바, 각 대상자가 전체 지원 내역을 알기 어렵고, 사업체계가 상이하여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음. 사업의 관리 차원에서도 중복 여부를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각 내역사업별로 보조금의 교부와 정산을 진행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정산·반납 지연에도 영향을 끼침.

따라서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 대상자가 지원 내역

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두 내역사업을 구성하는 유사한 내용 또는 동일한 대상자를 지원하는 사업내역들은 동일한 내역사업으로 편성하여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음.

또한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의 내용 중 가족센터의 기능 수행에 필수적인 사업은 가족센터의 기본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의 경우 입국 초기 결혼이민자의 정착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언어적 소통 문제 해결을 위한 것으로, 입국 초기 상담, 행정·의료·교육 등 공공기관 이용시 통번역, 임신·출산·양육 등 생활 정보 안내, 위기 상황 시 긴급 통번역 지원 등을 제공하는 등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의 가족센터 이용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임.

그런데 동 사업은 특성화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어 매년 가족센터의 기본사업과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별 개별 지침에 따라 운영되며, 통번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인력 또한 각 센터별로 매년 사업편성에 따라 단년도 채용되고 있음.

통번역서비스의 연도별 제공 실적을 보면 2024년 기준 589,007건으로 2020년부터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다문화가족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센터의 기능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이므로 기본사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사업추진의 안정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겠음.

【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 개요 】

□ 사업 개요

○ **(목적) 입국초기 결혼이민자의 초기 정착 단계**에서 경험하는 의사소통 문제 해결을 위한 **통번역 서비스 지원**으로 한국사회 조기 적응에 기여

○ **(지원근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 **(지원대상)**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

○ **(운영인력)** 가족센터에 배치된 **통번역지원사**(’26년 400명)

* 결혼이민자를 통번역 전문인력으로 채용·양성하여 자립지원 및 사회적 일자리 확대

□ 주요내용

○ **(지원내용)** 다문화 가족 **입국 초기상담, 가족 간 의사소통 및 생활상담, 행정·사법·공공기관 이용** 시 통번역 **위기 상황 시 긴급 지원** 등 필요한 통번역서비스 제공

○ **(지원 언어)**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

* 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 몽골어, 태국어, 러시아어, 캄보디아어, 일본어, 네팔어 등 센터별 1~4개 언어

** 해당지역 센터에서 지원되지 않는 언어에 대한 통번역은 인근 센터로 연계 지원

○ **(이용방법)** 내방, 전화, 이메일, 팩스, 출장(외부) 등

□ 추진실적

○ **지원실적 : (2021년) 483,093건 / (2022년) 512,814건 / (2023년) 533,267건 / (2024년) 589,007건/ (2025. 7.) 379,663건**

다음,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을 수행하는 결혼이민자 전담인력에 대한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이 필요함.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의 내역 중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이중언어 학습 지원은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사업이면서, 동시에 결혼이민자를 사업 전담인력으로 채용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 참여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특성화사업은 기본사업과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별 개별 지침에 따라 운영됨에 따라 이를 담당하는 전담인력 또한 가족센터의 기본인력과 달리 호봉제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제수당의 경우에도 인건비 한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각 센터의 상황에 따라 지급받고 있음[154]. 성평등가족부는 사업안내지침 등을 통해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고용되고 있는 인력에 대하여 센터의 정규 직원으로 채용을 권고하는 수준에서만 관리를 하고 있음.

2025. 8.28. 발간된 국회입법조사처의 연구보고서[155]에 따르면, 특성화사업을 담당하는 결혼이민자들의 경우 임금·수당 산정 뿐만 아니라 과중업무, 업무수행을 위한 공간 등의 지원 부족, 차별·인권침해 경험이 지적되고 있는데, 특성화사업 전담 결혼이민자들이 겪고 있는 열악한 처우 문제를 시정하고 근무환경 개선과 인권보호를 위해, 고용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마련, 근무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점검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음.

---

154) 2024년 여성가족부 가족사업안내(Ⅱ), p.233~256 참조.
155) 허민숙, 「언어서비스에서 위기가정 발굴까지 : 결혼이민자 통번역·이중언어 교육지원 사업의 현황과 과제」,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2025.8.

다)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예산 확보 필요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가족센터 운영 사업 중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은 가족센터를 통하여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 적응력 향상과 학력격차 완화, 진로 상담 등 사회 통합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진로설계지원, 기초학습지원,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음.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사업은 2025년(262억 5,100만원) 대비 10억 100만원(△3.8%)이 감액된 252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에서 2025년(156억 2,600만원) 대비 13억 2,500만원(△8.4%)이 감액되었음.

【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사업 계획안 세부 산출내역 】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안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 26,251백만원 ・(진로설계지원) 3,405백만원 ・ 135개소(147식)×48백만원×30~70% ・(기초학습지원) 7,220백만원 ・ 183개소(276식)×54.5백만원×30~50% 기초학습지원으로 통합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15,626백만원** * (교육활동비) 11,563백만원 (초등) 연 400천원×33.4천명×30~70% (중등) 연 500천원×13.3천명×30~70%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 25,250백만원(△1,001)** ・(진로설계지원) 3,518백만원(+113) ・ 135개소(147식)×49.6백만원×30~70% ・(기초학습지원) 7,431백만원(+211) ・ 183개소(276식)×56.1백만원×30~50%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14,301백만원(△1,325)** * (교육활동비) 10,285백만원 (초등) 연 400천원×29.7천명×30~70% (중등) 연 500천원×11.8천명×30~70%

(고등) 연 600천원×6.7천명×30~70% * (전담인력) 4,063백만원 230개소×36.87백만원×30~70%	(고등) 연 600천원×6.0천명×30~70% * (전담인력) 4,016백만원 220개소×38.18백만원×30~70%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은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156] 다문화가구의 7~18세 자녀를 대상으로 하여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료 등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자치단체경상보조 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력격차 완화와 성장 지원을 위하여 2024년 가족센터운영 사업 내에 신설되었음. 지원금액은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이며, 이를 연 1회 NH농협카드(채움) 포인트로 지급하고 있음.

【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 】

□ **사업 개요**

○ (목적) 저소득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하여 학력격차 완화 및 미래 인재로의 성장 지원 추진

○ (신청권자) 다문화가족의 부모, 자녀 본인, 3촌 이내의 혈족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50% ~ 100% 이하 다문화가구의 7~18세 자녀

□ **2026년 지원 내용**

○ (예상 지원인원) 다문화가족 자녀 약 4.75만 명

○ (지원예산) 국비 14,165백만원(지방비 30~70% 부담)

○ (지원단가)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

○ (지원방식) 지원단가를 연 1회 NH농협카드(채움) 포인트로 지원

○ (지원내용) 가족센터의 상담 등 사례관리를 통해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과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 구입, 독서실이용 등

156) '25년 기준중위소득 100%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기준(소득기준) : 2인 가구 139,817원(393만원), 3인 가구 179,415원(502만원), 4인 가족 219,196원(609만원), 5인 가족 252,203원(710만원) 등

동 사업은 2024년 신설되면서 지원대상을 총 6만명으로 산정하여 168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지원인원이 46,600명 수준에 그치면서 2025년(156억 2,600만원, 전년대비△11억 9,700만원) 및 2026년 계획안(143억 100만원, 전년대비△13억 2,500만원)에 지속적으로 감액 계상되었음. 2026년의 지원금액은 2024년도 지원인원(46,000명)을 고려하여 47,500명에 대한 지원분을 편성한 것임.

【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산출 세부내역 】

2024년 계획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안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16,823백만원 * (교육활동비) 12,878백만원 (초등) 연 400천원×37.6천명×30~70% (중등) 연 500천원×14.8천명×30~70% (고등) 연 600천원×7.6천명×30~70% * (전담인력) 3,945백만원 230개소×35.8백만원×30~70%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15,626백만원 (△1,197) * (교육활동비) 11,563백만원 (초등) 연 400천원×33.4천명×30~70% (중등) 연 500천원×13.3천명×30~70% (고등) 연 600천원×6.7천명×30~70% * (전담인력) 4,063백만원 230개소×36.87백만원×30~70%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14,301백만원 (△1,325) * (교육활동비) 10,285백만원 (초등) 연 400천원×29.7천명×30~70% (중등) 연 500천원×11.8천명×30~70% (고등) 연 600천원×6.0천명×30~70% * (전담인력) 4,016백만원 220개소×38.18백만원×30~70%

그런데, 행정안전부의 「2023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157]에 따르면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초등학생,

157) 2024. 10. 24. 발표, 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4&nttId=113261

중학생, 고등학생의 모든 단위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바, 대상자 증가를 고려한 적정 수준의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또한, 동 사업은 지원대상이 소통 등에 어려움을 겪기 쉬운 다문화가구의 자녀라는 점 및 사업시행 초기라는 점에서 집행률 제고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지원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음.

【 최근 5년간 다문화가족 자녀 현황 】

(단위 : 명)

구 분	만7~12세	만13~15세	만16~18세
2023년도	110,577	55,483	37,579
2022년도	109,519	51,546	29,294
2021년도	108,953	43,433	22,588
2020년도	107,286	34,445	18,680
2019년도	104,064	26,524	16,993

자료: ‘2023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행정안전부) 자료를 재편성

[참고자료 1] 박물관자료 관련 법령 발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2016. 11. 29. 개정)

2. 개별요건

가. 제1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유 형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학예사	시 설
종합 박물관	각 분야별 100점 이상	각 분야별 1명 이상	**1) 각 분야별 전문박물관의 해당 전시실** 2) 수장고(收藏庫) 3) 작업실 또는 준비실 4) 사무실 또는 연구실 5)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6)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전문 박물관	100점 이상	1명 이상	**1) 100㎡ 이상의 전시실 또는 2,000㎡ 이상의 야외전시장** 2) 수장고 3) 사무실 또는 연구실 4)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5)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 심사 기준」(문화체육관광부 지침)

구분	정량 평가지표 (최소요건) ※「박미법」 등록기준	정성 평가기준 (심의위원회 심의사안)	정성평가 보완 기준요건 (심의위원회 확인사안)
자료	ㅇ박물관 자료 100점 이상 ※ 종합박물관은 분야별 100점 이상	ㅇ 해당 박물관 · 미술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소장품 수집계획과 소장품의 규모 및 가치에 관한 사항	ㅇ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목록의 확인 (목록내용의 정확성 및 사진 첨부상태) ㅇ박물관 성격 및 목적과 전시(소장)자료의 성격이 일치하는지 확인 ㅇ소장 자료의 등록, 정리SW 활용여부 (DB프로그램,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등)

박물관(미술관) 등록 심의위원회 심사표 (문화체육관광부 지침)

평가영역(배점)		평가지표	배 점					점수	비고
			A	B	C	D	E		
소장품 (50)	20	자료의 해당 분야에의 적합성	20	16	12	8	4		
	5	자료수집의 적정성	5	4	3	2	1		
	10	자료의 학술적 · 예술적 · 교육적 · 역사적 가치	10	8	6	4	2		
	5	소장자료의 희소성	5	4	3	2	1		
	10	그 밖에 문체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10	8	6	4	2		문체부·광역지자체 자체기준 설정
	소계								
운영계획 (30)	10	박물관의 설립목적, 예산투자, 자료수집계획 등 중장기 운영계획	10	8	6	4	2		
	10	학예사자격증 소지자 외 전문인력(학예사, 교육사 등) 및 인력계획의 적정성	10	8	6	4	2		
	10	특별전시, 문화행사, 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	10	8	6	4	2		
	소 계								
운영실적 (30)	10	박물관의 설립목적, 예산투자, 자료수집 등 중장기 운영계획	10	8	6	4	2		※ 기 개관 · 운영 박물관 등록 시
	10	학예사자격증 소지자 외 전문인력(학예사, 교육사 등) 및 운영인력 활용의 적정성	10	8	6	4	2		
	10	특별전시, 문화행사, 교육프로그램 운영실적	10	8	6	4	2		
	소 계								
시설 (20)	10	전시실의 환경의 적합성 (최소요건 외 온·습도조절시설, 진열장, 조명, 퇴색방지등, 공조시설, 도난방지 등 현황)	5	4	3	2	1		
	5	수장고의 환경의 적합성 (최소요건 외 온 · 습도조절시설, 공조, 도난방지시설 등)	5	4	3	2	1		
	5	교육·편의 시설 (최소 시설 요건 외 세미나실, 교육실 등의 추가 시설)	5	4	3	2	1		
	소계								
가점	사전 협의 및 평가	국립박물관	국립박물관(미술관) 설립협의 실시						심사위원 평가
		공립박물관	공립박물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실시						〃
		사립박물관	사립박물관(미술관) 설립계획 승인신청						〃
심의위원 의견									
(필요시 별도 용지에 추가기록)									
총 점		점							

[참고자료 2] 성평등가족부 2026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	세부사업	2025년 예산(A)	2026년예산안 (B)	증감 (B-A)	증감률 (%)	비 고
일반회계	1) 글로벌 여성리더 포럼					
	-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대회	275	275	-	-	
	- 성평등 공공외교 활성화 (APEC)	575	-	△575	순감	
	2) 유엔여성기구 기여금 (ODA)	9,345	7,945	△1,400	△15.0	
	3) 국제개발협력(ODA)	678	600	△78	△11.5	
	4) 여성·가족정책의식확산	1,833	2,060	227	12.4	
	5) 여성정책전략기반구축	318	732	414	130.2	
	6) 성인지정책분석 평가 운영	3,940	3,821	△119	△3.0	
	7) 양성평등문화확산					
	-양성평등주간	93	-	△93	순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지원으로 이관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578	576	△2	△0.3	
	8) 여성사전시관[1]	2,411	9,317	6,906	286.4	
	9)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원	11,796	12,642	846	7.2	'26년부터 양성평등문화확산(양성평등주간)사업이 해당사업으로 이관
	10) 여성인재 양성 및 사회 참여 확대	606	1,006	400	66.0	
	11)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및기념사업	1,045	980	△65	△6.2	
	12)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	4,054	2,701	△1,353	△33.4	
	13)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	841	1,483	642	76.3	
	- 여성폭력 추방주간 운영 및 정책확산	110	110	-	-	
	- 종사자 양성 및 보수교육	707	707	-	-	
	- 공공부문 성희롱 성폭력 재발방지	140	140	-	-	

회계	세부사업	2025년 예산(A)	2026년예산안 (B)	증감 (B-A)	증감률 (%)	비 고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연구	-	1,809	1,809	순증	'25년 예산은 1,883백만원
	14)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 성보호활동 지원	5,518	4,798	△720	△13.0	
	15)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16,425	16,575	150	0.9	
	16)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피해예방					
	-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운영[1]	-	3,571	3,571	순증	'25년 예산은 3,056백만원
	17)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운영지원					
	- 청소년지도사 양성	312	1,277	965	309.3	
	18) 가족역량강화 지원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1,590	1,455	△135	△8.5	
	19) 가족정책 추진기반 구축					
	- 일·가정양립 사회환경 조성[2]	2,070	2,070	-	-	
	20) 아이돌봄지원	475,028	600,305	125,277	26.4	
	21)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					
	- 가족친화지원사업	830	830	-	-	
	22)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28,730	46,128	17,398	60.6	
	23)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11,481	11,731	250	2.2	고용노동부에서 이체('25.10.01.)
	24)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지원	1,002	902	△100	△10.0	고용노동부에서 이체('25.10.0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5)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2]	87,713	88,411	698	0.8	
	26) 청소년방과후활동 지원	30,387	32,474	2,087	6.9	'26년부터 청소년육성기금으로부터 이관
청소년육성기금	1)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교육					
	-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4,932	5,097	165	3.3	
	2)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33,079	36,355	3,276	9.9	
양성평등기금	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19,037	20,783	1,746	9.2	

회계	세부사업	2025년 예산(A)	2026년예산안 (B)	증감 (B-A)	증감률 (%)	비 고
	4)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43,167	45,319	2,152	5.0	
	5)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사업	8,123	8,595	472	5.8	
	6)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552,833	572,246	19,413	3.5	
	7)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2,723	2,301	△422	△15.5	
	8)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지원					
	-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	-	1,371	1,371	순증	'25년 예산 1,312백만원
	9)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1]	145,197	151,379	6,182	4.3	
성평등추진중점사업 소계		**89,783**	**90,481**	**698**	**0.8**	
성별영향평가사업 소계		**145,197**	**154,950**	**9,753**	**6.7**	
총계		**1,509,522**	**1,700,877**	**191,355**	**12.7**	

자료: 성평등가족부
1) 성별영향평가사업
2) 성평등추진중점사업

[참고자료 3]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 규정[시행 2021. 1. 1.]

[기획재정부훈령 제518호, 2020. 10. 22.,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26조와 제57조에 따른 성인지예·결산제도 운영의 성과 제고와 관계부처 간 협의를 위하여 성인지예·결산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 및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국장급 공무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소속 국장급 공무원과 기획재정부 재정성과심의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장, 그 밖에 성인지 예·결산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위촉하는 민간위원으로 한다.

제3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조(협의회의 기능 및 운영)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한다.

1.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기준 및 방식에 관한 사항
2.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기준 마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성인지 예·결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장, 성평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장이 공동 간사가 된다.

③ 협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하며, 정기회의는 연 3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4조(전문평가위원회) ① 제3조 제1항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협의회가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위원회(이하"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성평등 분야 전문가, 재정분야 전문가 및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분야별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 중에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협의회 및 평가위원회 운영기관) 협의회와 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은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전문인력과 조사연구능력을 갖춘 기관을 협의회 및 평가위원회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수당) ① 협의회 및 평가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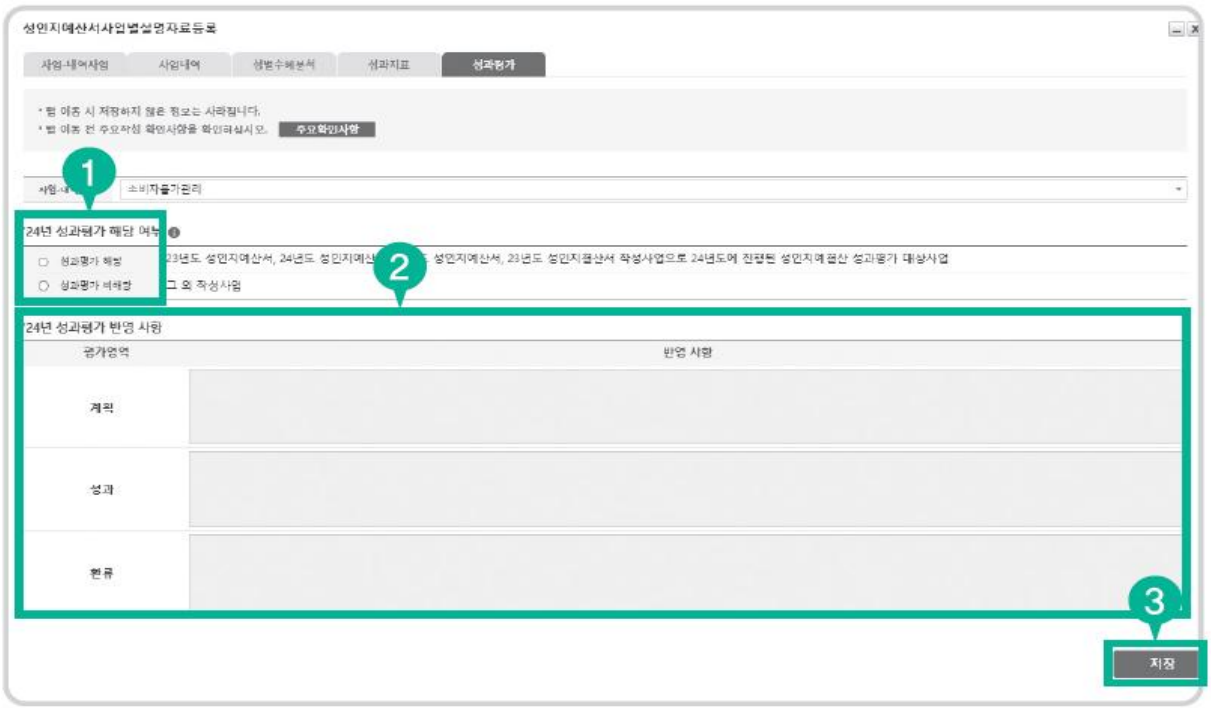
② 조사·연구 기타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위원에게는 비용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4] 성과평가 작성 관련 매뉴얼 발췌



step1. “ 24년 성과평가 해당 여부” 체크 (필수항목)

- ’24년 성과평가 해당 사업일 경우 [성과평가 해당] 체크
- ’24년 성과평가 해당 사업이 아닐 경우 [성과평가 비해당] 체크

※ ’24년 성과평가 해당 사업 : ([부록8] 참조)
- ’24년도에서 진행된 성인지예·결산 성과평가 결과를 통보 받은 사업
- ’23년도, ’24년도, ’25년도 성인지예산서를 연속 작성하고, ’23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를 작성한 사업

- 부처별 성과평가 결과는 각 부처 성인지예산 총괄 담당자에게 발송된 메일 참고
*(발신자 : 기획재정부 담당 사무관, 발신일 : 2025. 1.)

step2. “’24년 성과평가 반영 사항” 작성 (Step 1 해당 사업에 한해 작성)

▪ ’24년 성인지 예·결산 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계획영역, 성과영역, 환류영역의 반영 내용을 제시함

- 각 영역의 평가 결과가 아닌 사업계획에 반영한 내용을 “’24년 성과평가 반영 사항”의 각 영역란에 작성함

예시) “ 24년 성과평가 반영 사항” 입력

『2024년 성인지 예·결산 현의회 성과평가 최종결과』 영역별 의견(예시임)

사업 목록					평가위원 평가결과				
소관	세부 사업	내역 사업	성별	중점	평가위원 점수	평가등급	계획	성과	환류
							A	B	C

⬇

『2026년도 성인지예산서』 ‘ 24년 성과평가 반영 사항

평가영역	반영 사항
계획	결과 A에 따른 반영 사항 (사업운영, 성인지예산서 내 분석 등)
성과	결과 B에 따른 반영 사항 (사업운영, 성인지예산서 내 분석 등)
환류	결과 C에 따른 반영 사항 (사업운영, 성인지예산서 내 분석 등)

※ ‘ 24년 성과평가 해당 사업에 한하여 작성

※ ‘ 24년 성과평가 결과를 사업 계획 및 운영에 반영하거나, 성인지예산서 내에서 반영한 경우 “반영 사항”을 작성

– 평가 결과 내용은 각 부처 성인지예산 총괄 담당자에게 발송된 기획재정부 담당 사무관 메일 참조 (발송일 2025.1.)

– 뒷 페이지 작성 방법 예시 참고

step3. 저장 버튼 클릭

★ 각 탭 이동 전 반드시 저장해야 적용됨